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29 Summer 2025





차례

특집논문: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

이진일 | 20세기 전환기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 007

송병권 |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 일본의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
- '북방영토', '오키나와', '타이완 문제'의 지정학 053

이주연 |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089

연구논문

조진욱 | 한국 고대 선박의 구조 변화를 통해 본 '준구조선'의 개념 정의 119

자료소개

정영미 | 시마네현 편입 후의 독도 소속과 경과에 대한 사료 두 편 165

서평

이석용 |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도시환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195

박선주 | 『독도의 보물, 아름다운 꽃과 자연생태』: 송희영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215

영토·해양 일지

엄태일 | 영토·해양 일지 228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칙 236

발행 및 심사규정 238

투고 요령 242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246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258

특집논문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

- **이진일** | 20세기 전환기 유럽에서의 '러시아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
- **송병권** |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 일본의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 - '북방영토', '오키나와', '타이완 문제'의 지정학
- **이주연** |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세기 전환기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

이진일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지정학의 두 뿌리와 러시아
- II. 러시아의 부상과 유럽의 반러시아주의
- III. 고전 지정학의 전개와 러시아
- IV. 러일전쟁 이후 유럽의 지정학적 전개
- V. 맺음말

I. 머리말: 지정학의 두 뿌리와 러시아

지정학은 영토상의 지배와 경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대부분 이론가들은 지정학적 충돌의 역사를 베스트팔렌조약 체결 이후 육상세력과 해양세력 간 충돌의 역사로 이해해 왔다. 즉, 지구 공간을 대륙과 바다로 나누면서 한 국가의 지배력이 양 세력 중 어디에 위치짓느냐에 따라 전 지구적 지배와 세력 확보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사고가 서구 지정학의 전통적 틀을 규정해 왔다. 지리적 위상이 국가적 충돌과 국경의 확장에서 결정적 틀을 제공했고, 지리가 국가 간 교역과 관계 설정, 지역적 통합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 틀을 구성한 이들의 중심에는 앵글로-색슨 지리학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의 성립 배경에는 19세기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제국주의적 침탈과 영제국의 지속적 세계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고려가 우선하였음은 물론이다.

지정학 이론의 또 다른 한편에는 독일 지리학이 중심이 된 국가유기체론이 자리한다.¹ 인간은 공간 속에서 성장, 운동하며, 공간의 지배를 추구하고, 종족의 팽창을 위해 가장 적절한 공간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제한된 공간은 인간으로 하여금 분배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를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은 ‘생존공간(Lebensraum)’으로 명명했다.² 즉, 공간을 두고 벌어

* 논문 투고일: 2025.4.27, 심사 완료일: 2025.5.26, 게재 확정일: 2025.5.27.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어 2025년 2월 재단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러일전쟁과 영토의 지정학적 조명’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토론에서 코멘트를 해 주신 여러 연구자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1 일반적으로 지정학을 ‘geopolitics’로 표현하지만, 지정학이 갖는 독일적 뿌리, 혹은 쉘렌(Rudolf Kjellén)이 주조한 지정학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를 ‘Geopolitik’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도 특별히 독일적 지정학을 의미할 경우에만 ‘지정학(Geopolitik)’으로 표현하였다.

2 Friedrich Ratzel, 1897, “Über den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kizze,” *Die Umschau* 1, pp. 363~367; Friedrich Ratzel, 1901, *Der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tudie*, Tübingen: Laupsche Verhandlung, p. 3. 독일어 ‘Lebensraum’이라는 단어에는 현대에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생활공간’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지리/지정학 용어로서 사용하는 배타적 생존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Lebensraum’을 후자의 의미, 즉 ‘생존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라첼의 ‘Lebensraum’의 다원적 기원과 설

지는 투쟁은 인간 존재를 위한 투쟁의 중심이 되며, 한 나라가 성장하고자 하면 다른 나라들을 향해 일어나 싸우고 교류하며 그들에 의지해 성장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이미 1890년대에 제시한 라첼의 생존공간 이론은 20세기 초반 해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나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 앨프리드 머헨(Alfred Mahan) 등 당대의 수많은 정치, 지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지정학 이론의 두 뿌리에는 공통적으로 당대의 팽창하는 러시아에 대한 전적인 경계와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전통적으로 서유럽인들은 러시아를 반(反)문명적 야만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전통적으로 유럽 열강들의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차르 체제하의 미개한 국가로 평가하면서 무시 또는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문화를 찬양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영토적 팽창이 필연적으로 서유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충된 감정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지속되는데, 유럽 보수 세력에게 소련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야욕에 불타는 경계와 타도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편, 특히 독일과 같은 패전국에서는 소련도 바이마르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앵글로-색슨 세계가 주도하는 전후 구도에서의 동일한 희생자며, 같은 'have-not'에 속하는 국가로서, 연대해 이들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구도에 대항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Schicksalsgemeinschaft)'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냉전 시대를 넘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러시아의 확정되지 못한 국경 문제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

과장된 혐오와 배제 뒤에는 흔히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한다. 19세기 이후 다양했던 유럽의 위기와 전쟁의 배경에도 많은 부분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라시아를 배경으로 벌어진 크고 작은 전쟁들의 대부분에는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크림전쟁(1853~1856), 러시아-터키 전쟁(1877~1878), 2차

렌의 지정학 이론에서의 수용, 그리고 이어지는 나치 이데올로기와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C. Abrahamsson, 2013, "On the genealogy of Lebensraum," *Geographica Helvetica* 68, pp. 37~44 참조.

아프간전쟁(1879), 러일전쟁(1904~1905), 1·2차 발칸 전쟁(1912~1914), 1·2차 세계대전(1914~1918/1939~1945), 한국전쟁(1950~1953) 등이 그 목록이다.³ 어쩌서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가장 정점에 이른 시대에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에서 이처럼 거의 모든 국제적 갈등에 받을 담그게 된 것일까? 우리가 이를 유라시아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조건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귀결로 설명한다면 이는 너무도 쉽게 지리결정론이나 환경결정론에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닐까? 지정학은 지리결정론을 넘어 세계를 정치-지리적 '지식과 권력의 복합체(Wissen-Macht-Komplex)'⁴로 설명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기체론을 통해 지정학 이론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패권국으로서의 해양력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라첼과, 그와는 달리 영국의 해양 제국주의적 팽창을 모범 삼아 해양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세계 진출 전략을 제시했던 머헌을 분석의 중심에 놓으면서, 이들 초기 지정학자들이 러시아라는 유라시아 중심의 거대 국가를 놓고 구성하는 상충하는 지정학적 논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19세기 중반 이후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구성되는 지정학적 담론의 초기 형성의 역사를 러시아와의 관련성을 중심에 두고 살펴봄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지정학적 충돌의 뿌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초기 지정학자들의 고전적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이 실제로는 제국주의적 각축 속에서의 '러시아 문제'⁵의 해결을 위한 방책이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⁶

3 Alfred J. Rieber, 2014, *The Struggle for the Eurasian Borderla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

4 Paul Reuber, 2012, *Politische Geographie*, Paderborn: Schöningh, p. 32.

5 역사 정치적 용어로서 '독일 문제(Deutsche Frage/ German Problem)'라는 용어는 있지만, '러시아 문제(Russian Problem)'라는 용어는 없다. '독일 문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독일이 유럽에서 일으켰던 다양한 역사적 문제들을 총괄해서 부르는 일반적 명칭이 아니라,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유럽 내에서 진행된 독일의 비민주적이고도 왜곡된 발전의 역사와 이들이 만들어 낸 특정한 영향력과 상황들을 의미하는 고유한 개념이다. 이에 반해 이 글에서 '러시아 문제'란 러시아가 유라시아 반도의 동서양에서 일으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6 지정학의 학문적 역사를 구분할 때 지정학이 처음 학문으로서 성립되는 시기나 명칭을 어떻게 규정할

II. 러시아의 부상과 유럽의 반러시아주의

1. 반러시아주의의 부상

유라시아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논할 때 핵심적 요소는 “러시아가 아시아와, 또한 유럽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러시아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인식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와 이해를 나누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오랫동안 공유되어 왔다. 러시아 스스로도 이 둘 사이 어디에도 소속을 정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내부적 자각과 충돌의 과정을 겪는다. 1881년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의 칼럼에서 국민들에게 아시아로의 진격에 원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불어넣는다.

유럽에서 우리는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기적자요 노예였지만, 아시아에서 우리는 주인이다. 유럽에서 우리는 타타르인이지만, 아시아에는 우리도 역시 유럽인이다. 아시아에서의 우리의 문명화의 사명은 우리에게 정신력을 줄 것이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시작으로 그저 두 개의 철로를 건설하라—하나는 시베리아로, 다른 하나는 중앙 아시아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고전 지정학'으로 명명하면서, 라첼에서 시작되어 쉘렌에 의해 'Geopolitik'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19세기 후반에서 1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시기를 지정학의 형성기로 삼았다. 투아테일(Gearóid Ó Tuathail)은 *The Geopolitics Reader*에서 '제국주의적 지정학'/'냉전의 지정학'/'지정학의 새로운 질서' 등으로 구분하면서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와 스파이크먼(Nicholas Spykman)까지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는다. 이에 반해 오로린(John O'Loughlin)은 *Dictionary of Geopolitics*에서 1870~1920년을 '고전 지정학의 시대(the period of 'classical geopolitics)', 1920~1945년을 파시스트 지정학과 민주적 지정학의 대결 시대, 1945년 이후를 미국 주도의 지정학 시대, 1980년대 이후는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의 출현 등 네 시대로 구분한다. Gearóid Ó Tuathail and Simon Dalby (eds.), 1998, *The Geopolitics Reader*. London: Routledge, NY, p. 5; John O'Loughlin, 1994, *Dictionary of Geopolitics*. Westport: Bloomsbury Publishing, Introduction 참조.

그러면 당신은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⁷

역사학자 마크 바신은 이를 러시아인의 ‘지리적 정신분열증’이라고까지 표현한다.

러시아에서 이 양가성은 동과 서 사이의 일종의 존재적 불확정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거의 3세기 동안 불가항력적으로 몹시 성가시게 이 사회의 자의식의 정중앙을 관통해 온, 진정한 지리적 정신분열증이라고 할 수 있다.⁸

물론 어느 국가나 지리적 위상이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민성과 주변 이웃 국가들의 인식을 결정적으로 지배해 오기는 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면 지리적 위상이 주는 영향력이 유라시아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더 강력할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제국을 향한 여정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16세기 차르 이반 4세 이래 동부로의 확장은 1552년부터 1917년까지 해마다 평균 10만 제곱킬로미터씩 증가했으며,⁹ 19세기 제정 러시아는 캅카스 지역과 투르키스탄을 통해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혀 갔다. 다른 한편 표트르 대제 이래 러시아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유럽에 속한 국가임을 증명하고자 시도했고, 3차에 걸친 폴란드 분할(1772, 1793, 1795)과 1809년 핀란드 합병의 결과 마침내 러시아는 유럽 동부와 북부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부에서 러시아는 무엇

7 Fedor Dostevskii, 1881, "Geok Tepe," pp. 36~38, Mark Bassin, 1999, *Imperial Visions: Nationalist Imagination and Geographical Expansion in the Russian Far East, 1840-18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63 재인용.

8 마크 바신, 2011, 「아시아」, 니콜라스 르제프스키 엮음, 최진석 외 옮김, 『러시아 문화사 강의』, 그린비, 102~143쪽, 103쪽.

9 헨리 키신저 지음, 이현주 옮김, 2016,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 민음사, 66쪽; 제인 버뱅크·프레더릭 쿠퍼 지음, 이재만 옮김, 2010, 『세계제국사』, 책과함께, 282ff.

보다 발칸반도에 교두보를 확보해 보스포루스 해협과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자 진력했다.

다른 한편 크림전쟁(1853~1856) 이후 영국의 목표는 파리조약(1856)을 통해 러시아가 동지중해를 위협하거나 영국의 영토와 인도행 행로를 교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러시아의 위협이 강화되면 대륙세력을 방패 삼아, 혹은 그들과의 동맹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고, 이들 대륙세력이 강화되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고립시키고자 시도해 왔다.¹⁰ 그러나 프랑스가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파리조약의 정치적 토대가 무너진다. 러시아는 프랑스의 약화를 틈타 오스만 제국을 침략하고자 했고, 흑해함대 건설을 밀어 붙이면서 흑해 동안의 도시 포티(Poti)에 새로운 군항도시를 건설한다. 1878년 산스테파노조약에 의해 오스만이 물러나면서 불가리아의 영토가 발칸반도에서 확대되자 유럽의 열강들은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긴장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의도와 어긋나게 발칸반도에서 불가리아가 거둬 영토를 확대시켜 나가자 러시아는 불가리아 군주를 납치해 강제로 퇴위시키면서까지 불가리아를 복종시키고자 진력했으나 실패한다. 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불가리아를 지지하자 러시아로서는 불가리아와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의 실현을 명분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슬라브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오스만의 뒤를 이어 남동유럽 지역에서 패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제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튀르크 부족에 맞서 유럽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또 다른 한쪽은 발칸반도의 정교회와 슬라브 민족의 수호자로서 서로를 견제하고 밀어내고자 한 것이다.¹¹

10 Adolf M. Birke and Hermann Wentker, 1994, "Einleitung," Adolf M. Birke and Hermann Wentker (eds), *Deutschland und Russland in der britischen Kontinentalpolitik seit 1815*, München: Oldenbourg, pp. 7~8.

11 1903년 세르비아에서의 국왕 암살과 이를 둘러싼 발칸 국가 내에서의 요동치는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클라크 지음, 이재만 옮김, 2019, 『몽유병자들』, 책과함께, 39ff.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국가의 정치적 운명은 통일적 지배에 좌우된다고 고 받아들인 러시아는 19세기 말이 되면 지정학적 실체로서 완전히 그 형태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확장된 동부 영토는 인구가 적거나 거의 없는, 근대 문화와 기술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러시아의 확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집중된 것은 그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어떤 선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지역이 유럽에 비해 정복하기 쉽고 저항도 적었다는 점에 연유할 것이다.¹² 하지만 내부적 논란도 언제나 따라왔다. 1865년 모스크바 언론계의 차르로 불리던 M. N. 카트코프(M. N. Katkov)는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확장하는 일은 러시아를 유럽에서 약화시킬 것이다. 열강으로서의 러시아의 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부의 경계 영지를 지배하고 흑해에 다다를 때 생겨난다. 우리의 역사가 수행되는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¹³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도 스토엠프스키는 1881년,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유럽에서 이루지 못한 국가적 쇄신을 아시아를 통해 이룰 수 있음에 아시아에 의미가 있다고 쓴다. “당신들은 보지 못합니까, 아시아로 새로이 돌아감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아메리카 발견 당시 유럽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 그 사명, 아시아에서 우리의 문명 교화 사명은 우리에게 활기를 줄 것입니다. …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해 나가지만 한다면.”¹⁴ 즉, 아시아가 러시아를 유럽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 국가적 정체성의 표현이었으며, 동시에 자신들을 제대로 된 유럽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서구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미 러일전쟁의 발발 오래전부터 광대한 동아시아 제국을 획득할 전망에 사로잡힌 고문들에 둘러싸여 있던 니콜라이 2세(재위 1894~1917)는 북중국으로, 요동반도와 조선 북부로 꾸준히 진출하며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갔

12 마크 바신, 2011, 앞의 책, 110~116쪽; Mark Bassin, 1999, *op.cit.*, pp. 19~36.

13 Dietrich Geyer, 1977, *Der russische Imperialismus 1860-1914*, Göttingen: V&R, p. 77 재인용.

14 마크 바신, 2011, 앞의 책, 128~129쪽.

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러시아의 인구 증가와 경제력 증강이었다. 1860년 블라디보스토크를 만들면서 극동 정복과 동해 접근이 완성되었지만 1896년 조선 국왕의 러시아 공사관 피신과 1897년 12월의 요동반도 점령은 일본을 자극했다. 1899년에는 러시아가 부설하는 남만주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며, 1903년에는 동청철도의 전 노선이 개통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다시금 유럽 열강들의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받아들인 국가는 일본이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괴력을 지닌 팔을 뻗는 날이 즉 일본의 인내심도 폭발하는 날이라는 것은, 만주문제가 제기된 첫 단계부터 구미 여론이 기대했던 바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실로 이마저도 참았다. … 일본 국민의 성질을 이해하는 열강들 역시 사실 이와 같은 인내가 일본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양해할 것이다.”¹⁵

극동에서 프랑스-러시아가 자치령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놀란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영국 또한 영일동맹(1902)을 통해 지금까지의 ‘영광의 고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동맹은 극동에만 제한된 동맹이었다. 러시아의 만주 변경에서 일본 지상군이 가하는 위협은 영제국의 북인도 변경의 취약한 상태를 상쇄할 것이고,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에 대항해 균형을 맞춰 줄 것이었다.¹⁶ 영국이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의 권력과 영향력 증대였다. 그래서 영국은 일본 편에 서서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고자 했고, 동시에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해 제국 세력권 분할 협정으로 러시아를 속박하려 했다.

러시아는 “유럽 기독교 문명의 다른 주역들과 함께 신의 뜻에 의해 화석화된 동양사회에 계몽과 문명을 가져다줄 사명을 지게 되었다는 확고한 신념”¹⁷

15 『도쿄아사하신문』 사설, 1903. 10. 28,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옮김, 2019, 『러일 전쟁: 기원과 개전 2』, 한길사, 913쪽 재인용.

16 크리스토퍼 클라크, 2019, 앞의 책, 236쪽.

17 마크 바신, 2011, 앞의 책, 121쪽.

에 기대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서구 제국들에 묶어 놓으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일전쟁을 정당화하고 주전론을 이끌었던 일본 내 상층하는 여러 논리들 가운데 하나가 전쟁을 야만과 문명 간의 전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가토 요코는 러일전쟁 발발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남만주의 문호를 폐쇄하는 러시아가 문명국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의 권리로 응징해야 된다는 당대의 논리(1904)를 인용한다.

우리들이 러시아의 영토확장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다만 그 영토확장 정책이 반드시 가장 비문명적인 외국무역의 배척을 수반하기 때문에, 맹연히 자위의 권리를 대항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⁸

즉, 그 기준이 무엇이든 비문명국이라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문명의 적’을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가 당대에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러시아든 일본이든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덜 발전된 국가를 식민화하고 더 넓은 공간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인종주의적, 인류학적 요소들과 지리 결정주의가 결합했다. “황화라는 말이 타타르 인종의 침입을 의미한다면 나는 도리어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는 것이 황화라고 생각한다.”¹⁹ 즉 한편으로 일본은 스스로를 서구 문명에 동일화시켜 아시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 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양 문명을 대표해 러시아에 패배를 가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특권을 강조해야만 했다.

서구인들이 바라보는 러시아에 대한 시각도 일본이 보는 그들에 대한 시각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곳 러시아인들은 나를 즐겁게도 하고 놀라게

18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정로(征露)의 목적」, 『신인(新人)』, 1904년 3월호, 가토 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 2003,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태학사, 135쪽 재인용.

19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1907, 『파황화론(破黃禍論)』, 아마무로 신이치 지음, 정선태·윤대석 옮김, 2018,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 114쪽 재인용.

도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콘스탄틴의 정원에 있는 훈족이나 고트족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명을 좋아하고 경멸하며,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 성장의 과실들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것이 익기를 기다려 와서 취하고자 합니다.”²⁰

많은 서유럽인들에게 러시아는 “유럽적 외피를 쓴 아시아 국가”²¹거나, “유럽의 심장에 대초원의 활력을 안겨 주는 혼혈아 같은 존재”였다.²² 기본적으로 이런 ‘문명 대 야만’이라는 이분법은 인종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전개되었고 다시금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환원된다. 후일 카를 A. 비트포겔(Karl A. Wittfogel)에 의해 유명해진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라는 도식에 따르면 차르 전제정은 동양식 전제주의의 러시아적 변형에 불과하며, 러시아 독재정은 모스크바 공국과 러시아 제정을 정치적으로 더 다지화된 유럽 국가들로부터 구별하는 근거가 되었다.²³

2. 독일의 반러 전통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19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오래된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위협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유럽의 동부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가능성과 불안이 늘 있어 왔고, 독일의 동쪽 국경과 서쪽 국경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전선을 맞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이 이미 186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른 한

20 Cecil Spring-Rice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루스벨트에게 보낸 편지 (1897.8.1.), Sönke Neitzel, 2000, *Weltmacht oder Untergang: Die Weltreichslehre im Zeitalter des Imperialismus*, Paderborn: Schöningh, p. 242 재인용.

21 박노자, 2024, 『전쟁 이후의 세계』, 한겨레, 39쪽.

22 헨리 키신저, 2016, 앞의 책, 63쪽.

23 마크 바신, 2011, 앞의 책, 109쪽.

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동부 유럽 민족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에 바탕해 이들 지역으로의 독일 영토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부분적으로는 이주를 실행에 옮겨 왔다. 즉, 두려움과 우월감이 한데 섞이면서 동유럽, 발트해 연안, 러시아를 향한 진격이 민족 확대의 필연적 전제로 변형되었다.²⁴ 나치 시대 ‘동부로의 진격(Drang nach Osten)’이라는 표어로 상징되는 동유럽과 남동부 유럽을 향한 침략 욕구는 부분적으로는 중세시대부터 진행된 유럽 동부로의 독일인의 식민과 이주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²⁵ 인종적 우월감과 비문명 지역에 대한 개화의 사명이 겹쳐지면서 기존 주민에 대한 일방적 집단추방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고는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 시대 주로 반러 사고를 지닌 언론인들과 범독일연맹(Alldeutscher Verband) 등 게르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극우 단체들에 의해 주장되고 확산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선제공격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25년 동안 제대로 설 수 없을 만큼 러시아가 많은 피를 흘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그들 정부를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해안도시를 폭격하며, 그들의 산업과 상업을 파괴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적 원천을 장기간 혼들어야만 한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들 세계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북해와 흑해의 양 바다로부터 러

24 1870년대 이후 독일인의 반러감정과 적대상(敵對像)의 형성에 대해서는 Fritz Fischer, 1974, *Krieg der Illusion: Die deutsche Politik von 1911-1914*, Düsseldorf: Droste, pp. 77~84, "Ideologie der Russlandfeindschaft" 장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25 예를 들어 베사라비아(Bessarabia)는 러시아가 터키와의 전쟁(1806~1812)의 결과 흑해 연안에 새롭게 획득한 영토로서, 19세기 초 독일인들이 집단 이주해 살던 곳이다. 1800년대 초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루마니아의 영토가 된다. 그러나 나치는 이 지역을 ‘독일 민족의 품’으로 되찾았고, 1940년 다시금 소련의 영토로 귀속된다. 소련의 패망 이후 이 지역은 몰도비아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나뉘게 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는 다시 러시아가 일부를 점령 중인 지역이 되었다. Dieter Langewiesche, 2011, "Wo der deutsche Osten lag," Annette Grossbongardt, Uwe Klussmann, Norbert Pötzl (ed), *Die Deutschen im Osten Europas*, München: DVA, p. 140.

시아를 쫓아내야 한다.²⁶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Bismarck)의 목적은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이었고, 다른 열강들이 반독일 동맹을 결성해 만들어질 중부 유럽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1879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방어조약을 체결하며, 이는 1881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제동맹으로 발전한다. 그 목적은 프랑스가 러시아와 반독일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함에 있었다. 1882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묶는 3국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은 유럽의 중앙부에서 서쪽은 프랑스에, 동쪽은 러시아에 대항하는 견고한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비스마르크는 1887년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을 통해, 한쪽이 제3국과의 전쟁에 관여할 경우 중립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거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중립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 간의, 혹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간의 전쟁 시도는 단념될 수밖에 없었다.²⁷ 또한 조약은 러시아의 보스포루스 해협 장악을 인정하기로 했다. 바로 이런 비스마르크의 애매 모호한 외교정책 덕에 발칸반도는 20년 이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1888년 빌헬름 2세가 새롭게 독일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고, 2년 후 비스마르크가 실각하면서 그동안 유럽 열강의 균형 내에서 자제해 왔던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은 새로운 단계를 맞게 된다. 새 수상 카프리비(Georg Leo Graf von Caprivi)는 유럽에서의 세력균형 유지를 통한 독일의 안전 보장이라는 전략에서 벗어나 유럽 중심부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힘을 합쳐 프

26 빌로가 홀슈타인 수상에게 보낸 서한(1887. 12.10), Fritz T. Epstein, 1973, "Der Komplex 'die russische Gefahr' und sein Einfluss auf die deutsch-russischen Beziehungen im 19. Jahrhundert," Immanuel Geiss, Bernd J. Wendt (ed.), *Deutschland in der Weltpolitik des 19. und 20. Jahrhundert*, Düsseldorf: Bertelsmann, pp. 145~146 재인용.

27 크리스토퍼 클라크, 2019, 앞의 책, 212쪽.

랑스, 영국, 러시아와 경쟁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카프리카가 보기에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은 실효성도 없고 독일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보호해 줄 이유도 없었다. 독일은 더 많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독자정책을 펴야 했다. 그는 1890년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 연한이 다 되자 자동 소멸되도록 방치한다.²⁸ 이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러시아는 당연히 독일에 맞설 견제 세력을 찾았고, 프랑스가 기꺼이 이에 호응했다. 프랑스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둘은 영국과 독일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입장이었다. 결국 1882년 양국 간의 합의는 2년 후 양국 간의 군사조약으로 발전한다. 프랑스는 러시아가 독일로부터 공격받거나 독일과 연합한 오스트리아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러시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반대로 러시아는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공격받거나, 독일과 연합한 이탈리아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프랑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프랑스와 러시아의 ‘어울리지 않는(incongruous)’ 연합”²⁹의 뿌리는 1870년 독일 제국의 알자스-로렌 지방 병합에 뿌리를 대고 있었다. 이후 프랑스는 오로지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해 국민 여론을 부추겼으며, 반독일 연맹을 결성해 독일을 견제하는 것만을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만일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면 독일은 동과 서, 양 전선에서 적대국과 맞부딪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 먼저 러시아를 동맹체제 안에

28 독일의 각료들은 빌헬름 2세를 신뢰하지 않아 정책 수립과정에서 그를 멀리했으며,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서도 빌헬름 2세는 관여하지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전적으로 전혀 외부 경험이 없던 수상인 카프리카의 결정이었다. 독일에서 카이저(황제)가 일시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되찾는 경우는 모로코 위기에서처럼 고위 관료들의 정책이 실패한 경우였다. 크리스토퍼 클라크, 2019, 위의 책, 297쪽 참조.

29 Frederick J. Teggart, 1919, “Geography as an aid to statecraft: An appreciation of Mackinder’s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Geographic Review* Vol. 8, N. 4/5, p. 241. 매킨더는 이를 민주정과 전체정 간의 동맹이라면서, 프랑스가 독일이 동유럽에서 위협의 중심지임을 일찍이 간파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나름의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해퍼드 존 매킨더 지음, 임정관·최용환 옮김, 2022, 『심장지대』, 글항아리, 178~180쪽.

끌어들이는 방법(삼제동맹, 1873)밖에 없었다. 하지만 발칸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동맹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만일 독일이 이 양국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오스트리아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독일로서는 러시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외교방식을 비교해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다음과 같이 독일의 대처를 비판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제안이 거부되자 독일 지도자들은 심기가 불편해졌고, 호전적으로 돌변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은 느리면서도 점진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를 받아들였던 프랑스와 현저하게 대조되었다. 프랑스는 러시아를 20년 동안 기다렸고, 또다시 영국을 15년 동안 기다리면서 합의를 제안했다. 비스마르크 이후 독일은 자신이 초래한 소란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이 상당히 아마추어처럼 서툴렀고, 근시안적이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야기한 대결 구도에 막상 직면하면 소심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³⁰ 비스마르크의 퇴임 이후 1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 실질적으로 독일의 권력은 제국 어느 누구에게도 집중되지 못한 채 좌충우돌을 반복한다.

영국은 프랑스-러시아 간 동맹이 지속되는 한 독일의 침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굳이 독일과 유대를 강화해 프랑스와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적대감을 살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1904년 영국-프랑스 간의 화친협정(Entente Cordiale)이 맺어지자 독일은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 독일에 남은 카드는 외교가 아닌 오로지 군비증강과 자력만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독일 정치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유독 느끼게 깨달았는데, 주된 이유는 세계 제국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 자체가 그들이 독일에 맞서 결코 단합하지 못할 것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책 수립자들은 화해정책을 통해 고립을 타파하기는커녕 자립 추구를 지도 원리로 격상했다. 이 노선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징후는 대규모 해군 증강 결

30 헨리 키신저 지음, 김성훈 옮김, 2023, 『헨리 키신저의 외교』, 김앤김북스, 182쪽.

정이었다.”³¹

이처럼 독일은 1870년 통일 이후 소위 ‘독일 문제(Deutsche Frage)’로 유럽을 긴장시켰지만 소득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빌헬름 2세가 제창했던 ‘세계정치(Weltpolitik)’는 오히려 불안정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불필요한 경계만 증가시켰다. 독일은 ‘러시아의 위협’뿐 아니라 소위 ‘황화(gelbe Gefahr)’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4년 2월 4일 독일 제국의 수상인 빌로(Bernhard Fürst von Bülow)는 독일 황제에게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을 칭찬하면서 만일 러시아가 이를 회피한다면 20년 내에 모스크바와 폴란드는 일본의 위협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³²

독일의 민족주의 보수 역사가이면서 세계를 여행한 인종연구가이기도 한 알브레히트 비르트(Albrecht Wirth, 1866~1936)는 1905년, 자신의 저서 『황색인과 슬라브인의 위협』에서 독일이 당면한 러시아와 황색인종의 위협을 서술하면서 어느 쪽이 더 급박한가에 대한 선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슬라브의 위협과 황색 위협, 이 두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 두 악조건 중에서 우리는 보다 작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자오저우만(膠州灣)은 현재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들으면 조급해진다. 이 질문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완전히 균형을 상실했다. 분명, 그렇다, 확실하게 동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소유물은 위협당하고 있다. 어쨌든,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전적으로 손가락 하나를 잃는 것일 뿐이다: (그에 비하면-필자) 유럽, 우리의 동쪽 국경에서는 팔 전체를 잃는 문제이다.³³

31 크리스토퍼 클라크, 2019, 앞의 책, 249쪽.

32 Fritz T. Epstein, 1973, *op.cit.*, p. 144.

33 Albrecht Wirth, 1905, *Die gelbe und die slawische Gefahr*, Berlin: Gose & Tetzlaff, p. 34.

III. 고전 지정학의 전개와 러시아

1. 대륙 지정학: 라첼-셀렌

1) 라첼의 유기체적 국가론

아직 '지정학(Geopolitik)'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은 주로 국가의 경제, 인구, 정치 등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기후나 식생과 같은 자연지리적 요소와 연결시켜 서술하는 방식이었다.³⁴ 여기에 독일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은 자연지형이 갖는 정치적, 전략적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학문분과를 처음으로 구상했다. 해외에서 벌이는 거대한 정복 전쟁들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할 것인가? 제국주의 시대의 정치지리학은 당대 제국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던 패권세력으로서의 정복 욕에 대한 강력한 '자연법칙적' 근거를 제공했다. 동물학자이자 자연지리학자였던 라첼은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하는 근간을 만든다. 그가 'Politische Geographie(정치 지리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는 유기체적 국가의 공간적 확장의 문제였다. 민족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공간상태까지 팽창하면 자연스럽게 국가는 확장과 정복을 시도하게 된다. 인간에게는 '성장하는 공간의 법칙'이란 것이 있으며, 이는 동물의 왕국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과 같은 것이다.³⁵

34 이러한 이론들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전인 19세기 후반 시도된 이론화는 주로 지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에 따라 학문적 개념도 '정치 지리학(Political Geography)'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 '지정학(Geopolitik)'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17년 셀렌(Rudolf Kjellen)에 이르러서다. 헤트너(Alfred Hettner) 등 유럽을 하나의 독립된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서쪽 반도로 보기 시작하는 시각도 이들 19세기 후반 유럽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를 세기 전환기 유럽 지리학의 흥성에 대해서는 Iris Schröder, 2008, "Das Europa der Geographen: Deutsch-Französische Geographien Europas im späten 19. und frühen 20. Jahrhundert," H. Kaelble (ed.), *Selbstverständnis und Gesellschaft der Europa*, Frankfurt/M.: Peter Lang, pp. 29~60 참조.

35 Friedrich Ratzel, 1896, "Die Gesetze des räumlichen Wachstums der Staaten. Ein Beitrag zur wissenschaftlichen Politischen Geographie," *Petermanns Mitteilungen*, XLII, pp. 97~107.

그는 동물학이나 식물학적 법칙이 통용되는 자연과학적 원리를 세계사 해석에도 적용해, ‘생존공간(Lebensraum)’이란 개념을 1901년 처음 만들어 사용한다. 그는 해양세력인 영국과 육상세력인 독일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삶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섬 국가로서의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이용하는 법을 이해한 국가이며, 최근에는 일본 또한 영국의 예를 따르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⁶ 그래서 라첼은 독일이 육상에서의 세력 확대만을 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토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이미 유럽 대륙의 고정된 정치 체제 안에서는 한계에 달했고, 이제는 바다로의 진출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다. 과거 그리스나 로마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까지의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독일도 무역은 해군 깃발을 따르고, 이들의 보호 아래 자신들의 무역의 자유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엄청난 공간에 대한 지배가 바다를 통한 접근으로 가능하며, 세계 지배 또한 우선 바다로의 접근이라는 작은 걸음의 시작에서 성장하게 된다. 바다는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지만, 바다의 모든 부분들은 대양의 일부이고, 그 자체로서 자유이다.³⁷

즉, 라첼은 굳이 해양세력과 육상세력을 카테고리화 하지 않고 대륙과 해양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였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범독일연맹’ 등을 통해 극우 민족주의 그룹의 해외 식민지에 대한 욕망에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독일 해군의 급격한 확장이 독일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엄청난 필력으로 다양한 당대 문제에 관해 서술했는데, 1884년 해외 팽창의

36 Friedrich Ratzel, 1906, "Inselvölker und Inselstaaten. Eine politisch-geographische Studie," *Kleine Schriften*, Bd. 2, München: Oldenbourg, pp. 294~310.

37 Friedrich Ratzel, 1900/1901,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sse*, München: Oldenbourg, p. 5.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이어, 1900년에는 해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해군력 증강을 강조해 해군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 내기도 했고, 해양을 “민족의 규모를 결정하는 원천”이라고 공개적으로 찬양하면서 당대의 전함 건설 붐에 기름을 부었다.

1900년의 저서 『민족 규모의 원천으로서의 해양』에서 라첼은 “독일의 세계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도 강력해져야만 한다”라면서, 자신의 해양력 강화에 대한 사고는 이미 독일에서 전함 건설을 두고 거센 논쟁이 일기 이전부터 『정치 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München, 1903) 등의 저서를 통해 주장해 왔음을 밝힌다. “모든 국가의 발전은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의 전개라는 법칙하에 놓여 있다”³⁸라고 표현함으로써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기체적 특성을 설명한 라첼의 유명한 명제도 바로 이 저서에 기원한다. 이 문장은 육상보다 우월한 바다의 통일적 형태에 대한 서술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해양에 대한 지배 또한 확장하는 공간의 법칙에 따라 성장하며, 바다는 이 법칙을 육지보다 훨씬 분명하게 보여 준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바다의 광활함과 평평함 속에서 훨씬 순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세계 열강이 된다는 것은 곧 해양세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거기에 독일의 해군 문제의 결정적 의미가 있다”³⁹라는 것이다. 그는 영국이 세계의 해양권을 점령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았다. “대륙세력의 해군이 영국에 의해 파괴되고 난 이후 수십 년간 세계의 모든 바다는 영국의 손에 넘어갔었으며, 과거에 없던 차원의 해양 세계제국을 이룩해 냈다. 오늘날 새롭고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그 시작은 프랑스가 1830년 지중해에서 알제리를 정복하고 지중해의 해양세력이자 식민지 세력으로 복귀

38 “Alle Staatenentwicklung steht unter dem Gesetz des Fortschreitens von engen zu weiten Räumen.” Friedrich Ratzel, 1900/1901, *ibid.*, p. 5.

39 Friedrich Ratzel, 1900/1901, *ibid.*, p. 5, p. 378.

했을 때부터였다.”⁴⁰

또한 그는 세계사에서 지배적 민족과 그 밑에 복속하는 민족은 언제나 있어 왔다면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망치가 될지, 아니면 그 밑에 놓여진 모루가 될 것인지는 그 민족이 세계적 상황의 요구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식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⁴¹ 라첼에게 있어 중부유럽은 사실상 독일과 동일하며, 독일의 중부유럽 정책은 ‘세계정책’과 동일한 의미였다. 한 가운데 위치한 국가는 인구상의 압력과 중심적 위치로 인해 패권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는데, 독일이 갖는 중심적 위치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시 프랑스와 러시아를 통해 양옆으로 집게처럼 눌러게 된다는 점이었다. 만일 독일의 외교정책이 이러한 학문적 지식에 기반한 불가피성을 소홀히 한다면, 주변 이웃국가들에 의해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독일이 중부유럽이라는 지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으면서, 러시아, 영제국, 미국 등과 동등한 권한을 인정받는 세계적 국가라고 치켜세운다. 이를 유지시킬 계획으로서 그는 독일에 의해 지배되고 제어되는 ‘중부유럽 경제연합(Der mitteleuropäische Wirtschaftsverein)’의 창립을 지지했다.⁴²

국가를 거대한 유기체로 파악하는 시각, 더 나아가 ‘생존공간’의 요구는 전적으로 지정학이 만들어 낸 발명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나의 다듬어진 논리로서 작용하면서 이미 러일전쟁 이전부터 독일의 팽창적 사고를 지탱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라첼은 순수하게 해양권력만으로는 지배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권력의 기반을 추구할 수 있는 대정책의 이상형은 …

40 Friedrich Ratzel, 1900/1901, *ibid.*, p. 378.

41 Friedrich Ratzel, 1906, “Flottenfrage und Weltlage.”(1897), *Kleine Schriften*, Bd. 2, München: Oldenbourg, p. 377.

42 Friedrich Ratzel, 1904, “Der mitteleuropäische Wirtschaftsverein,” *Grenzboten* 1, pp. 253~259, p. 258.

대륙적 모티브와 대양적 모티브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⁴³ 그 결과 러시아가 태평양과 아시아로 진격하는 것은 지배적 지위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보았고 이는 진정한 패권국가로서의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러시아는 도나우강 하부에서 우수리강까지 지역의 경화되고 욕구 없는 민족의 힘을 주도했으며, 이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유럽 쪽 튀르키예,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조선이 와해되고 새롭게 건설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모든 지점에서 러시아는 영국과 만나며, 대륙국가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을 넓은 기반 위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투입할 수 있음에 비해 영국에게는 자신과 이들 현장들 사이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다. 러시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울까지 여기에서 자신들의 절대적 힘을 대단히 잘 발휘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⁴⁴

2) 셸렌의 국가학

19세기 후반, 라첼의 이론을 수용해 세계관을 구성하고 그 기반 위에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했던 스칸디나비아 학자가 있었다. 루돌프 셸렌(Rudolf Kjellen, 1864~1922)은 1900년부터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Göteborg University)에 세계 열강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며, 그 첫 결과를 1905년 두 권의 저술로 내놓는다.⁴⁵ 그는 당대의 패권국가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43 Friedrich Ratzel, 1900/1901, *op.cit.*, p. 72.

44 Friedrich Ratzel, 1898, "Politisch-geographische Rückblicke, 3. Das russische Reich," *Geographische Zeitschrift*, Vol. 4, H. 5, pp. 268~274, p. 268.

45 Rudolf Kjellen, 1905, *Stormakterna: Konturer kring samtidens storpolitik(The Great Powers: Contours of contemporary high politics), I, II*, Stockholm: Hugo Gebers, 이후 그는 1911~1913년 사이 초판을 더 확장시켜 발간하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 제목을 *The Great Powers and the World Crisis*로 바꿔 전후 바뀐 현실에 맞는 개정판이 나온다. 그의 책은 1930년까지 23판을 거듭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15년 라이프치히/베를린에서 출간된 독일어본을 참고하였다. *Die Grossmächte der Gegenwart*, Leipzig/Berlin: Teub-

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총 8국가를 선정하고, 국가적 기원, 제국으로서의 위상, 민족, 사회 및 국가체제, 외교 문제 등을 그들 고유의 지정적 특성에 기반해 국가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에게도 역시 유럽에서 러시아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쉘렌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은 1809년 러시아의 핀란드 합병을 이웃 국가로서 지켜본 다른 스칸디나비아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에게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 경제적 융성에 대한 노력 없이 무자비하게 자신들 국가의 외적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만 진력해 온 국가였다. 러시아는 유럽 역사에서의 전형적 특징들, 즉 기사제도나 학술제도, 르네상스, 계몽 등등에 참여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오직 자신들만의 뿌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크림전쟁을 통한 강제적 접촉 이후 유럽의 문화적 이상을 향한 새로운 개혁의 시기를 맞는다; 농노제의 폐지, 일종의 자치제의 도입 및 철로의 건설이 그 결과이다. 19세기 말이면 근대적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면서 외적 팽창이 실패로 돌아가자 헌법제정과 농업개혁 등이 이루어졌다. 이제야 비로소 러시아는 외관상 서구 문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비잔틴적 국교회와 황제정치적 국가관(cäsaristischer Staatsgeist)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관과 관습, 나아가 그들의 문자나 낱짜 계산에 있어서까지 유럽 너머 자신들만의, 절반은 아시아에 속해 있다.⁴⁶

셸렌은 라첼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민족성의 종속적 성격과 유럽인의 자유로움을 비교한다.

ner, 1915. 매킨더보다 세 살 어렸던 셸렌은 정치학 전공자였지만, 학자이며 보수당 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둘의 삶의 이력은 비슷했다.

46 Rudolf Kjellen, 1915, *ibid.*, p. 157.

러시아 제국의 전례 없는 확대는 러시아 민족의 오리엔탈적 국민성과 함께 제카르주의(caesarism)를 자연스러운 국가형태로 이끌었다. 이런 상황이 유럽이 대민족이동을 통해 그들이 살던 가까운 지역 대신 바다를 건너 서부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부에서 사람들은 '찬 바람 속에 있는 것 같이'(라켄) 느꼈던 것이다.⁴⁷

당대의 많은 언론인과 학자들이 거대한 대륙 국가로서의 러시아와 미국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비교하는 서술들을 남기지만, 많은 경우 미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지리적, 혹은 경제적 요소들을 비교적 사실에 근거해 기록함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차르 제국으로 대표되는 야만적이고 전체적 군주국가로서의 위협과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쉐렌도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기존 유럽이 갖고 있는 러시아적 황량함에 대한 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서로 상반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러시아의 경관 유형은 그저 단순한 한 가지일 뿐이다: 툰드라, 숲, 무한히 뻗어 있는 스텝. 거대한 확산 자체의 이면에는 러시아 제국의 자연적 지세의 단조로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러시아의 발전에 일정 정도 무기력을 부여한다. 또한 전체 제국의 4분의 3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아시아적 부속 건물에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본토에 해당하는 곳에서도 국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강력한 퇴조는 명백하다.”⁴⁸

이어서 쉐렌은 러시아를 전쟁에서 패퇴시킨 일본에 대해 호의적 시각을 보이면서 러일전쟁을 계기로 미래의 러시아의 파국을 예견한다. “시작에서는 러시아가 더 무게가 있었다. 러시아는 외교적 방식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휘순(旅順)항을 넘어 그 적들을 직접적으로 조종하였고, 1898년에는 직접 중국으로부터 조차지를 획득하고 1900년 보어전쟁 기간 동안 만

47 Rudolf Kjellen, 1915, *ibid.*, p. 169.

48 Rudolf Kjellen, 1915, *ibid.*, p. 158.

주에서 확고하게 입지를 다짐으로써 이 거대한 나라가 영원히 이 지역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듯 보였다. … 백해의 얼음과 흑해의 막다른 골목 사이에 끼인 거인이 마침내 황해를 향한 팔 하나를 자유롭게 뻗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대과국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1904~1905년 일본과의 전쟁은 그 웅장한 건물이 그저 세계사의 포퓰리즘적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태평양을 향한 길이 다시금 막힌 것이다. - 추측건대 영원히.⁴⁹

라첼의 유기체적 지정학 시각을 이어받은 쉘렌은 기본적으로 독일 중심주의적 세계관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독일이 갖는 지리상의 중심적 위치로부터 두 개의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들을 끌어내는데, 하나는 지속적인 포위의 위협이다. 이는 오직 대대적인 전쟁무기 확보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안에서의 자연에 기반한 지도자적 위치이다. 독일이 놓인 자연지리적 강제력이 빌헬름 제국의 군사주의와 제국주의를 그 어떤 비판과 제어의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대응하면서 자립적 경제를 좇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비록 한 사람은 자연과학자에서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사회과학자로서 국가학적 입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지만, 두 사람 공히 세계 패권국가로서 독일이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과 유럽 정책의 핵심 열쇠를 지리적 상관관계들 안에서 규정하는 공동의 결과에 도달했다. 러시아를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경계함에서도 동일했다. 중부유럽 내 독일의 공간적 확장에 있어 라첼과 쉘렌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차이만 있었을 뿐인데, 라첼이 그 핵심을 서쪽에서 동유럽으로의 확장에 있다고 보았음에 비해, 쉘렌은 베를린-바그다드 축이라는 의미에서 남동유럽 공간을 강조했다.⁵⁰

49 Rudolf Kjellen, 1915, *ibid.*, pp. 176~177.

50 Rudolf Kjellen, 1915, *ibid.*

2. 해양 지정학: 머헨

유럽 대륙에서 라첼과 셸렌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성장을 공간에 대한 자연법칙적 성장과 소멸의 원리에 입각해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면, 대륙 건너 영국과 미국에서는 또 다른 지리결정론적 해석에 입각해 국가 간의 충돌을 설명함으로써 고전 지정학의 나머지 기반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세계 열강들은 각자 자신의 지리적 위상에 따라 바다나 대륙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지만,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패권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들이 위치한 세력 기반을 넘어서는 문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역사에서 해양세력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지배해 왔다면, 20세기를 맞아 육상세력에 의해 해양세력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논의를 주도했던 이들이 앵글로-색슨적 배경을 갖고 있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영미권에서 처음으로 역사 속 해양세력의 절대적 부상을 가장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사람은 미국의 해양사학자 겸 제독인 앨프리드 머헨(Alfred Mahan, 1840~1914)이었다. 그는 이미 1890년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을 발간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근대 해군 전략과 해군정책 이론의 총체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의 클라우제비츠'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했다.⁵¹ 강대국들의 승패는 주로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리라는 것이다. 당연한 귀결로 함대의 증강을

51 Alfred Mahan, 1890,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한국어판: 알프레드 마한(머헨), 2006,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2, 책세상]. 일본에서는 1897년 머헨의 책이 『해상권력사론』으로 번역되어, 당대 러일전쟁 시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작전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 真之, Akiyama Saneyuki) 등에 의해 널리 소개된다. 그의 영향력으로 제해권과 통상지배의 확보가 해상권력의 목표라고 하는 발상과 함대결전을 제해권 확보의 핵심으로 보는 견해가 일본에 널리 유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토 요코, 2003, 앞의 책, 139쪽. 러일전쟁 시 대한 해협 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했던 우리유 소토카치(瓜生外吉, Uryu Sotokichi)는 머헨의 해군사관학교 교관 시절 그의 수업을 들은 제자였으며, 이 해전 계획을 수립한 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 중령은 미국 유학 중 머헨을 직접 찾아가 1897년 뉴욕에서 직접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Sadao Asada, 2007, *Culture Shock and Japanese-American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p. 64.

통한 미국 해양력의 강화를 그는 주장했다.⁵² 영국에서도 머헨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은 ‘해군주의자들의 바이블’이 되면서 찬사와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세계적 패권국가는 동시에 언제나 해양세력이었다면서, 1660년, 즉 30년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1783년 인도양에서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해전까지 서구 국가들이 벌인 약 30개의 해전을 분석하고 그 경과를 서술함으로써, 세계사의 중요한 해전을 통해 국가 해양력의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들을 끌어내고자 했다. 그에게서 영국 해군은 미국 해군이 따라야 할 역사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해양국가였다. 그는 강력한 해양력 획득을 위한 일반적 조건으로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⁵³

- 1) 국가의 지리적 위치
- 2) 자원, 기후, 해안선과 같은 물리적 조건들
- 3) 영토의 크기
- 4) 인구
- 5) 국민성
- 6) 정부 형태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 제도

이 여섯 가지 조건들이 적절하게 조합될 때 강력한 상선단과 함선단의 건설은 국가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한 국가의 해양력을 해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식민지’를 추가한다. “영국의 해군기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다. 그래서 영국 함대는 자국의 기지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기지들 사이의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지들을 은신처로 삼을 수 있

52 해양력과 해군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해양력(sea power)을 “넓은 의미의 해양력은 무력에 의해 바다나 바다의 일부분을 지배하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통상과 해운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머헨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알프레드 마한, 2006, 위의 책, 70쪽, 같은 시기, 즉 1893년 미국의 역사가 프레드릭 J. 터너(Fredrick J. Turner)는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를 발표하면서, 대륙 서부의 미개척지를 향해 뻗어 가던 미국의 확장도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는 테제를 발표함으로써 식민지 개척에 대한 미국의 팽창주의적 의지를 지정학적으로 뒷받침한다.

53 알프레드 마한, 2006, 위의 책, 76~153쪽.

20세기 전환기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와 고전 지정학의 형성

다.”⁵⁴ 당대의 다른 모든 지리·지정학자들처럼 그 또한 철저한 식민주의자였으며, 미국의 문호개방정책(open door-politic)에 앞장선 전도사였다.⁵⁵

머헨의 영향력과 함께 때마침 가열된 식민지 쟁탈 각축은 해군력 증강에 대한 세계적 경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발전하는 함정 건조 기술도 큰 몫을 한다. 함정의 크기가 급속히 커졌고, 건조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이 재원의 많은 부분을 함대 건설에 쏟아부으면서 영국이 18세기 이후 이루고 유지해 온 해양강국으로서의 절대적 위상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⁵⁶ 1883년까지 영국 전함의 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의 전함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였으나, 이제 점차 그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표 1〉 각국의 전함 보유 수(1883~1897)

(단위: 척)

국가	1883년의 전함	1897년의 전함(건조 중인 전함 포함)
영국	38	62
프랑스	19	36
독일	11	12
러시아	3	18
이탈리아	7	12
미국	0	11
일본	0	7

출처: 폴 케네디 지음, 김주식 옮김, 2009,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384쪽.

54 알프레드 마한, 2006, 위의 책, 144~145쪽.

55 머헨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에 서거한다. 머헨의 영향력에 힘입어 1차 세계대전의 발발기까지 대부분의 강국들이 전함 확장에 주력하지만, 막상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에서 해군의 역할의 한계는 보다 분명해진다. 전황을 바다에서 결정짓기에는 육상과 공중에서의 무기들의 발전과 공급이 너무도 다양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저서들이 오늘날에도 해병 교육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고전으로 남아 있음은 역설적으로 이 부문에 달리 더 이상 새로운 발전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닐까?

56 폴 케네디 지음, 김주식 옮김, 2009,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347~353쪽.

〈표 2〉 각국의 전함 보유 수 1911(1913)

국가	총 톤수 (톤)	해군 병사 (명)	전함 (척)	대형 순양함 (척)	건설 중 (척)	드레드노트 전함 (Dreadnoughts)(척) 1913년 가을
영국	1,980,000	131,000	61	38	8	28
독일	720,000	45,000	29	16	12	17
프랑스	626,000	44,000	17	21	10	8
러시아	624,000	42,000	13	3	4	4
이탈리아	540,900	30,500	19	5	4	4
오스트리아 -헝가리	236,000	13,400	10	3	2	4
튀르크	62,500	3,000	4	4	-	-

출처: Friedrich Ratzel, 1900/1901,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sse*, München: Oldenbourg, p. 90.

머헨이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을 출간했던 1890년 5월은 마침 빌헬름 2세에 의해 비스마르크가 자리에서 물러난 지 두 달 후였다. 이제 홀로서야만 하는 제국의 젊은 황제는 머헨을 읽고, 독일이 유럽을 넘어 세계적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해양으로 팽창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다. 그는 한 편지에서 “나는 지금 막 머헨 함장의 책을 읽고 있다, 아니 씹어 삼키면서 외우고자 노력한다. 이 책은 일급의 책이며, 모든 측면에서 고전이다. 나의 모든 배들에는 이 책이 한 권씩 비치되어 있으며, 나의 장교들과 함장들은 부지런히 이 책을 활용하고 있다”⁵⁷라고 적는다.

근대 육군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인정받는 프로이센의 전통에 따라 독일은 육군에 집중해 왔다. 해군은 육군을 보충하는 병과에 불과했다. 이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육상세력으로 남고자 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점차 해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들 또한 확산되고 있었다. 1890년대 중반부터는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라는

57 W. E. Kivezey, 1947, *Mahan on Sea Power*,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p. 63; Dirk van Laak, 2000, “Von Alfred T. Mahan zu Carl Schmitt: Das Verhältnis von Land- und Seemacht,” Irene Diekmann u.a. (eds.), *Geopolitik*, Bd. 1.1, Potsdam: verlag für berlin-brandenburg, p. 260 재인용. 1898년 독일 제국해양부는 적어도 2,000부 이상 머헨의 책을 배포했다.

국내적 압력이 '해군주의자들'의 주도로 급증했다.⁵⁸ 비스마르크에게서 독일은 유럽 안에서 철저히 육상세력으로 남아야 했지만, 바로 그 점이 젊은 황제에게는 못마땅한 바였고, 1890년 비스마르크가 물러난 이후 이제 독일이 '양지바른 곳(Platz an der Sonne)'을 찾아 세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소위 '세계정책(Weltpolitik)'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인락했던 항구를 벗어나 거친 바다로 나가야만 했다. 1897년 제국 해군부장관에 임명된 알프레드 폰 티르피츠(Alfred von Tirpitz)는 빌헬름 2세에게 "영국에 맞서는 군의 입장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전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위 '티르피츠-계획(Tirpitz-Plan)'이 채택되었고, 1898년에는 해군양성법안이 마련된다. 그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함선의 건축을 통해 해군의 전력을 높여 영국 해군의 위협을 막아 내고자 했다.

국가는, 그것이 바다든 아니면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어떤 것이든, 세계적 이해가 있는 한 이를 대변해야 하며, 자신의 영토적 범위를 넘어서 그 힘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세계 무역, 세계 산업, 원양 어업과 세계 교통,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공격이 가능한 선단(Flotte)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일 국가의 힘이 해양, 즉 우리 해역 너머에서 뒤를 받쳐 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국가들 간의 이해 충돌과 자본과 무역세계에 대한 부족한 신뢰는 한 국가의 이런 삶의 외현들은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아예 드러나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선단의 가장 우선적인 쓸모는 바로 여기에 있다.⁵⁹

하지만 독일 해군의 확장은 티르피츠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으로 하여금 적대감만 증강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전통적 고립으로부터 탈출시켜 새로

58 폴 케네디, 2009, 앞의 책, 357쪽.

59 A. von Tirpitz, 1894, *Taktische und Strategische Dienstschriften des Oberkommandos der Marine*, Nr. IX vom 16. 6.; Dirk van Laak, 2000, *op. cit.*, p. 261 재인용.

은 동맹을 찾도록 만들었다. “1902년경부터 독일은 영국 외교정책과 국방 정책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멀리 분산되어 있던 (영국의-필자) 연합대대 들을 북해로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했다.”⁶⁰ 결과적으로 독일 내에서의 티 르피츠와 해군 지휘부의 군비경쟁은 요란한 수사와는 달리 변변치 못한 성 과로 끝났고, 이미 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영국과의 군비경쟁을 공식적 으로 포기한다. 독일의 군함 건조는 전적으로 ‘세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었지만, ‘세계정책’ 안에는 구체적인 정책도 명확한 정의도 없 었다. 이 시기 독일은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사모아 섬의 일부, 그 리고 산둥반도의 자오저우만을 얻었을 뿐이었다.⁶¹

해양세력, 즉 식민지 강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육상세력으로 남을 것인 가는 빌헬름 제국에서 지속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독일(Grossdeutschland) 을 향한 독일의 경로는 ‘세계제국(world empire)’을 추구하는 ‘세계정책(world policy/Überseepolitik)’과 ‘유럽의 맹주(Kontinental Macht)’를 추구하는 ‘대륙정책 (Festlandspolitik/Kontinentalpolitik)’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비록 ‘범독일 연맹’ 같은 극우 민족주의 집단에서는 이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취 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지만,⁶² 1914년을 향한 국제적 긴장이 높아 갈수록 제국 내부에서도 이 두 목표의 동시 추구가 지속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가 증가한다. 그리고 마침내 베티만홀베크(Theobald von Bethmann-Hollweg) 제국 수상은 1911년 11월 제국의회에 출석해, “독일은 세계정책을 추진하 기에 앞서 먼저 유럽 대륙에서 살아남아야 한다”⁶³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60 폴 케네디, 2009, 앞의 책, 417쪽.

61 독일의 ‘세계정책’이 무엇보다 국내의 중산층과 국내 노동자 계급을 염두에 두고 국내 결속을 위해 구상된 정책이라는, 소위 ‘사회제국주의(Sozialimperialismus)’ 이론은 1970년대 Hans-Ulrich Wehler와 이후 Wolfgang Mommsen 등에 의해 개진되었고,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Hans-Ulrich Wehler, 1973, *Das Deutsche Kaiserreich 1871-1918*, Göttingen: V&R; Wolfgang Mommsen, 1993, *Grossmachtstellung und Weltpolitik*, Frankfurt/M.: Fischer.

62 Theodor Reismann-Grone and Eduard von Liebert, 1905, *Überseepolitik oder Festlandspolitik? Alldeutsche Flugschriften 22*, München: Lehmann.

63 브랜든 심스 지음, 광영완 옮김, 2014, 『유럽: 1453년부터 현재까지 패권투쟁의 역사』 II, 애플미디어, 82 쪽; Volker Berghahn, 1993, *Germany and the approach of war in 1914*, NY.: St. Martin's Press, pp.

1896년 이후 추구해 오던 해군 세력 증강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선언이었고, 육군에 기반한 전통적 정책, 즉 '대륙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해양 국가론은 민족적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는 했지만, 유럽의 중위에 위치해 있으며, 서부와 남부로의 확장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독일의 현실에서 목소리는 컸지만 소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선박뿐 아니라 철로 등 교통수단의 발전과 문호가 개방된 세계 무역의 발전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 인간으로 하여금 지리가 주는 제한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지정학적으로도 해양을 통해 보다 짧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해양 교통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가시켜 가고 있었다. 1869년 처음 열린 수에즈 운하는 당대에 가장 대표적 표상이었고, 동시에 영국 해양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나아가 1914년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천 마일의 해상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럼에도 해양교통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즉, 육상에서의 점차 촘촘해지는 철로망은 배에 의한 물자 수송을 상대화시켰는데, 특히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하필이면 러일전쟁 중 개통되었다) 그 빠르기와 가격에서 해상 수송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간편한 수단이었다. 또한 도로 건설의 증가와 자동차의 증가는 해상 교역을 훨씬 넘어서기 시작했다.

물론 전함은 전쟁에서 전략적 총괄 계획의 중요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해전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는 어려웠다. 현실에서도 해양세력과 육상세력이 전적으로 전쟁에서 맞붙는 일은 드물며, 더욱이 전함이 전쟁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아직 전투기가 일반적 전쟁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머헨은 러일 전쟁을 설명하면서도, 또는 역사적 해전들을 예로 들면서도 전략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그의 저서들은 군사사라는 측면에서는

136~155. 하지만 그렇다고 독일이 완전히 해군 증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1912년 티르피츠는 추가해군법을 통과시킨다. 그는 3척의 전함 건조 계획을 추가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독일 함대에서 활동 중인 함정 수를 전함 17척과 전투순양함 4척에서 전함 25척과 전투 순양함 8척으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폴 케네디, 2009, 앞의 책, 410쪽.

고전일 수 있으나, 해양의 경제적, 문화적 의미들을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해양사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 해군이 무장 해제된 후 티르피츠는 자신의 회고록의 끝에 다음과 같이 씩씩한 소회를 적는다. “독일 민족은 해양을 이해하지 못했다.”⁶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오직 단 한 번 영국 함대와 마주쳤지만 그 어떤 결정적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서 머헨은 1900년 『아시아 문제와 그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출간한다. 그는 책 전체를 통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한다.⁶⁵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문호개방의 실천전략으로서의 해양력 증강이었으며, 두 번째는 어떻게 세계가 러시아의 전진을 막을 것인가였다. 머헨에게서 ‘아시아 문제’란 곧 ‘러시아 문제’였다. 그는 다가올 육상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투쟁은 북위 30~40도 사이의 ‘주인 없는 땅’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지역은 러시아의 남하에 필요한 공간이며,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와의 싸움, 그리고 이에 대응해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이라는 네 해양 패권국들이 하나의 동맹으로 뭉칠 것을 제안한다. 러시아의 남진과 확산을 열강의 포위를 통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앵글로-색슨이 개입해 중국이 슬라브의 영토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까지의 러시아의 일반적 전진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 그 창고의 끝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 사이로 들어가고 있고, 이는 페르시아를 관통해 페르시아만까지 전진하고자 하는 유희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 러시아는 자연법칙과 인종적 본능에 복종해 지리적으로 양 측면에서 아시아의 남부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그것

64 Richard Hennig, 1931, *Geopolitik: die Lehre vom Staat als Lebenswesen*, Leipzig/Berlin: Springer, p. 97 재인용.

65 Alfred T. Mahan, 1900,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은 아시아의 중심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산맥들과 동투르키스탄과 몽골의 사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내적 행동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팽창된 양 측면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결코 약점이 되는 요소가 아니다. 이 다양한 부분들의 상호 지원; 그래서 러시아의 중심부는 깨질 수 없다.⁶⁶

머헨은 독일과 일본에 호의적이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리적 위상에 상관없이 다른 모든 세계 열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믿었다.

IV. 러일전쟁 이후 유럽의 지정학적 전개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배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다시금 유럽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극동에서 군사적, 외교적으로 진행한 노력은 모두 무로 돌아갔다. 극동을 향한 러시아의 야심은 실질적으로 무너졌다. 어렵게 유라시아 끝까지 연결했던 철도는 일본에게 빼앗기고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패퇴되었다. 돌이켜 보면 러시아가 패배한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일본에 비해 약해서라기보다는 조만간 전쟁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막연한 낙관론에 있었을 것이다. 어떠한 전쟁에서의 패배는 러시아 자신을 바꿔 놓았다.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팽창정책에만 몰두했던 차르 정권은 1905년의 혁명과 전쟁을 겪으면서 가능한 한 국내정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단행했다. 외교적 위기로 인해 다시 혁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 안 될 일이었다. “전쟁에서 패한 그해 10월 러시아 정부는 임의체포를 폐지하고, 연설, 종교의식,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차르의 성명을 발표한다. 또한

66 Alfred T. Mahan, 1900, *ibid.*, pp. 25~26.

각종 법안은 두마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징병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근대화 없이는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⁶⁷

만주와 대한해협에서의 러시아의 패전을 바라보는 서구 열강들의 심정은 복잡했다. 비스마르크의 퇴임 이후 어렵게 유지되던 유럽의 세력균형은 다시 무너지고 있었고, 러시아 군사력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에서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었고, 갈등의 초점은 다시금 유럽 대륙으로 옮겨 오게 된 것이다. 190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은 비록 러시아 외무장관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발칸반도에서조차 러시아가 물러나야만 하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의 동부 확장정책은 결과적으로 발칸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에도 독일에도 더 이상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고 서유럽이 볼 때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러시아를 대신해 독일 제국이 서유럽을 위협하는 주된 주체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영국으로서는 프랑스를 지원하는 길만이 프랑스를 독일의 침입으로부터 구해 내고 유럽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영국 해군의 세계적 지위가 도전받는 만큼, 유럽 대륙에서의 독일의 지배를 막는 일은 그들에게 절실한 일이었다. 러일전쟁은 영국이 극동 문제에서 숨을 돌리고, 유럽, 즉 독일 문제, 다시 말해 독일의 대규모 해군 확장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전쟁 승리 덕분에 영국은 5척의 극동 주둔 함정을 영국해협함대(Channel Fleet)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⁶⁸ 러시아로부터의 압력이 줄어든 만큼 영국은 1906년 인도 병력 증강

67 브랜든 심스, 2014, 앞의 책, 69쪽; 크리스토퍼 클라크, 2019, 앞의 책, 303~309쪽.

68 폴 케네디, 2009, 앞의 책, 400~404쪽. 그러나 영국 내 비판자들은 영국이 독일의 위협에 사로잡혀 자국의 나머지 부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고, 극동에서는 일본의 해군력을 확장시켜 인도뿐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영제국령의 방어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을 보류한다.⁶⁹ 그리고 1907년에는 러시아와 협약을 맺어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티베트를 둘러싼 지난 100년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조약을 체결한다. 중앙아시아를 두고 러시아와 영국 간 벌어졌던 '그레이트 게임'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빌헬름 2세는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의 소극적 대응을 통해 러시아나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고자 했다. 독일이 매번 일본에 가깝게 다가갔던 것은 일본에 대한 호의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실망의 반작용이었을 뿐이다.⁷⁰ 궁극적으로 빌헬름 제국의 '세계정책' 안에서 일본은 기껏해야 2차적 고려사항이었고, 일본 또한 이제 와서 영국, 프랑스 등과의 동맹을 끊고 독일과 연합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독일 언론이 러시아의 확장 의도와 그 위협을 과대하게 다루어 왔지만,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비로소 러시아에 대한 과장된 평가는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경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 전쟁으로 강력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러시아라는 괴물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 그리고 거대한 공격의 순간이 오게 되면 1억 6천만의 슬라브인들이 러시아의 지휘하에 비슬라강(Visla/Wisla)의 넓은 하류를 넘어 흘러 넘어올 것이며, 그 홍수는 오스트리아까지 합쳐도 기껏해야 9천만에서 1억 정도가 될 독일인을 향해 덮칠 것이다. 만일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독일인의 역할은 실패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슬라브 무리들은 마치 훈족이 갈리아족이나 이탈리아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럽 전체를 휩쓸어 버리게 될 것이다.”⁷¹

러시아 또한 독일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자신들이 발칸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오스트리아지만, 그 뒤에는 독일이 지키고 있다고

69 크리스토퍼 클라크, 2019, 앞의 책, 238쪽.

70 Christian W. Spang and Rolf-Harald Wippich (eds.), 2006, *Japanese-German relations until 1945*, London: Routledge, p. 6.

71 Otto Stern, 1905, *Die Seemachtfagen der Gegenwart*, Berlin: Deutscher Verlag, Sönke Neitzel, 2000, *op. cit.*, p. 115 재인용.

보았다. 대부분의 두마 의원들은 독일에 반감을 갖고 있었고, 나아가 독일 민족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출신의 장교당(Kadettenpartei) 지도자면서도 범슬라브주의나 러시아 쇼비니즘에 반대했던 P. N. 밀류코프(P. N. Miljukov)조차도 “유럽에서의 슬라브인들의 실질적인 집단화는 우리와 대등하게 동맹을 맺으면서 게르만주의에 맞서서 나갈 것이다”라고 당에 보고한다.⁷²

셀렌도 러시아가 물론 유럽에게는 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인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압력은 완화되었고, 차르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전달과 상쇄의 완충장치”가 되었다고 평가한다.⁷³

V. 맺음말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매킨더는 1904년 자신이 발표했던 논문 「역사의 지리적 축을 확장해 『민주주의적 이상과 현실』을 출간한다. 셀렌도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자신의 저서를 증보해 『열강과 세계의 위기』를 출간한다.⁷⁴ 비슷한 시기 독일의 지리학자 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는 라첼의 생물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1차 세계대전 중 자신이 진중에서 익힌 매킨더와 셀렌의 지정학을 두루 혼합한 전후 지정학적 체계를 구성해 가기 시작한다.⁷⁵ 1924년에는 자신의 지리학 동료들과 지정

72 Miljukov의 ZK der Kadettenpartei 보고서, 1909, 3, 1. D. Geyer, 1974, *op. cit.*, p. 223 재인용.

73 Rudolf Kjellen, 1915. *op. cit.*, p. 83.

74 Rudolf Kjellen, 1920, *Stromakterna och världskrisen(The Great Powers and the World Crisis)*, Stockholm: Hugo Gebers, 독일어 증보판 번역본은 1921년 출간된다.

75 Karl Haushofer, 1924, *Geopolitik des Pazifischen Ozeans: Studien über die Wechselbeziehungen zwischen Geographie und Geschichte*, Berlin: Kurt Vowincket; 이진일, 2015, 「'생존공간'(Lebensraum)과 '大東亞共榮圈' 담론의 상호전야-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적 일본관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29, 199~240쪽.

학지 *Zeitschrift für Geopolitik*를 창간해 편집장으로 활동을 이어 나갔다. 그는 매킨더가 영국인에게 보내는 독일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와 대응책을 장차 독일이 지정학적으로 취해야 할 반면교사로 받아들이면서 선취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한다.

고전 지정학의 모든 이론적 구성은 라첼에서 시작되었지만 러일전쟁을 거쳐 1차 세계대전까지의 비교적 짧은 시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신들의 논리들을 보충했던 핵심적 시기였다.⁷⁶ 한편에선 라첼-셀렌, 다른 한편에선 머헨-매킨더 등으로 이어지던 고전 지정학의 시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다양한 논리들이 하우스호퍼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전까지 하우스호퍼는 비록 창의적인 자신만의 지정학 이론을 구성해 내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독일과 스웨덴, 영미의 이론들을 종합한 폭넓은 유라시아 지정학 이론을 구축하면서 히틀러에게 관심을 구한다. 하지만 하우스호퍼의 기대와 달리 히틀러는 집권 이후 동부유럽과 러시아로의 진격에만 관심을 드러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제 고전 지정학은 앞 세대의 논의로부터 거의 진전되지 못한 채, 전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거나 수행하면서 이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쓰여지게 될 터였다.

돌이켜 보면, 한 국가의 지리적 위상과 관련된 자연 논리들을 자신들이 처한 필연적 전제로서 받아들인 결과, 고전 지정학은 자연지리학과 문화지리학이 갖는 요소들 간에 차별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리결정론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에 간혀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은 무시되었다. 학문이 정치적 정당화에 복무하게 될 때 자기성찰이라는 미덕은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세계는 오랫동안 제국주의적 침탈과 나치가 일으킨 전쟁의 혼돈 속에 휩싸여야 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학문이 아니라

76 매킨더 또한 라첼의 유기체 국가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의 목표는 이런 저런 인물들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거나, 지역 지리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세계 유기체(world organism)라는 생명의 일부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H. Mackinder,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Bd. 23, p. 422.

인간이었다.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된 학문은 그 자체로서 인간을 파괴할 수 없다.

이 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지정학의 기본적 전제로 받아들이는 해양세력 대 육상세력의 충돌이라는 유럽 팽창의 각축구도는 고전 지정학 이론을 구성했던 당사자들의 논의 속에서는 핵심이 아니었다. 해양-육상, 양대 세력이라는 구분은 이미 고대 그리스 세계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이는 지구라는 환경의 특성상 일종의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대결 구도가 제국주의 시대에 강화된 것은 굳이 ‘지정학’이라는 학문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해양제국으로서의 영국의 근대적 세계경영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새롭게 이 구조가 강조된 측면이 있고, 이들의 세계 제패가 저물면서 이들이 만들어 낸 각축 구도 또한 함께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고전 지정학자들의 관심은 이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것이어서, 세계 정세에 기후나 지리적 위상과 지리적 조건들이 직접 혹은 암묵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법칙들에 대한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⁷⁷ 해양과 대륙의 충돌이라는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식민·제국주의적 경쟁과 각축, 이들 국가들이 처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권력정치적 상황이 ‘공간에 대한 지배’ 담론과 결합되면서 고전 지정학의 이론들이 구성된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19세기를 열병처럼 휩싸이게 만들었던 민족주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보수 우파 세력은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진력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 개개인들, 민족, 자연, 생존공간 등 간의 전적인 조화를 목표로 세웠고,⁷⁸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척하고 정복해야 할 적대적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며, 지정학은 당대의 사회진화론적 담론들과 결합해 민족의 생존공간을 넓혀

77 Robert Meyer, 2014, *Europa zwischen Land und Meer: Geopolitisches Denken und geopolitische Europa*, Göttingen: V&R; Walter A. McDougall, 2003, "Why Geography Matters ... But Is So Little Learned," *Orbis* 47,2, pp. 217~233.

78 Thomas M. Lekan, 2004, *Imagining the Nation in Nature. Landscape Preservation and German identity, 1885~1945*,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갈 지리적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공교롭게도 위협적이고 물리쳐야 할 야만적 적들은 언제나 동쪽에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독일과 러시아가, 독일에게는 동유럽과 러시아가, 러시아에게는 중앙아시아 평원을 넘어 몽골과 시베리아, 일본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쪽, 오리엔트라는 공간은 언제나 야만인이 살고 있는 축고 어두운 미지의 세계였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지정학적 상상력을 실현시킬 실천의 공간이기도 했다.

전 지구화의 급속한 진행과 테크닉으로 무장한 현재의 세계 구도 속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이라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오늘날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사고에서 기본 틀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구도이다. 만일 이런 양분화된 카테고리틀을 오늘날에도 분석의 기본 전제로 삼는다면 이는 제국주의 시대 서구의 세계진출 경로를 좇으면서 지난 시대 유럽 국가 간의 각축이라는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게 될 위험이 크다. 한반도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오늘날 세계를 구성하는 공간질서는 100년 전과 다르다. 당연히 오늘날 한 국가가 지구상에서 위치하게 되는 공간적 위상에 대한 해석과 전략은 한 가지 틀에만 종속될 수는 없으며, 21 세기의 변화된 국제환경에도 조용해야 한다.⁷⁹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시각, 즉 지정학적 담론 자체를 보다 다원화해야 된다. 과거 우리가 “문화의 충돌”(Samuel Huntington)이나 “역사의 종말”(Francis Fukuyama) 담론에서 보았듯이 상황을 양분해 거칠게 일반화시키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우리에게 적절한 지정학 담론의 생성을 위해서는 기존 지정학적 세계관의 역할이나 이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전 지정학을 넘어 “비판 지정학(critical geopolitics)”, “포스트구조주의 지정학(poststructural political geography)”, 혹은 아날 학파가 발전시킨 지문화(geoculture)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우리가 특

79 최근 팀 마살은 우주까지 지정학적 갈등의 공간을 확대한 책을 출간하였다. 팀 마살 지음, 윤영호 옮김, 2025, 『지리의 힘 3-지리는 어떻게 우주까지도 쟁탈의 대상으로 만드는가』, 사이.

정 국가-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해- 지정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러시아의 지리와 지정학적 전통,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의 지리적 발전의 조건들과 그들의 지정학적 비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방식과 사고를 갖고 자신들의 영토관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가토 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 2003,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서울: 태학사.
- 니콜라스 르제프스키 엮음, 최진석 외 옮김, 2011, 『러시아 문화사 강의』, 서울: 그린비.
- 박노자, 2024, 『전쟁 이후의 세계』, 서울: 한겨레.
- 브랜든 심스 지음, 광영완 옮김, 2014, 『유럽: 1453년부터 현재까지 패권투쟁의 역사』 II, 서울: 애플미디어.
-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정선태·윤대석 옮김, 2018,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서울: 소명.
-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옮김, 2019, 『러일 전쟁: 기원과 개전 2』, 서울: 한길사.
- 이진일, 2015, 「'생존공간'(Lebensraum)과 '大東亞共榮圈' 담론의 상호전이-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적 일본관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29.
- 제인 버뱅크·프레더릭 쿠퍼 지음, 이재만 옮김, 2010, 『세계제국사』, 서울: 책과함께.
- 크리스토퍼 클라크 지음, 이재만 옮김, 2019, 『몽유병자들』, 서울: 책과함께.
- 폴 케네디 지음, 김주식 옮김, 2009,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헨리 키신저 지음, 김성훈 옮김, 2023, 『헨리 키신저의 외교』, 서울: 김앤김북스.
- 헨리 키신저 지음, 이현주 옮김, 2016,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 서울: 민음사.
- Abrahamsson, C., 2013, "On the genealogy of Lebensraum," *Geographica Helvetica* 68.
- Asada, Sadao, 2007, *Culture Shock and Japanese-American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Bassin, Mark, 1999, *Imperial Visions: Nationalist Imagination and Geographical Expansion in the Russian Far East, 1840-18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ghahn, Volker, 1993, *Germany and the approach of war in 1914*, NY.: St. Martin's Press.
- Birke, Adolf M. and Hermann Wentker (eds), 1994, *Deutschland und Russland in der britischen Kontinentalpolitik seit 1815*, München: Oldenbourg.

- Epstein, Fritz, 1973, "Der Komplex 'Die Russische Gefahr' und sein Einfluss auf die deutsch-russischen Beziehungen im 19. JH.," Imanuel Geiss u.a. (ed.), *Deutschland in der Weltpolitik des 19. u. 20. Jahrhunderts*, Düsseldorf: Bertelsmann.
- Fischer, Fritz, 1974, *Krieg der Illusion: Die deutsche Politik von 1911-1914*, Düsseldorf: Droste.
- Geyer, Dietrich, 1974, *Der russische Imperialismus: Studien über den Zusammenhang von innerer und auswärtiger Politik 1860-1914*, Göttingen: V&R.
- Haushofer, Karl, 1924, *Geopolitik des Pazifischen Ozeans: Studien über die Wechselbeziehungen zwischen Geographie und Geschichte*, Berlin: Kurt Vowinkel.
- Hennig, Richard, 1931, *Geopolitik: die Lehre vom Staat als Lebenswesen*, Leipzig/Berlin: Springer.
- Kjellen, Rudolf, 1915, *Die Grossmächte der Gegenwart*, Leipzig/Berlin: Teubner.
- Laak, Dirk van, 2000, "Von Alfred T. Mahan zu Carl Schmitt: Das Verhältnis von Land-und Seemacht," Irene Diekmann u.a. (eds.), *Geopolitik*, Bd. 1.1, Potsdam: verlag für berlin-brandenburg.
- Langewiesche, Dieter, 2011, "Wo der deutsche Osten lag," Annette Grossbongardt, Uwe Klussmann, Norbert Pötzl (ed), *Die Deutschen im Osten Europas*, München: Oldenbourg.
- Lekan, Thomas M., 2004, *Imagining the Nation in Nature: Landscape Preservation and German identity, 1885-1945*,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ackinder, Halford J.,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23, 4.
- _____, 1942,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Lond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한국어판: 해퍼드 존 매킨더 지음, 임정관·최용환 옮김, 2022, 『심장지대』, 글항아리).
- Mahan, Alfred T., 1890,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 (한국어판: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지음, 김주식 옮김, 2006,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2, 책세상).
- _____, 1900,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 Mcdougall, Walter A., 2003, "Why Geography Matters ... But Is So Little

- Learned," *Orbis* 47(2).
- Meyer, Robert, 2014, *Europa zwischen Land und Meer: Geopolitisches Denken und geopolitische Europa*, Göttingen: V&R.
- Neitzel, Sönke, 2000, *Weltmacht oder Untergang: Die Weltreichslehre im Zeitalter des Imperialismus*, Paderborn: Schoeningh.
- O'Loughlin, John, 1994, *Dictionary of Geopolitics*, Westport: Bloomsbury Publishing.
- Ratzel, Friedrich, 1896, "Die Gesetze des räumlichen Wachstums der Staaten: Ein Beitrag zur wissenschaftlichen Politischen Geographie," *Petermanns Mitteilungen* XLII.
- _____, 1897, "Über den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kizze," *Die Umschau* 1, 1897
- _____, 1898, "Politisch-geographische Rückblicke. 3. Das russische Reich," *Geographische Zeitschrift*, 4, H. 5.
- _____, 1900/1901, *Das Meer als Quelle der Völkergrösse*, München: Oldenbourg.
- _____, 1901, *Der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tudie*, Tübingen: Laupsche Verhandlung.
- _____, 1904, "Der mitteleuropäische Wirtschaftsverein," *Grenzboten* 1.
- _____, 1906, *Kleine Schriften*, Bd. 1·2, München: Oldenbourg.
- Reismann-Grone, Theodor and Eduard von Liebert, 1905, *Überseepolitik oder Festlandspolitik? Alldeutsche Flugschriften 22*, München: Lehmann.
- Reuber, Paul, 2012, *Politische Geographie*, Paderborn: Schoening.
- Rieber, Alfred J., 2014, *The Struggle for the Eurasian Borderla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röder, Iris, 2008, "Das Europa der Geographen: Deutsch-Französische Geographien Europas im späten 19. und frühen 20. Jahrhundert," H. Kaelble (ed.), *Selbstverständnis und Gesellschaft der Europa*, Frankfurt/M.: Peter Lang.
- Spang, Christian W. and Rolf-Harald Wippich, (eds.), 2006, *Japanese-German relations until 1945*, London: Routledge.
- Teggart, Frederick J., 1919, "Geography as an aid to statecraft: An appreciation of Mackinder's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Geographic Review*, Vol. 8, N. 4/5.

Tuathail, Gearóid Ó. and Simon Dalby (eds.), 1998, *The Geopolitics Reader*, London: Routledge.

Wirth, Albrecht, 1905, *Die gelbe und die slawische Gefahr*, Berlin: Gose & Tetzlaff.

국문초록

고전 지정학의 성립 배경에는 19세기 후반 이후 전개된 제국주의적 침탈과 영제국의 지속적 세계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고려가 우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정학 이론의 또 다른 한편에는 독일 지리학이 중심이 된 국가유기체론이 자리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기체론을 통해 지정학 이론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패권국으로서의 해양력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라첼-셀렌과, 그와는 달리 영국의 해양 제국주의적 팽창을 모범 삼아 해양 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세계 진출 전략을 제시했던 머헨을 분석의 중심에 놓으면서, 이들 초기 지정학자들이 러시아라는 유라시아 중심의 거대 국가를 놓고 구성하는 상충하는 지정학적 논의들을 분석한다. 이 글은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반러시아주의적 논의들을 거쳐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구성되는 지정학적 담론의 초기 형성의 역사를 러시아와의 관련성을 중심에 두고 살펴봄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지정학적 충돌의 뿌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초기 지정학자들의 고전적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이 실제로는 제국주의적 각축 속에서의 '러시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책이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동시에 이같은 육상세력과 해양세력으로 양분화된 카테고리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구도임을 이 글은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를 분석의 기본 틀로 삼는다면 이는 제국주의 시대 서구의 세계진출 경로를 좇으면서 유럽 국가 간의 각축이라는 시각을 답습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어〉

고전 지정학, 유라시아, 대륙세력, 해양세력, 러시아, 독일, 러일전쟁, 라첼, 머헨, 셀렌, 하우스호퍼

ABSTRACT

“Russian Problem” and Constitution of Classical Geopolitics in the Early 20th Century

LEE, Jinil

(Research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t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classical geopolitics exist on the one hand the imperialistic invasion that had been taking plac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other hand the strategic considerations for the continued domination of the British Empire in the global market. On the other side of the geopolitical theory stays the theory of state-organism centered on German geography.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geopolitical discussions that these early geopolitical scholars made about the giant Eurasian state called Russia by focusing on the history of the early formation of geopolitical discourse. It was formed from the anti-Russian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Europe since the mid-19th century and up to the Russo-Japanese War.

The intention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at the conflict between maritime and continental powers, that appears in the classic texts of early geopolitical scholars, was actually a discursive substitute to resolve the ‘Russian Problem’ in the midst of imperialist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this manuscript argues that the dichotomous categories of land and maritime powers no longer exist today. Nevertheless, if we use this as the basic framework of geopolitical analysi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re exists a risk of following the path of the European global expansion in the era of imperialism in the last century repeatedly.

Keywords

classical geopolitics, Geopolitik, Eurasia, continental power, maritime power, Russia, Russo-Japanese War, Ratzel, Mahan, Kjellen, Haushofer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 일본의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

– ‘북방영토’, ‘오키나와’, ‘타이완 문제’의 지정학

송병권 상지대학교 부교수

- I. 머리말
- II.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중소 문제
- III. 일소국교정상화 교섭과 미소 문제
- IV.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 미중 문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지정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지정학을 국가권력의 기초와 국가 상호작용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지구적 공간 현상의 맥락에서 국가를 연구하는 것이라 정의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정학을 개념화하고 분류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나온 유기체국가론(the organic state theory)과 지리적 요소와 그에 영향을 받은 정책론이란 입장에 선 지리적 전략론(geostrategy theory)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¹

유기체국가론에 입각한 지정학은 주로 독일지정학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은 생활공간(Lebensraum)의 개념을 처음 개념화한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과 이를 계승하여 유기체(lifform, Lebensform, Organism)란 개념의 논리적 귀결로 경제적 자족성(Autarkie)을 제시한 루돌프 쉘렌(Rudolf Kjellén), 그리고 ‘범지역(Pan-Region)’ 개념과 대륙블록의 정립을 통한 세계질서(Weltordnung)를 구상한 카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주로 생활공간, 민족, 민족의 성장에 따른 생활공간 확대 투쟁, 경제적 자족성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한편, 지리적 전략론은 주로 영미적 지정학이라 할 수 있는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을 다룬 앨프리드 세이어 머헨(Alfred Thayer Mahan), 심장지대론을 제시한 해퍼드 J. 매킨더(Halford J. MacKinder), 여기에 림랜드(Rimland)의 중요성을 강조한 니컬러스 J. 스파이크먼(Nicolas J. Spykm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리적 전략론에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초승달 지역, 림랜드, 지역주의, 세력균형과 완충지대론 등은 물론 미국의 봉쇄정책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시기의 외교를 다루면서, 지정학으로서의 대외정책

* 논문 투고일: 2025.4.27, 심사 완료일: 2025.5.26, 재심사 완료일: 2025.6.9, 게재 확정일: 2025.6.11.

1 Martin Glassner and Cuck Fahrer, 2004, *Political Geography*, 3r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p. 270.

(Foreign Policy as Geopolitics)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다.²

유럽과 아시아를 합성한 유라시아의 구체적인 지리적 권역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상상될 수 있다. 유라시아 국제정치라는 맥락에서 보면, 구소련 지역에 해당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이 대상으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소련 지역에 더해 중국 지역에도 주된 관심이 모이게 된다. 이 글에서도 일본의 유라시아 지정학 논의의 주된 대상을 소련과 중국으로 설정하였고, 여기에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을 가진 미국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지정학적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은 소련/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이 상호 인접 공간에서 패권을 다투는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란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한편, 지정학적 측면에서, 소련/러시아,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은 지역적 인 차별성을 보인다. 구미에서 바라본 소련/러시아는 위협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나, 동아시아에서 바라보면 온건하거나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아시아에 자리 잡은 중국을 동아시아에서는 팽창적이고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오히려 아시아 진출의 기회로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³

근대 이후 해양세력인 일본과 대륙세력인 제정 러시아/소련 및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 전쟁은, 결국 해양세력인 미국과의 전쟁까지 포함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결국 궁교롭게도 미국-중국-소련이 모두 속한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본은 전후 외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냉전의 한

2 Henry A. Kissinger,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pp. 703~732.

3 岩下明裕, 2020, 「ソ連/ロシアの対中・対日外交から学ぶべき教訓」, 『国際政治』 201, 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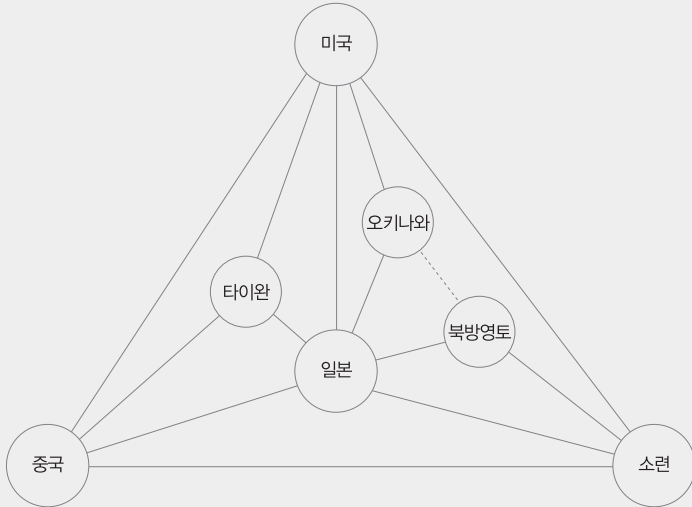
축인 소련과 중국에 대립하던 또 다른 한 축인 미국에서 보면, 오후츠크해에서 동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연안선은 양날의 칼 역할을 했고,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대륙세력의 해양 진출을 막는 최전방 방어선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이와 관련하여 전후 일본의 외교는 미국에 협조하며 이익을 얻는 한편 자주적 행동 자유 추구의 한도 탐색이라는 문제 속에서 ‘냉전의 수익자’라는 이미지로 해석되어 왔다.⁵ 이 글에서는 크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국교정상화 교섭, 중일 국교정상화 교섭이란 국면에 미국-일본-중국-소련의 지정학적 해석을 결합하여 전후 일본의 외교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과, 전후 일본의 과제로 남은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지정학적으로 포괄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각 국면에 대한 풍부한 개별적인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게 동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치시마로 이루어진 호(千島弧)’, ‘일본열도로 이루어진 호(本土弧)’, ‘오키나와 열도로 이루어진 호(琉球弧)’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패전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립’을 다시 회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리적 전략론적 입장에서 보면 소련과 미국이 각각 점령한 오키나와와 ‘북방영토’ 문제에 직면하였다. 또한 유기체 국가론적 입장에서 중요한 공간인 중국의 분단으로 발생한 ‘중국 대표권’ 문제에도 직면하였다. 이런 문제를 포괄한 전후 일본의 지정학적 관계는 <그림 1>과 같은 삼각형의 중첩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삼각형은 일본을 둘러싼 미국-중국-소련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다.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일본은 미일동맹을 확보하였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

4 서승원, 2014, 「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일 안보협력-수렴되는 중견국의 외교안보적 선택」, 『일본연구』 15, 391쪽.

5 岡田美保, 2023, 「日ソ国交回復交渉—冷戦の受益者日本」の意味をめぐる交錯, 『国際政治』 209, 33쪽.

6 梶浦篤, 2001a, 「北方領土と琉球(1)」, 『政治経済史学』 413, 26쪽.



〈그림 1〉 전후 일본을 둘러싼 지정학적 삼각형

은 소련과 ‘중국 대표권’ 문제로 강화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중국/타이완과 별도의 전후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생겼다.

둘째, 일소국교정상화 문제를 둘러싼 미국-일본-소련이라는 삼각형 안에서 미국-오키나와-일본, 그리고 소련-‘북방영토’-일본이라는 작은 삼각형들, 그리고 일본에서 보면 미국-오키나와-일본-‘북방영토’-소련이라는 삼각형이 내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련과는 ‘북방영토’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고, 이는 미국이 점령하여 시정권을 행사하고 있던 오키나와를 둘러싼 영토 문제와 연동되었다. 여기에는 지리적 전략론적 지정학 개념이 전면에서 드러난다.

셋째, 중국 지역에서는 미국이 지지하는 타이완과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사이에 ‘중국 대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일본은 냉전 질서와 미일동맹의 연장선 속에서 확보한 타이완과의 국교정상화와 별도로, 근대 이후 경제적 공간이었던 중국 대륙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일본-중국이라는 삼각형 안에, 미국-타이완-중국, 중국-일본-타이완, 미국-일본-타이완이란 삼각형이 내재하는 모습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지리적 전략론적 지정학 개념과 함께 유기체국 가론적 지정학 개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II.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중소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연합국이 내놓은 각종 헌장과 선언, 협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⁷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의 이상주의·민주주의적 발상으로 ‘대서양헌장의 원리’이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평등하게 대응하여, 양쪽 모두에 구속성을 부여한다. 대서양헌장이거나 연합국 공동선언에서는 ‘영토 불확대’와 ‘민족자결’을 규정했다. 카이로 선언에서는 ‘영토 불확대’는 표명했으나 ‘민족자결’은 없는 대신, 만주와 타이완, 평후제도의 중국 반환과 한국의 독립이 규정되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후기의 현실주의적·권력외교적 발상으로 ‘알타협정의 원리’이다.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우위, 연합국의 반추축국적 성격을 반영하여, 패전국에 대한 승전국의 우위를 규정했다. 알타협정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은 장래 일본의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에 대한 침략을 예방하기 위해 소련에 대해 만주에 관한 특권, 남사할린, 쿠릴열도의 영유를 인정하는 양보를 했고,⁸ 소련은 미국과의 협조 정책을 기조로, 홋카이도 작전을 단념하는 대신 쿠릴열도를 중요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는 쿠릴열도 전체를 점령하는 의도하지 않는 성과를 낳았다.⁹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일본 본

7 梶浦篤, 1997c, 「終戦と冷戦—北方領土占領をめぐる米国の対ソ政策」, 『政治経済史学』, 369, 7쪽.

8 A·I·クラフチェヴィチ, 2015, 『ヤルタ会談前後のソ米関係と日本』, 五百旗頭真, 下斗米伸夫, A·V·トルクフ, D·V·ストレリツォフ 편, 『日ソ関係史: パラレル・ヒストリーの挑戦』,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356~358쪽.

9 波多野澄雄, 2015, 『日ソ関係の展開』, 五百旗頭真, 下斗米伸夫, A·V·トルクフ, D·V·ストレリツォフ 편, 『日ソ関係史: パラレル・ヒストリーの挑戦』,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312쪽.

토 지배와 소련의 동유럽 지배를 상호 묵인하는 세력권 설정이 있었다.¹⁰ 셋째, 종전 즈음에 현실주의적·권력외교적 발상에 동서냉전적 발상이 결합된 ‘포츠담 선언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알타협정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강대국과 승전국의 우위에 더하여, 서방 권역(미국 주도)의 동방 권역(소련 주도)에 대한 우위이다.¹¹ 포츠담 선언에서 ‘영토 불확대’는 표명했으나 ‘민족자결’이 없는 대신, 일본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에 더해 ‘우리(포츠담 선언 참가국-인용자)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남사할린이나 치시마/쿠릴열도, 오키나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회피되었다.¹² 남사할린의 ‘반환’과 치시마/쿠릴열도의 ‘인도’를 결정한 알타협정을 포츠담 선언이 그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패전 이후 일본의 과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었고, 그 결과 연합군의 점령을 종결시키는 것이었다.¹³ 1952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사실 연합국의 주요 구성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사이의 세계적 수준의 냉전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측면에서 내전을 동반한 중국과 한반도의 분단이란 흐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과의 조기 강화가 단행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당사국이었던 중국 대표권 문제로 중국의 두 개 정부 모두 강화조약에 참여할 수 없었고, 소련은 참석은 했으나 서명하지 않아 절반의 강화조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냉전의 한 축인 해양세력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면서 샌프란

10 河野康子·下斗米伸夫, 2015, 「領土をめぐる日米ノ關係(1951—70年)」, 五卣旗頭真, 下斗米伸夫, A·V·トルクフ, D·V·ストレリツォフ 편, 「日米關係史: バラレル・ヒストリーの挑戦」,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419쪽.

11 梶浦篤, 2001b, 「北方領土と琉球(Ⅲ)」, 『政治経済史学』, 415, 46쪽.

12 梶浦篤, 1997a,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領土問題(上) — 一条約の完成から調印まで」, 『外交時報』, 1942, 63~64쪽.

1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6조에는 미소인국도 동일 조건으로 참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조약 발효 후 3년이 지난 1955년 4월 말 이후에는 미서명국인 소련과 중국 등과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둘러싼 교섭 문제는 곧바로 구 연합국 내의 국제분쟁이 될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河野康子·下斗米伸夫, 2015, 앞의 글, 422쪽).

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점령에서 벗어나 독립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미국
의 영향력에의 안보 의존은 상수가 되었다.

냉전의 격화에 대응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미국 전권대사는 소련의 대일강화 참가를 샌프란시스코 체제
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일본이 공산권에 편입되어 잠재적 공업
력이 소련과 중국에 가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이에 따르
면, 덜레스가 주도한 ‘북방영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일본에 유리하고 소
련에 불리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일본도 소련도 모두 불만이 남
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
해야만 소련에 치시마/쿠릴과 남사할린 할양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타이완과 평후제도 처리와 관련하여 영국과의 의견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서도 북방영토를 거래 재료(a bargaining point)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덜레스는, 강화조약에서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등이 일본에서 분리되
어 미국의 계속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일본의 반미 감정 고양
을 우려하였고, 일본의 영토 관련 불만을 소련에 향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이런 이유로, ‘북방영토’로 일소 양국을 이간시켜 일본을 미국에 연결하는
거래 재료로 활용한다는 전략은 그 후, 1956년 일소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덜레스가 감행한 강화조약 제26조에 따른 개입으로 명확하게 재확인할 수
있다.¹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독립을 달성한 일본에게는 몇 가지 문제
가 앞에 놓여 있었다. 첫째, 강화조약 체결로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종결했
지만, 오키나와 등 일본의 영토가 여전히 미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점령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소국교정
상화 교섭 과정에서 소련이 점유한 ‘북방영토’에 대해 ‘오키나와’ 문제를 두

14 梶浦篤, 1987, 「北方領土をめぐる米国の政策—ダレスによる対日講和条約の形成」, 『国際政治』 85, 112쪽; 梶浦篤, 1997b,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領土問題(下)—条約の完成から調印まで」, 『外交時
報』 1943, 104쪽; 梶浦篤, 2001a, 앞의 글, 32쪽.

고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고, ‘오키나와 반환’ 교섭 과정에서 등장한 ‘타이완 조항’은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중일 간 논쟁의 요인이 되었다.

둘째, 이른바 ‘북방영토’는 소련의 점령하에 놓여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소련과 국교 단절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치시마/쿠릴 열도의 범위였다. 1949년 말까지 미국 국무부는 치시마/쿠릴열도에는 시코탄과 하보마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미일안보조약 체결이 시급했던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치시마/쿠릴열도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련과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했다. 일본은 치시마/쿠릴열도와 남사할린은 일본이 침략으로 탈취한 영토가 아니라 과거의 평화조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된 지역임에도, 일본이 항복한 1945년 9월에 ‘일방적으로 소련에 포함’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¹⁵ 한편, 소련은 일본의 영토 ‘포기’만을 결정한 데 항의하며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강화조약 조인 자체를 거부했다.¹⁶ 일본과 소련 간의 영토 범위를 애매하게 한 것은 딜레스의 전략이었다. 그는 일본과 소련 간에 영토 문제를 남겨 둠으로써 일본의 시선을 치시마/쿠릴열도의 북쪽에 집중시키고, 소련에 대한 일본의 내셔널리즘 고양을 노렸다. 즉, 소련과 일본의 이간이 중요했다.¹⁷

셋째,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복잡했는데, 중국의 분단으로 인해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할 국가가 둘이나 존재했으며,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주장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

15 김승배, 2020,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 비(非)서명국들: 소련, 한국, 중국과 평화조약의 규범 보전」, 『일본비평』 22, 51~52쪽.

16 河野康子·下斗米伸夫, 2015, 앞의 글, 422쪽.

17 Tsuyoshi Hasegawa, 1998, *The Northern Territories Dispute and Russo-Japanese Relations. Vol. 1: Between War and Peace, 1697-1985*,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p. 93~94, 105 (김승배, 2020, 앞의 글, 52쪽에서 재인용).

이 대표권이 있다고 주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미국이 대표권이 있다고 주장한 중화민국(이하 '타이완')을 두고 국제적 합의가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일본 수상은 타이완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의 존재가 양립할 수 있는 방향성을 기대하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 과정에서 일본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타이완의 대표권 승인을 선택하였고,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나의 '중국' 정부만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중국' 정책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냉전이란 제약 속에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일본은 '정경분리'를 추구하며, 중국과 정부 차원의 무역협정은 어렵지만 민간무역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발전시켰다.¹⁸

타이완 측은 전시에 연합국의 일원이었으며, 전후 국제연합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심지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했다. 중국은 국제연합에 비가입한 상태였고, 소련 진영에 가담한 채 미국과는 대립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일안보조약과 결합하여, 일본에서 미일동맹은 일종의 상수가 되었다. 만약 '중국'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타이완이 일본에 좀 더 요구할 것이 많았겠지만, 타이완은 '중국'의 유일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경쟁해야 했으므로 1952년에 관대한 방식으로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타이완이 일본에 요구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중국'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표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미일동맹의 기초에서 일본은 '정경분리론'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타이완의 '중국' 대표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는 민간 루트를 통한 경제교류를 계속 추진하였다. 사실상 두 개의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1950년 소련과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소련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정치적 적대관계를

18 오승희, 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51(1), 85~89쪽.

해소하지는 못했다.¹⁹

한편,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열도’와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전쟁으로 약체화된 일본을 우호국으로 아직 신뢰할 수 없었으므로 오키나와를 일본에 맡기기보다는 일본의 ‘잠재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지배하에 두는 방식을 찾아냈고, 치시마/쿠릴열도에 대해서도 전시 중의 알타협정과 냉전 시기 미국의 반소정책이 충돌하자 양자의 절충안으로 일본에 영토를 포기시키면서도 소련령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고안했던 것이다.²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덜레스가 작성한 「오키나와에 관한 각서」(1951.6.27)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서 오키나와에 대해서 일본이 주권을 포기한 채 신탁통치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무질서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드러나 있지만, 정작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열도도 귀속처가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제관계가 무질서 상태에 빠져 일소관계가 불안정해지는 편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발상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초안 작성 당시에 강화조약 제2조는 포츠담 선언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알타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 영토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c) 일본은 치시마/쿠릴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근접한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5조 본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란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국가 또는 이전에 제23조에 열거된 국가 영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국가를 말한다. 다만, 각 경우 해당국이 본 조약에 서명하여, 비준할 것을

19 이기완, 2010, 「일본의 대중(對中) 인식과 대중(對中) 정책」, 『통일문제연구』 53, 196쪽.

20 梶浦篤, 2001b, 앞의 글, 44쪽.

21 梶浦篤, 1997a, 앞의 글, 66~67쪽.

조건으로 한다. 제21조의 규정을 유보하여, 본 조약은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나, 권원 또는 이익도 주지 않는다. 아울러 일본의 어떠한 권리나 권원 또는 이익도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앞에서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제26조 일본은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공동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의하는 국가, 그리고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또는 이전에 제23조에 열거한 국가의 영토 일부를 이루고 있던 국가로, 본 조약에서 서명국이 아닌 국가와 본 조약에서 정한 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양국 간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를 가진 것으로 본다. 단, 이러한 일본의 의무는 본 조약이 최초 발효 3년 후에 만료된다. 일본이 본 조약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국가와 평화적인 해결을 하거나, 전쟁 청구권을 처리할 경우, 그것과 동일한 이익은, 본 조약 당사국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밑줄인 용자)

이 세 개의 조항에는 소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지만, 이 조항에 소련을 넣어 해석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지정학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제2조 (c)는 일본이 포기할 치시마/쿠릴열도, 남사할린 등 영토에 대해서는 언급했으나, 이곳이 알타협정에 따라 실제 점령하고 있는 소련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제25조는 연합국을 구성하는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소련에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26조에 따르면, 일본이 소련과의 교섭 과정에서 다른 조약 당사국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이익을 제공하면 다른 조약 당사국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즉, 실제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열도를 점유하고 있는 소련에 이곳에 대한 주권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대서양현장의 원리’보다는 현실주의적·권

력외교적 발상에 냉전적 발상이 결합한 것으로, '포츠담 선언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었다.²²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전에 미국에, 치시마/쿠릴열도는 종전 직후에, 남사할린은 종전을 전후하여 소련에 점령되었는데, 이 세 지역은 미소 냉전에 의해 대일기지로써뿐만 아니라 미소가 서로를 겨냥한 기지로써도 중요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오키나와는 일본의 주권은 박탈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치시마/쿠릴열도와 남사할린은 일본에 주권을 포기하도록 하였지만 그 귀속처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는 오키나와, 치시마/쿠릴열도, 남사할린 모두를 애매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정학적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²³

III. 일소국교정상화 교섭과 미소 문제

1950년대 국제연합에 가입하지 못한 일본으로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일본이 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국교 수립이 필요했다. 소련은 평화조약에 치시마/쿠릴열도와 남사할린의 귀속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던 것과 평화조약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태평양에서 유지되며, 일본을 통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그리고 군국주의 국가 일본의 부활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미국은 일본과 소련의 접근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딜레스는 일본이 소련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치시마/쿠릴열도나 남사할린이 정식으로 소련에 귀속되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반공의 방파제인 일본이 소련에 이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미국의 봉

22 梶浦篤, 1997b, 앞의 글, 100쪽.

23 梶浦篤, 2001b, 앞의 글, 54쪽.

쇄전략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했다.²⁴ 이를 1951년 8월 22일 미국 상원에서 아서 왓킨스(Arthur Watkins) 의원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발언하고 있다. 미국에게 사할린과 치시마/쿠릴은 ‘가장 사활적인 방위지역’이며, 소련에게도 ‘전략적,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치시마/쿠릴은 아시아 러시아(Asiatic Russia)로 향하는 해양 접근로를 가로막는 방벽이며, 오후츠크해는 ‘러시아의 호수’이므로, 러시아가 사할린과 치시마/쿠릴을 획득하면, 일본은 ‘또 하나의 베를린’이 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는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을 일본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⁵

미국은 1955년 1월, 일소국교정상화 교섭에 즈음하여, 소련과는 미국 자신이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반대할 수만은 없지만, 일소 간 교섭에서 기존의 강화조약, 미일안보, 일화평화조약(日華平和條約)²⁶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 정부와는 국교 교섭뿐만 아니라, 무역 확대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교섭 개시 이전에 미국은 일소관계의 진전보다는 오히려 중일관계 개선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²⁷

요시다 정권이 미국 중심의 ‘항미일변도’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면,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정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24 김승배, 2020, 앞의 글, 53~54쪽.

25 United States of America, 1951, *Congressional Record*, 97, Pt.8, pp. 10524~10526, <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record/1951/08/22/senate-section>(검색일: 2025.2.17); 梶浦篤, 1997a, 앞의 글, 69쪽. 한편, 8월 24일에 윌리엄 제너(William Jenner) 상원의원은 일타협정을 부인하고 치시마/쿠릴과 남사할린에 대한 소련의 권리 확인을 거부하며, 알래스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체인으로 연결하는 열도를 완전히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ited Statee of America, 1951, *Congressional Record*, 97, Pt.8, p. 10595, <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record/1951/08/24/senate-section>(검색일: 2025.2.17).

26 일본에서는 ‘日本国と中華民國との間の平和条約’이 정식 명칭이고, ‘日華平和条約’, ‘日華条約’이라고도 부른다. 타이완에서는 ‘中華民國與日本國間和平條約’이 정식 명칭이고, ‘中日和平條約’, ‘中日和約’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는 일본의 표현을 취한다.

27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34쪽.

확보된 독립 이후의 외교정책을 대폭 수정하고자 했다. 하토야마 수상이 소련과의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안으로 남은 아시아 문제의 해결과 전후 세계에서 좀 더 폭넓고 독자적인 역할을 도모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독립’은 미국으로부터의 더 큰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모스크바와의 협조 노력을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서의 근본적 변화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²⁸

한편, 소련에서는 이오시프 스탈린(Иосиф Сталин) 사후 니키타 흐루쇼프(Никита Хрущёв) 등 소련 지도자들의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전환 속에서, 대일 접근은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미일 동맹의 승인 여부 문제와 일소관계를 중일관계와 독립하여 취급할지를 묻는 정치적 문제에 속했다.²⁹ 소련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북방영토’라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치시마/쿠릴열도에 4개의 섬(과 그 부속 도서)의 포함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³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대한 방어 태세 구축이 중요했던 소련으로서는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열도의 국제적 승인을 확보하고, 치시마/쿠릴열도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안보상의 주요 과제였던 것이다.³¹

일본은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의 틀 속에서 소련과의 국교회복을 도모하며, 국제연합 가입과 소련 억류 일본인 문제, 영토 문제, 어업 문제, 통상 문제를 현안으로 설정했다. 그중에서도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과 억류 일

28 D.C. 헬만, 1969, 『日本の政治と外交: 日ソ平和交渉の分析』, 中公新書, 46쪽; 김옥렬, 1976, 「전후의 일소관계」, 『성곡논총』 7, 457쪽.

29 김옥렬, 1976, 위의 글, 456쪽.

30 소련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문제가 되었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보다는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확보할 북치시마열도(쿠릴열도)와 사할린으로 일본인의 경제적 진출과 함께 북양어업의 수익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다[鈴泉, 1956, 「日ソ国交正常化をいそげ」, 『医科器械学雑誌』 26(9), 16쪽].

31 岡田美保, 2023, 위의 글, 34쪽.

본인 석방·송환을 교섭의 중점과제로 설정했다.³²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소련은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2개 섬을 반환하는 것으로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머지 2개 섬과 남사할린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확인받고자 했다. 이는 알타협정에서 소련에 약속한 영토를 일본(나아가 미국까지)이 승인함과 동시에,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에 바탕을 둔 미일관계를 소련이 승인하는 것을 의미했다. 구나시리, 에토로후를 포함한 치시마/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이 확정되면 미군 함정의 접근 금지라는 안보상의 목적도 일단 달성되는 것이므로, 소련은 해협통항 조항에 양보할 용의가 있었다.³³

일본도 초기에는 2개 섬의 반환만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고려했으나 일본 국내 여론과 보수합동으로 형성된 집권 자민당에서 강경한 4개 섬 반환론이 우세해짐으로써, 결국 평화조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채 공동선언 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향후 평화조약 교섭을 진행하기로 약속하는 데 그쳤다. 일본 외교에서 상수로 등장하는 미국도 여기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만약 소련이 북방 4개 섬을 일본에 반환하면, 오키나와 제도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었던 미국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오키나와 제도 북쪽에 있는 아마미 제도(奄美諸島)를 조기 반환함으로써 소련을 압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방 4개 섬이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정치적 지지를 일본에 보냄으로써 일본의 2개 섬 반환론을 압박했다.³⁴ 일본은 소련과의 평화조약 체결에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소련의 반대 없이 국제연합 가입에는 성공하여 국제무대에 명실상부하게 등장할 수 있었다.

일소국교정상화 교섭의 전체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일소 간의 경계 획

32 岡田美保, 2023, 위의 글, 37쪽.

33 岡田美保, 2023, 위의 글, 37쪽, 39쪽.

34 梶浦篤, 1994, 「奄美諸島の返還をめぐる米国の対日・対ソ戦略」, 『国際政治』 105, 123~124쪽.

정'임과 동시에 '미소냉전의 경계 확정'이기도 했던 두 가지 경계의 확정이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알타협정에서 소련에 약속한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열도를 동아시아 냉전 시기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입각하여, 소련 영토로 확정 짓지 않으려는 미국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소련의 주권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실제로 영토 반환을 소련이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소 간의 교섭이 시작된 것이었다. 미국에게는 남사할린과 치시마/쿠릴열도를 소련의 영토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하보마이·시코탄에 대한 일본의 반환 요구를 지지하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미국은 영토 문제 유보를 반드시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소련의 의도가 미군 함정의 접근 저지를 위한 구나시리·에토로후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의 구나시리·에토로후 반환 요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선회했던 것이다.³⁵

미일 간에는 소련의 주권 승인과 2개 섬 반환을 통한 국경 확정의 양립 가능 여부를 두고 갈등 요인이 있었다. 소련에 대한 영토 양보는 미일관계, 특히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동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미국 의존이 감소하고, 중소관계가 확대되는 등 일본이 대외 행동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³⁶ 국경 확정이 주권 승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약속한 것 이상을 소련에 인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방침이 관철되었다. 이에 따라 일소 간에는 평화조약 체결이 불가능해지고 일본은 하보마이·시코탄 반환도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영토 문제 유보를 전제로 일소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일소는 영토 문제를 미뤄 둘 것인가, 평화조약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갈등했다. 소련은 전쟁 상태 종결을 선언하고 일본과 국교를 회복함으로써 점령지의 소련 귀속을 확정 짓고자 했지만, 일본은 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

35 岡田美保, 2020, 「日ソ国交回復交渉の再検討—ソ連による日米安保の「受容」, 『国際政治』 200, 45~49쪽.

36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36쪽.

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한다는 문구를 요구하며, 영토 문제 해결 없는 국교 회복을 도모하게 되었다.³⁷

미국은 당초 미소 교섭에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교섭 최종 국면에 서 개입 방침으로 전환하였다.³⁸ 미국이 북방 4개 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먼저, 미국은 일소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의 현상 변경을 원치 않았고, 미일동맹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중립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했고, 일소관계정상화가 중국의 공산정부 승인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³⁹

다음으로 미국은 치시마/쿠릴열도와 남사할린의 소련 영토 인정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치시마/쿠릴열도를 소련에 넘겨줄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그것이다. 소련의 하보마이·시코탄 반환 제안에 따라 미국은 일소정상화 교섭 과정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특히, 4개 섬 반환이란 강경 자세였던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일본 외무대신이 소련안 수용 방향으로 기울자 미국의 대응은 급변하며, 이른바 ‘덜레스의 위협’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은 치시마/쿠릴열도와 오키나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만약 일본이 치시마/쿠릴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면 미국은 오키나와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일본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부추겼다. 또한 소련이 근거로 삼는 알타협정은 평화조약에서 고려할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소련의 권리 인정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소련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⁴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 처리 문제에서 치시마/쿠릴열도와 오키나와를

37 岡田美保, 2020, 앞의 글, 48쪽; 岡田美保, 2023, 위의 글, 44~45쪽.

38 이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덜레스 등의 언설을 고려할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 단계에서 일소 교섭이 개시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이 개입할 것을 예상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梶浦篤, 2012, 「日ソ復交交渉に対する米国の戦略 (IV)」, 『政治経済史学』, 549, 19쪽].

39 溝口修平, 2014, 「日ソ国交正常化交渉に対する米国の政策の変化と連続性」, 『国際政治』, 176, 111쪽.

40 溝口修平, 2014, 위의 글, 117쪽.

동렬에 놓는 것이 델레스의 핵심 사항이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치시마/쿠릴열도를 현상유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가장 고려했던 문제는 오키나와 문제와의 관련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델레스 국무장관은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를 미국의 신탁통치령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여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잠재적 주권’을 남겨 두면서도 사실상 미군이 지배하는 군사기지로 유지하려 했으므로, 오키나와를 애매한 ‘외교의 회색 지대’로 남겨 두었다. 즉, 오키나와는 미국의 ‘사활적인 안보상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의 주권’을 미국이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의 ‘잠재적 주권’은 거의 허울에 불과했다.⁴¹ 델레스는 시게미쓰 외무대신에게 소련과의 교섭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치시마/쿠릴열도가 오키나와 제도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 즉 외국의 점령하에 있지만 잠재적 주권은 남아 있다는 논리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델레스는 미국이 이미 북오키나와(the northern Ryukyu), 즉 아마미 제도를 반환했다고 선언했고, 소련에 대해 미국이 북오키나와를 이미 반환한 것처럼 남치시마, 즉 북방 4도 반환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델레스는 치시마/쿠릴열도와 남사할린에 대한 소련의 권리 요구는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에 대한 미국의 권리 요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간주하였고, 소련이 치시마/쿠릴열도와 남사할린에서 나와야 한다면 미국 자신이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에서 나와야 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⁴²

이러한 개입 정책은 치시마/쿠릴열도와 남사할린에 대한 소련의 영토 주권 승인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의 최대 목적이었음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결국 소련이 2개 섬 반환의 대가로 요구한 소련의 주권 승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망록(Aide-mémoire)은 ‘델레스의 위협’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긴장된 미일관계를 수복하는 역할을 했다. 비망

41 梶浦篤, 1997b, 앞의 글, 102~103쪽.

42 坂元一哉, 1994, 「日ソ国交正常化交渉とアメリカーグレスはなぜ介入したか」, 『国際政治』 105, 151~152쪽.

록의 해석에 대해 미국 정책을 법적 입장과 대응으로 구별하여, 일본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입장을 건드리지 않은 채 정치적 지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었고 상호 모순관계에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를 유지하면 미일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미일관계에 유의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아시아 냉전 구조를 낳은 미국 자신도, 이 구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⁴³ 즉, 영토의 반환을 우선하고자 한 일본과, 소련의 주권 승인 회피를 우선하고자 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것이다.⁴⁴

한편,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만은 '북방영토'보다는 오히려 오키나와나 오가사와라에 향해 있었다. 미국이 기대했던 '북방영토' 문제가 일본 국민의 대소 강경론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은 오키나와의 반환(1968)과 오키나와의 반환(1972) 이후의 일이었다.⁴⁵ 이는 한편으로 일본에는 '미소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외교의 모색과 그 좌절'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일소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의향에 반하면서 추구할 수 있는 '자주외교'의 한계선을 학습했고, 더욱 미일동맹 관계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외교를 펼치게 되었다.⁴⁶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는 해양세력에 속한 일본이 대륙세력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결정적 계기였다.⁴⁷ 이 시기 일본은 냉전의 다른 한 축인 대륙세력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국제연합 가입 문턱을 넘어서는 데 성공하였다. 소련과의 국교회복은 국제연합 가입 실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동

43 溝口修平, 2014, 앞의 글, 121~123쪽.

44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38쪽, 43쪽.

45 梶浦篤, 2001b, 앞의 글, 46쪽.

46 溝口修平, 2014, 앞의 글, 123쪽; 泉川泰博, 2006, 「日ソ国交回復交渉をめぐる日本の自主外交模索とアメリカの対日戦略」, 『國際政治』 144, 142~143쪽. 그 외, 일소국교정상화가 중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던 측면을 들 수 있다(이성환, 2020, 「일본의 '북방4개성' 인식과 러일 국경문제의 전개」, 『비교일본학』 49, 121쪽; 坂元一哉, 1994, 앞의 글, 145~146쪽).

47 蛭山正道, 1956, 「日ソ交渉を中心としてわが外交の方途を論ず」, 『中央公論』 71(11), (10월), 36~45쪽.

유럽 공산국가와의 수교로 이어졌다.⁴⁸ 이 시기 소련과 함께 중국이 일본에 대해 국교 수립 의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륙세력에 속한 소련과 중국이 해양세력의 영향권 내에 속한 일본을 견인하여 중립화로 이끌려는 지정학적 고려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도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미협상력을 높이면서도, 공산권 지역이 포진한 대륙세력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자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을 증대하고자 했다.

일본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과 갈등이란 전략지정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자국의 국력 확대에 필요한 가용자원의 확장적 확보를 도모하는 유기체국가론적인 지정학의 속성까지 고려하면서,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일소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두 초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냉전 전략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됨으로써, ‘냉전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IV.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 미중 문제

1970년대 미중 접근과 이에 따른 ‘닉슨 쇼크’는 일본에게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했다. 미중 대화 과정에서 일본위협론을 제기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아시아에서 철수할 미군을 대신할 일본의 안보 능력 강화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계하면서, 미일안보체제 강화를 우려했다. 저우언라이의 일본위협론은 ‘타이완 조항’과도 관련이 있었다. 오키나와 반환을 확정된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평화와 안전 유지가 일본의 안전에 극히 중요하다는 ‘타이

48 김옥렬, 1976, 앞의 글, 458쪽.

49 岡田美保, 2023, 앞의 글, 44~45쪽.

완 조항'을 천명하였는데, 미중 데탕트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타이완 방위 부담을 일본이 대신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일본과 타이완 사이의 정치·군사적 관계를 단절시키려 노력했다.⁵⁰

중국은 소련을 가장 위협시켰으나,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역시 경계했다. 이에 대해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닉슨은 미일동맹을 통해 “팽창주의적 충동과 역사”를 가진 일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일본이 경제적 확장에서 군사적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응수했다. 이는 일본을 미중 공통의 경계 대상으로 보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였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는 미일동맹 해체는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⁵¹ 키신저는 일본의 재무장은 중일 간의 세력균형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정책은 “일본이 공격적 정책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이른바 ‘병마개론’을 개진하였고, 닉슨도 수뇌회담에서 미국의 영향력으로 일본이 한국 및 타이완에 대해 모험을 걸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⁵² 일본의 팽창주의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중국에 호응한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유라시아 지정학적 측면에서 소련을 봉쇄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중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었다.

미국은 중일국교정상화보다 타이완의 법적 지위와 미일안보조약의 타이완 적용이 유지될지에 주목하였고, 중국 역시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이 미일 관계에 좌우될 것임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중일수교가 미일동맹에 초래할 균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고심했다. 키신저는 도쿄를 거쳐 베이징으로 날아가 저우언라이와 회담(1972.6.19)하면서,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반대하

50 손열, 2013, 「미중데탕트와 일본: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일본연구논총』 38, 260~261쪽.

51 김승배, 2020, 앞의 글, 68쪽.

52 손열, 2013, 앞의 글, 262쪽, 이에 대해서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일부의 연합국이 주장했던 논리이자 미군의 오키나와 지배의 명분 중 하나였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키나와를 침략하기로 사용할지도 모르므로 일본보다는 미국이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해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梶浦篤, 1997b, 앞의 글, 103쪽, 105쪽.

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핵무장과 해외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반대하고, 전수방위에 국한할 것이라며, ‘타이완 조항’은 물론 ‘한국 조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다만, 중일수교가 미중수교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했다.⁵³ 당연히 일본 정부도 타이완의 법적 지위와 미일안보조약의 타이완 적용 사안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미일관계와 중일교섭의 양립을 도모하는 등 미국을 의식하며 교섭을 진행했다. 키신저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보다는 닉슨 쇼크에 따른 일본의 민족주의적 독자노선의 등장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지만, 미일동맹과 미일안보조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중일국교정상화를 받아들였다.⁵⁴

중국은 중소 대결 구도 속에서 미소 모순을 이용하여 미중관계를 타개하였듯이, 중일관계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중국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면서 타이완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일국교정상화 실현의 최대 과제는 과연 일본이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하면서 수교로 나올 수 있는가였다.⁵⁵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는 이미 체결한 타이완과의 평화조약과 상충(trade-off)관계에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중국’ 모두 ‘하나의 중국’론에 입각해 있었으므로,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 타이완과는 국교를 단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50년대 전반기, 요시다 정권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두 정부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즉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개의 중국’ 문제가 제기되었다. 1950년대 중반 하토야마 정권은 ‘두 개의 중국’ 중 중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설정하였고, 1950년대 후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은 ‘두 개의 중국’을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타이완에 유리한 논리로 설정하였다. 1960년대

53 손열, 2013, 위의 글, 266쪽.

54 손열, 2013, 위의 글, 268쪽.

55 손열, 2013, 위의 글, 262쪽.

전반기,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은 중국 측이 제시한 대일 3원칙에 영향을 받아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 논리를 채택했는데, 이는 ‘두 개의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방향을 의미했다. 일본은 타이완이 곧 ‘타이완인의 타이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타이완 독립’ 노선에 대한 발언은 억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1960년대 후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정권은 중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하였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을 구분하여, 이를 ‘두 개’의 통합체로 보지 않고 각기 다른 상태에서 각각 유지되어야 할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⁵⁶

이렇게 ‘타이완 문제’는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핵심 과제였다. 타이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의 구상은 크게 두 개의 접근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을 유보한 형태로 중국과의 관계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본은 하토야마 정권부터 사토 정권에 이르기까지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의 ‘잠정협정(Modus Vivendi)’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이 표명한 대일정책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므로, ‘잠정협정’을 위한 정부 간 교섭을 거절하고 ‘민간외교’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타이완 문제를 유보한 채 진행된 중국과의 교섭은 결국 실현될 수 없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유보한 채 일본과의 교섭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타이완을 ‘타이완의 정부’로서 자유 진영에 머물도록 서방 측과의 정책 협조를 추진하며, 타이완의 법적 귀속 확정을 이끌어 ‘중화민국’의 범통을 주장하는 타이완에 정책 전환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1950년 이래 일본 외무성에서 검토했던 ‘2개의 중국’, 즉 ‘이중대표제’라는 형식의 국제연합 동시 가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요시다 정권에서 추진한 중국 정책에서 등장한 ‘영미 협조’는 ‘타이완 문제’라는 문맥보다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반공 정책에 불과하였다. 하토야마 정권 이후에 국제 합의라는 형태로 등장한 타

56 川島真, 2005, 「1971年以前日本の二中議政」, 國史館主辦 「台灣1950-60年代的歷史省思-中華民國史專題第八屆討論會(第四場)」(2005.11.24. -11.25), 12~13쪽.

이완 문제의 국제협조론은 서방 세계가 주도권을 갖도록 요청하는 형태에 가까웠으므로, 일본이 타이완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실제로 프랑스는 중국에 접근하여,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했으며, 이어서 미국의 중국 접근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타이완이 국제연합을 탈퇴(1971년)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진한 서방 세계와의 협조를 통한 타이완 문제 해결은 최종적으로 실패하였다.⁵⁷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타이완 문제의 법적 측면을 애매한 상태에 남겨 두는 ‘1국가 2정부’라는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사토 정권은 타이완 문제 유보를 전제로 중국과의 정부 간 교섭을 시도하면서, 타이완이 중국의 정통적 지위를 유지한 채로, 실질적으로는 타이완의 ‘타이완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일본이 추진한 장기적 ‘타이완화’ 정책은 중국의 경계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 양안의 두 정부를 모두 승인할 수 있을 국제적 환경도 점차 사라짐에 따라 사토 정권도 중일 교섭의 결과로서 타이완과의 단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정권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과정은 1950년대 이래 중일 쌍방이 외교 공간에서 전개한 다양한 구상이 좌절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도달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부동의의 동의’였다고 할 수 있다.⁵⁸

‘이중대표제’를 찬성하면서도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 사토 정권의 일견 모순된 대응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본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 국제연합국으로서의 당시의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체제를 개혁할 기회이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구상이 있었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이

57 井上正也, 201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539~541쪽.

58 井上正也, 2010, 위의 책, 542~544쪽.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아시아가 유동적인(floating) 안보리 상임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평소 주장에 대한 전망이 사라지게 될 것”⁵⁹이라고 보았으므로 중국의 국제연합 의석이 확보된다는 것은 일본에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중대표제’를 둘러싼 미일 간 합의가 있었지만,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전망하며 ‘이중대표제’ 결의안의 통과를 목표로 삼은 미국 국무부와, 타이완의 국제연합 의석 확보를 중시하는 일본 측 사이에는 미묘한 정책 차이가 존재했다. 이런 미일 간의 정책 차이는 타이완의 안보리 의석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⁶⁰

안보리 의석 문제를 둘러싼 미일 대립은 국제연합 중국 대표권에서 ‘총회의 지지’와 ‘타이완의 지지’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지는 딜레마를 상징했다. 미국은 ‘이중대표제’를 통과시켜 안보리 의석을 중국에 귀속시키는 것은, 국제연합 가입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연합에서 타이완의 의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은 타이완의 자발적 국제연합 탈퇴를 막기 위해서도 그 체면을 존중해 줄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일 쌍방은 개별적으로 타이완 설득 공작을 전개했고 타이완도 ‘이중대표제’를 서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까지 안보리 의석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은 없었다. 미중 간 직접 접촉의 최종 단계에 들어간 이후, 닉슨은 국무부가 요구한 ‘이중대표제’ 전술을 향한 로비활동을 유보시켰다. 닉슨은 키신저가 베이징에서 교섭을 마칠 때까지 최종적인 중국 대표권 결정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일본이 미국에 기대했던 총회에서의 ‘중국’ 대표권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닉슨 방중이 발표되었던 것이다.⁶¹ 미중 접근은 타이완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사토 수상은 국민정부가 ‘타이완화’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기대했다. 결국 국제연합 표결에서

59 添谷芳秀, 1995, 『日本外交と中国: 1945~1972』,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74~75쪽.

60 井上正也, 2010, 앞의 책, 429~430쪽.

61 井上正也, 2010, 위의 책, 433~439쪽.

일본이 주장한 ‘역중요사항지정안’이 부결되었고 타이완은 국제연합 탈퇴를 선언하였다. 결국 국제연합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가 종결되면서 중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⁶²

한편, 오키나와 반환과 중소 분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국과의 정부 간 교섭을 시도한 미국 요인도 국교정상화 교섭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오키나와 반환 과정에서 미일안보조약상 타이완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타이완 조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이 타이완의 안보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을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당시 최대의 위협이었던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군사적 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적 전개를 용인·묵인하려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결국, 중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은 중국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였지만, 타이완과의 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정경분리 원칙이 타이완과의 관계에 적용된 것이다.⁶³

중일평화우호조약 교섭이 진전되자, 소련은 “일본국 정부가 제3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때, 소련과 일본국 사이의 관계 발전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라고 공식성명을 발표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⁶⁴ 일본은 대소정책과 대중정책 사이의 갈등 속에서 가급적 소련을 자극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소련을 겨냥한 반패권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수용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

62 井上正也, 2010, 위의 책, 454~460쪽.

63 오승희, 2017, 앞의 글, 92쪽.

64 「日本国政府に対するソ連政府声明」(1975.6.17),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https://worldjpn.net/>(검색일, 2025.1.30).

항이 소련을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반패권 조항이 평화우호조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중국에서 제3국 조항을 추가하는 일본안을 수용하면서, 중국의 소련 견제 의미가 담긴 반패권 조항과 일본이 소련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반영된 제3국 조항이 모두 포함된 최종안이 채택되어, 양국의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공동성명 최종안이 채택되었다.⁶⁵

1975년 초, 서로 대립하던 중국과 소련의 대일외교 공세가 격화하였다. 일본으로서는 중소 양국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므로, 중국과의 평화조약 교섭 중에 중국이 제안한 소련에 대한 견제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 ‘패권주의 반대’ 조항 문제와 함께,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 농후한 ‘북방영토’ 문제를 유보한 채 선린우호조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중일 평화조약 교섭에서 ‘패권주의 반대’ 조항 삽입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⁶⁶

일본 외교에서 미일 우호관계 유지는 최우선 과제였지만, 중일국교정상화는 미일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즉 미일안보와 양립하는 한에서 허용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최종 단계에서 미국은 다나카 수상 의 견해에 적극적인 찬성 표시를 하지 않았다. 1972년 8월 말 다나카 수상의 방미는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실현을 미국에 통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중국에의 접근을 도모했지만 미중국교정상화 자체는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는 타이완에 대한 의무, 미국 내 반대파 설득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미일 수뇌회담에서 중일국교정상화에 관한 미국의 양해를 얻

65 최은봉·오승희, 2012, 「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제한적 접근과 쟁점의 유보: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교섭·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4), 71~73쪽.

66 김옥렬, 1976, 앞의 글, 483~485쪽. 1972년 중일국교회복 시기에 보였던 소련의 억제된 냉정한 반응과 달리,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이 조인되었을 때 소련은 중국의 반소노선을 일본이 받아들였다고 강력히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일정책 수정을 시사할 정도로 일소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이는 중일평화우호조약 자체에 대한 소련의 반응이라기보다는 1970년대 후반의 미소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의 긴장 격화라는 문맥에서 소련의 행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小澤治子, 2015, 『冷戦とデタント』, 五百旗頭真, 下斗米伸夫, A·V·トルクフ, D·V·ストリツォフ 편, 『日ソ關係史: パラレル・ヒストリーの批戦』, 東京大學出版會, 476쪽).

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을 정도로 미일 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⁶⁷ 미중 회담(1972.2)에서 닉슨은 ‘중국·타이완 쌍방이 “중국은 하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의를 말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데 머물렀으므로, 일본(다나카)이 단번에 국교수립을 지향한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⁶⁸

사후적으로 보면, 닉슨 정권은 중국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타이완에서의 미군 철수에 동의했지만, 동시에 타이완에의 안보 개입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타이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것을 중국에 강조한 결과, 종래대로 일본 및 타이완과의 안보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타이완에 대한 안보 개입에 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에 기반하여 미군에 일본 영토를 사용하도록 약속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결과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단지 1952년 일화평화조약의 합법성을 중국에 인정시켰을 뿐 타이완과의 관계는 단교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V. 맺음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과 발생한 일본의 소련과의 국교정상화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일본-중국의 지정학적 삼각형과 그 내부에 타이완을 둘러싼 삼각형과 오키나와와 ‘북방영토’를 둘러싼 또 다른 내부 삼각형이 중첩된 지정학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전전에 해양국가 일본이 가진 대륙으로의 욕망은 대륙정책으로 나타났고, 해

67 林金莖, 1987, 『戦後日華関係と国際法』, 東京: 有斐閣, 120~121쪽; 殷燕軍, 2006, 「1970年代の米中戰略交渉と日米中関係」, 『関東学院大学経済経営研究所年報』 28, 120쪽에서 재인용.

68 別枝行夫, 198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過程—政策決定者とその行動の背景」, 『国際政治』 66, 13쪽.

69 伊藤剛, 1998, 「日米中関係における「台湾問題」—米中和解とその影響」, 『国際政治』 118, 118~119쪽.

양으로의 욕망은 대동아공영권으로 나타났다. 패전 이후 일본은 전후 냉전의 흐름 속에서 대륙세력 소련 및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냉전의 수익자’로서, 역외 패권국 미국의 역내 하위 파트너⁷⁰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전후 연합국, 특히 미국의 점령하에 놓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 내에서 독립을 간신히 회복하였으나,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냉전의 반대편 소련과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1950년대 소련의 대일 유화정책에 대응하여 일본은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소련이 점령한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지만, 이와 상호 연관된 미국이 점령한 오키나와 문제가 일본의 외교에 지정학적 제약을 주었다. 소련은 비중이 낮은 2개 섬의 반환을 대가로 지리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머지 2개 섬 및 남사할린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북방영토 전체, 즉 4개 섬 반환론이란 강경한 여론은, 일본이 소련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유예한 채 공동선언만을 통해 국교를 수립하게 만든 큰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미국은 아마미 제도를 조기 반환하며 ‘북방영토’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임으로써, 일본이 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지리전략적 견제를 구사했다. 이에 소련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은 국제연합 가입에 만족해야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정책의 핵심 대상은 소련이었지만 미소 간 데탕트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속에서, 전전 시기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전통적인 지정학 공간이었던 중국 대륙에 대한 일본의 접근은 필연적으로 ‘타이완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1970년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과 긴장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미국이 지원하는 일본의 군사적 재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오히려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일본은 기존의 타이완 관계도 일정 정도 유지하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 구상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는데,

70 송병권, 2021, 『근현대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소명출판, 13쪽.

이는 중국과의 수교 및 타이완과의 단교를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을 둘러싼 미국-중국-소련의 지정학적 갈등 구조는 여전히 ‘타이완 문제’와 ‘북방영토’를 둘러싼 삼각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전개되는 지정학적 상황은 이 구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삼각형의 구조를 결합하여 분석하면 전후 일본 외교에 관한 더욱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권혜수, 2022,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31.
- 김승배, 2020,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 비(非)서명국들: 소련, 한국, 중국과 평화조약의 규범 보전」, 『일본비평』 22.
- 김옥렬, 1976, 「전후의 일소관계」, 『성곡논총』 7.
- 김진호, 2018,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2).
- 리한메이(李寒梅), 2022, 「국교정상화 50주년: 중일 관계의 향방은?」, 『성균차이나브리프』 10(4).
- 서승원, 2014, 「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일 안보협력-수렴되는 중견국의 외교안보적 선택」, 『일본연구』 15.
- 손열, 2013, 「미중대당트와 일본: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일본연구논총』 38.
- 송병권, 2021, 『근현대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소명출판.
- , 2023, 「전시기 일본의 ‘대동아지정학’적 지역질서 인식의 구조와 성격」, 『일본문화연구』 87.
- 오승희, 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51(1).
- 이기완, 2010, 「일본의 대중(對中) 인식과 대중(對中) 정책」, 『통일문제연구』 53.
- 이성환, 2020, 「일본의 ‘북방4개섬’ 인식과 러일 국경문제의 전개」, 『비교일본학』 49.
- 조양현, 2018,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인식-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 127.
- 최은봉·오승희, 2012, 「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제한적 접근과 쟁점의 유보: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교섭·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4).
- 伊藤剛, 1998, 「日米中関係における「台湾問題」—米中和解とその影響」, 『國際政治』 118.
- 井上正也, 201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岩下明裕, 2020, 「ソ連/ロシアの対中・対日外交から学ぶべき教訓」, 『国際政治』 201.
- 殷燕軍, 2006, 「1970年代の米中戦略交渉と日米中関係」, 『関東学院大学経済経営研究所年報』 28.
- 岡田美保, 2020, 「日ソ国交回復交渉の再検討—ソ連による日米安保の「受容」」, 『国際政治』 200.
- _____, 2023, 「日ソ国交回復交渉—「冷戦の受益者日本」の意味をめぐる交錯」, 『国際政治』 209.
- 小澤治子, 2015, 「冷戦とデタント」, 五百旗頭真, 下斗米伸夫, A・V・トルクンフ, D・V・ストレリツォフ 編, 『日ロ関係史：パラレル・ヒストリーの挑戦』, 東京：東京大学出版会.
- 梶浦篤, 1987, 「北方領土をめぐる米国の政策—ダレスによる対日講和条約の形成」, 『国際政治』 85.
- _____, 1994, 「奄美諸島の返還をめぐる米国の対日・対ソ戦略」, 『国際政治』 105.
- _____, 1997a,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領土問題 (上)—条約の完成から調印まで」, 『外交時報』 1942.
- _____, 1997b,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領土問題 (下)—条約の完成から調印まで」, 『外交時報』 1943.
- _____, 1997c, 「終戦と冷戦—北方領土占領をめぐる米国の対ソ政策」, 『政治経済史学』 369.
- _____, 2001a, 「北方領土と琉球(I)」, 『政治経済史学』 413.
- _____, 2001b, 「北方領土と琉球(III)」, 『政治経済史学』 415.
- _____, 2012, 「日ソ復交交渉に対する米国の戦略 (IV)」, 『政治経済史学』 549.
- 川島真, 2005, 「1971年以前日本の二中議政」, 國史館主辦 『「台灣1950-60年代の歴史省思—中華民國史專題第八屆討論會 (第四場)」, 2005年11月24 - 25日, 國家圖書館.
- クラフチェヴィチ, A・I, 2015, 「ヤルタ会談前後のソ米関係と日本」, 五百旗頭真, 下斗米伸夫, A・V・トルクンフ, D・V・ストレリツォフ 編, 『日ロ関係史：パラレル・ヒストリーの挑戦』, 東京：東京大学出版会.
- 河野康子・下斗米伸夫, 2015, 「領土をめぐる日米ソ関係 (1951-70年)」, 五百旗頭真, 下斗米伸夫, A・V・トルクンフ, D・V・ストレリツォフ 編, 『日ロ関係史：パラレル・ヒストリーの挑戦』, 東京：東京大学出版会..
- 坂元一哉, 1994, 「日ソ国交正常化交渉とアメリカ—ダレスはなぜ介入したか」, 『国際政治』 105.

- 鈴泉, 1956, 「日ソ国交正常化をいそげ」, 『医科器械学雑誌』 26(9).
- 添谷芳秀, 1995, 『日本外交と中国: 1945-1972』,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別枝行夫, 198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過程—政策決定者とその行動の背景」, 『国際政治』 66.
- 波多野澄雄, 2015, 「日ソ関係の展開」, 五百旗頭真, 下斗米伸夫, A・V・トルク
ンフ, D・V・ストレリツォフ 編, 『日ロ関係史: パラレル・ヒストリ
ーの挑戦』,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ヘルマン, D.C., 1969, 『日本の政治と外交: 日ソ平和交渉の分析』, 中央公論新
社.
- 溝口修平, 2014, 「日ソ国交正常化交渉に対する米国の政策の変化と連続性」,
『国際政治』 176.
- 蠟山正道, 1956, 「日ソ交渉を中心としてわが外交の方途を論ず」, 『中央公論』
71(11), 東京: 中央公論新社.
- Glassner, Martin and Cuck Fahrer, 2004, *Political Geography*, 3r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Kissinger, Henry A.,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 「日本国政府に対するソ連政府声明」(1975.6.17),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https://worldjpn.net>(검색일: 2025.1.30).
- United States of America, 1951, *Congressional Record*, 97, Pt.8, Washington
D.C.: USGPO, [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
record](https://www.congress.gov/bound-congressional-record)(검색일: 2025.2.17).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일본을 둘러싼 미·중·소의 지정학적 삼각형을 통해 일본의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분석하는 것이다. 1950년대 일소국교정상화 교섭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미·일·소의 지리전략론적인 지정학 삼각형이란 틀에서 이루어졌다. ‘북방영토’ 중 지리전략적 가치가 높은 두 개 섬 및 남사할린에 대한 주권의 확립을 도모한 소련의 제안에 접근하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오키나와 이북의 아마미 제도를 조기 반환하고 ‘북방영토’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일소평화조약 체결을 견제하였다. 소련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은 국제연합 가입에 만족해야 했다. 1970년대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일·중의 유기체국가론적인 지정학 삼각형의 핵심 의제를 구성했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재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전통적인 지정학 공간이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 구상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수교 및 타이완과의 단교를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국교정상화, 중일국교정상화, 지정학, ‘북방영토’, 오키나와

ABSTRACT

Geopolitical Dimensions of Japan's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after the San Francisco System: The Northern Territories, Okinawa, and the Taiwan Issue

Song, Byong Kwon

(Associate Professor, Sa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Japan's negotiations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rough the lens of the geopolitical triangle formed by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surrounding Japan in the wake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East Asia.

During the 1950s, the normalization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the Soviet Union unfolded within the framework of a geostrategic triangle involving the U.S., Japan, and the Soviet Union, centering on territorial issues. To counter Japan's growing inclination toward the Soviet proposal—which sought to solidify Soviet sovereignty over the two strategically significant islands among the so-called "Northern Territories" as well as southern Sakhalin—the United States acted to constrain the conclusion of a Japan-Soviet peace treaty by returning the Amami Islands located north of Okinawa ahead of schedule and expressing political support for Japan's claims to the "Northern Territories." Following normalization with the Soviet Union, Japan had to settle for United Nations membership.

In the 1970s, the "Taiwan issue" emerged as a central agenda item within the organic state geopolitical triangle among the U.S., Japan, and China during the normalization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While China built a strategic relationship with the U.S. to contain the Soviet Union, it also adopted a flexible stance by tolerating the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in Japan to prevent Japan's remilitarization concerning Taiwan. For Japan, the negotiations with China—long regarded as part of its traditional geopolitical sphere—prompted a reassessment of the "One China, One Taiwan" concept and led to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severance of official relations with Taiwan.

Keywords

San Francisco Peace Treaty, Japan-China normalization negotiations, Japan-Soviet normalization negotiations, Kuril Islands, Okinawa Islands, Geopolitics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이주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서론
- II.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배경: 신유라시아주의
- III.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재해석과 사례분석
- IV. 결론

1. 서론

2014년 3월 크림반도(러시아명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크림반도 병합은 그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하거나 가스분쟁을 일으킨 것과 다르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국 영토로 합병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주는 파급력이 컸다. 이를 두고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l Mead)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소위 수정주의(revisionist) 세력이 탈냉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귀환했다고 주장했다.¹ 반면 G. 존 아이켄베리(G. John Ikenberry)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수정주의 세력이 아니고 방해(spoiler) 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이켄베리의 주장은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고,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²

두 연구자의 논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적어도 지정학 시대의 도래와 세계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미드의 주장이 적합해 보인다. 왜냐하면 김성진이 주장한 것과 같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두고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진 지정학적 경쟁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즉,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지정학적 충돌의 관점에서 NATO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 영향

* 논문 투고일: 2025.4.27, 심사 완료일: 2025.5.26, 게재 확정일: 2025.5.27.

1 Walter Russell Mead,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04-17/return-geopolitics?check_logged_in=1(검색일: 2024.12.22).

2 G. John Ikenberry,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04-17/illusion-geopolitics>(검색일: 2024.12.22).

3 김성진,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 37-2, 6~10쪽.

력을 확대하려는 서방과 유라시아의 공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이라면, 충분히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지정학 시대가 도래했다는 가정 아래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정학 관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대외정책을 지정학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로 우선 스티븐 코트킨(Stephen Kotkin)은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태평양과 북극해를 제외하고 자연적인 국경이 없으므로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공격을 추구하는 팽창적 모습을 보였고,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트해 연안 국가를 제외한 구소련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서방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⁴ 구소련 이외 지역의 러시아 지정학 전략에 관하여 바바크 레즈바니(Babak Rezvani)는 구소련 지역에 대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경우 NATO 확장에 대응한 보호적 성격에 가깝지만, 2015년 시리아 내전 개입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구소련 이외 지역의 경우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을 얻기 위한 팽창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⁵ 한편, 마르틴 리글(Martin Riegl)과 보후밀 도보시(Bohumil Doboš)는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의 특징에 대해, 코소보 독립 사례를 근거로 들며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압하지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 등 미승인 국가를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지정학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⁶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지정학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에 주요 요

4 Stephen Kotkin, 2016, "Russia's Perpetual Geopolitic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kraine/2016-04-18/russias-perpetual-geopolitics>(검색일: 2024.12.19).

5 Babak Rezvani, 2020, "Russian foreign policy and geopolitics in the Post-Soviet space and the Middle East: Tajikistan, Georgia, Ukraine and Syria," *Middle Eastern Studies*, Vol. 56, Issue 6, pp. 878~899.

6 Martin Riegl and Bohumil Doboš, 2018, "Geopolitics of Secession: Post-Soviet De Facto States and Russian Geopolitical Strategy," *Central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Vol. 12, Issue 1, pp. 59~89.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대체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은 러시아의 공격적 팽창주의와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영향력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물론 강정일이 지적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주변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외부의 위협에 대응했고,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러시아의 팽창정책이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충돌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다.⁷ 그러나 단순히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을 팽창주의와 이에 따른 지정학 충돌로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서방과 지정학적으로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협력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는 주변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 강대국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구축하며 서방의 국제적 고립 전략을 파훼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지정학 전략이 단순히 갈등 지향적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이 연구는 러시아 지정학 전략이 갈등과 강압적 성격의 팽창 이외에도 협력 지향적인 지정학 팽창 전략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고전적 지정학이 아닌 비판지정학 관점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고전 지정학이 지리와 정치 관계, 다시 말해 영토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르게 비판지정학은 국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세계에 대한 사상, 공간과 그 공간 조직에 관한 사상 등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목표 달성에 있어서 역할 등까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룰 러시아 지정학 이론은 알렉산드르 두긴(Aleksandr Dugin)의 ‘신유라시아주의’이다. 후술하겠지만, 신유라시아주의는 푸틴 시기 러시아 대외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에서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21세기의

7 강정일, 2019,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5-2, 151~153쪽.

8 이정하, 2024, 「연구방법으로서의 비판지정학과 지정학적 상상력」, 『서양사연구』 71, 219쪽.

변화한 세계질서와 러시아의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 낼 것이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푸틴 시기를 전반적으로 다루지만, 그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기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푸틴의 외교정책 노선이 옐친 정부 프리마코프의 '자주적 강대국 노선'에 영향을 받아 수립되었지만, 실제로 자주적 강대국을 지향하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푸틴 시기부터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유라시아 지역으로 설정한다. 이때 유라시아라는 공간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는 신유라시아주의의 광의적 해석으로 영국과 미국의 범아틀란티스에 대응하는 프랑스, 독일, 인도, 중국, 이슬람 국가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정의한다.⁹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이 단순히 구소련 지역에서 지역 강국의 위치를 넘어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¹⁰

II.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배경: 신유라시아주의

지정학 이론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가? 본래 이론은 보편성을 지향하므로 지정학 이론도 마찬가지로 어느 국가에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 지역학 이론에는 러시아가 지닌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학이라는 보편적 이론을 러시아의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여 러시아의 지정학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론의 보편성이 결여된다면, 러시아의 특수성이 반영

9 권세은, 2009, 「지역연구 단위로서의 유라시아에 대한 일고」, 『중소연구』 32-4, 205쪽.

10 이진현, 2024, 「다극 세계질서의 주체로서의 문명국가와 지정학의 문제: 러시아의 이론과 현실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4-2, 199~201쪽.

된 러시아 지정학 이론이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지정학 이론을 수용한 러시아 지정학 이론이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여 발전하면서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고유한 지정학 이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¹¹

이와 같은 관점에서 러시아 지정학 이론에 반영한 러시아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의 환경요인이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의 영향으로 자연환경에 국가가 보호받지 못하고, 동서 문명의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다민족·다종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 침략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국가 통합을 위한 정치적 사상이 필요하다. 둘째, 침략에 관한 역사의 기억이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13세기 몽골, 1812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1941년 히틀러의 독일 등 국가 생존이 걸린 침공의 역사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 기억은 자국의 방어를 위한 ‘방어적 확장주의’라는 특징을 만들어 냈다.¹²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갈등과 러시아의 반서방주의이다. 소련이 붕괴한 뒤 러시아가 체제 전환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는 서방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방의 NATO 확장과 민주주의의 요구는 권위주의 체제인 푸틴 정부의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NATO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범퍼지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서방주의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대표적인 러시아 지정학 이론은 ‘신유라시아주의’이다. 해당 이론이 유라시아주의가 아니고 신유라시아주의로 불리는 이유는 본래 유라시아주의는 20세기 초 러시아 망명가들을 중심으로 고전 유라시아주의가 형성되었지만, 이후 구밀료프에 의해 재조명된 유라시아주의가 1980년대 두건에 의해 정치화하여 신유라시

11 권세은, 2024, 「현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이해」, 『아태연구』 31-4, 86~87쪽.

12 Taylor McNeil, 2022, "The Long History of Russia and War," *Tufts Now*, <https://now.tufts.edu/2022/03/31/long-history-russia-and-war>(검색일: 2025.01.10).

아주의로 발전했기 때문이다.¹³

유라시아주의는 서방도 아시아도 아닌 러시아 고유의 문명 정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유라시아주의가 주장하는 고유의 문명 정체성을 대외정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신유라시아주의이다. 따라서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체성 차이는 국가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특히 차별화된 정체성이 정치화된다면 특정 국가 사이의 지정학적 관계와 영토가 형성되기 때문이다.¹⁴ 즉, 신유라시아주의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와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두긴이 주장한 신유라시아주의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지리적 특징을 고전 지정학 관점으로 파악한다. 특히 두긴은 신유라시아주의 관점에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해퍼드 존 매킨더(Halford John Mackinder)의 심장부(Heart Land) 이론과 니컬러스 존 스파이크먼(Nicholas John Spykman)의 림랜드(Rimland) 이론을 사용했다. 신유라시아주의의 지정학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간략하게 매킨더와 스파이크먼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우선 매킨더는 유라시아 대륙 동유럽 쪽 러시아와 아시아 쪽 러시아 대부분을 유라시아 중심(Pivot) 지역으로 설정하며 해당 중심 지역은 해상 세력의 접근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건설함에 따라 기존의 해상 운송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기에 대륙세력은 해양세력의 견제를 받지 않고 성장하여 해양세력을 넘어선 시파워(Sea Power)를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만약 러시아와 독일이 동맹을 맺게 된다면, 대륙세력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을 얻게 되어 세계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논리를 강하게 피력했다.¹⁵

13 박혜경, 2014, 「신유라시아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노어노문학』 26-4, 378쪽.

14 클라우스 도츠 지음, 최파일 옮김, 2023, 『지정학』, 교유서가, 160~197쪽.

15 해퍼드 존 매킨더 지음, 임정관·최용환 옮김, 2022, 『심장지대: 매킨더의 지정학과 지리의 결정력』, 글항아리, 296~306쪽.

반면, 스파이크먼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 위치한 립랜드 지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스파이크먼은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하트랜드를 지배한다. 하트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섬을 지배한다. 세계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매킨더의 주장은 틀렸고, “립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한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지배한다”라는 명제가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서부 지역만이 농업이 가능하고, 산업화가 우랄산맥 기준 서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마저 지리적으로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사례처럼 독일과 일본 연합과 같은 지배적인 립랜드 세력이 지정학적 승리를 거머쥘다면 미국이 고립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⁶

고전 지정학 관점과 마찬가지로 두긴은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하트랜드이고, 중국, 독일, 프랑스, 인도 등이 지정학적으로 립랜드 지역이라는 것을 동의했다.¹⁷ 그러나 스파이크먼이 립랜드 지역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르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립랜드 지역 국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것이 신유라시아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다.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신유라시아주의는 미·러 갈등 상황 속 러시아의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령 두긴은 러시아의 주적을 미국으로 설정하며 립랜드 지역 국가와 동맹, 전략적 침투 더 나아가 전 유라시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하고, 적어도 해당 국가들이 미·러 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는 구소련 지역 복원, 동유럽 국

16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지음, 김연지·모준영·오세정 옮김, 2008, 『평화의 지정학』, 섬앤섬, 75~90쪽.

17 알렉산드르 두긴 지음, 이원복 편저, 2000, 『지정학의 기초: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 육군사관학교 황량대연구소, 24쪽.

가와 동맹관계 회복, NATO를 벗어나려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이란, 인도, 일본 등 동부 대륙지역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인 셈이다.¹⁸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지정학적 확장정책은 지리적 범주로 보았을 때, 러시아의 남부와 서부 국경선이 대륙에 머물지 않고 해안선까지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정학적 확장은 주변 국가의 영토를 정복 혹은 합병하는 수단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강국과 반대서양 전략동맹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갈등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얻는 지정학적 이익인 셈이다.¹⁹

결국 신유라시아주의가 주장하는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본질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립랜드 지역 강국과 협력을 추구하여 러시아가 지역 강국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성공이 가장 유사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역사적 시기는 소비에트 시기이다. 그러나 소련은 당시 남쪽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그리고 극동 쪽의 중국과 협력을 이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²⁰ 즉, 신유라시아주의는 무엇보다 립랜드 지역 강국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통해 지정학적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확장정책이 단순히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동력은 러시아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고, 확장정책으로 얻게 될 이익은 선진화된 기술력이다. 두건은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자원 수출이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건은 상대적으

18 알렉산드르 두긴, 2000, 위의 책, 25~29쪽.

19 알렉산드르 두긴, 2000, 위의 책, 33쪽.

20 알렉산드르 두긴, 2000, 위의 책, 60~66쪽.

로 낙후되었던 소련의 기술력이 냉전의 패배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높은 기술력이 있는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국가는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지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인 것이다.²¹ 그리고 이처럼 특정 국가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지정학 전략이 네 번째 특징이다.

지정학적 전략으로 두긴은 유럽, 중동, 아시아의 지역 강국과의 협력, 특히 유럽의 경우 러시아가 독일과 지정학적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독일은 기술력이 높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과 지정학적 동맹을 맺기 위해 독일 중심의 유럽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국 민족주의 분열을 지원, 프랑스의 자발적 참여 독려, 동유럽 지역에 방역시대 형성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아시아의 경우 인도가 지정학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인도는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이 없으므로 동쪽의 일본,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때 중국보다 일본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데 서방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기에 중국보다 일본이 더 편리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두긴은 일본과 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

중동 지역은 유럽이나 아시아와 다르게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보다 지정학적 거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란은 반미, 반대서양적 성향이 있으므로 이란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서방의 포위 전략을 막아 내는 부동항을 얻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란과의 협력을 위해 아르메니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튀르키예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²³

21 알렉산드르 두긴, 2000, 위의 책, 145~152쪽.

22 알렉산드르 두긴, 2000, 위의 책, 85~95쪽.

23 알렉산드르 두긴, 2000, 위의 책, 105~111쪽.

III.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재해석과 사례분석

1. 러시아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의 변화

신유라시아주의와 러시아 지정학 전략은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과거 소련과 같은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러시아 민족주의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에 신유라시아주의가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드미트리 슬라펜토흐(Dmitry Shlapentokh)는 소련 붕괴 이후 푸틴과 러시아 엘리트의 지정학 인식과 두건의 사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푸틴이 신유라시아주의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설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⁴ 마찬가지로 키릴 칼리닌(Kirill Kalinin)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외교정책 인식과 신유라시아주의 사상과 적합성을 통계 분석한 결과 부분적 일치가 나타나므로 신유라시아주의 사상을 러시아 엘리트들이 완전히 이행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²⁵

이처럼 신유라시아주의에 관한 논란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실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보이는 지정학 전략이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일정 부분에서 차별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유라시아주의는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세계질서는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제로섬 관계이다. 그러나 푸틴 1기 러시아 정부가 9·11 사건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공조했고, 메드베데프 시기 리셋(Reset)외교에 따른 미·러 관계 회복은 신유라시

24 Dmitry Shlapentokh, 2007, "Dugin Eurasianism: a window on the minds of the Russian elite or and intellectual ploy?," *Stud East Eur Thought*, Vol. 59, pp. 215~236.

25 Kirill Kalinin, 2019, "Neo-Eurasianism and the Russian elite: the irrelevance of Aleksandr Dugin's geopolitics," *Post-Soviet Affairs*, Vol. 35, Issue 5-6, pp. 461~470.

아주의에서 제시하는 기본적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중국, 튀르키예가 일본, 이란과 비교하여 서방 세력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견제 세력으로 분류하는데 이것도 현실의 외교관계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 엘리트들의 정치적 이념에 신유라시아주의가 존재한 것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소위 ‘특별군사작전’ 시작하면서 푸틴의 판단에 신유라시아주의의 반서방 관점이 질게 반영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²⁶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두건의 신유라시아주의의 관점이 러시아 지정학 전략으로 모두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서양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독일과 일본과의 협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지정학 전략에서 신유라시아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신유라시아주의가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푸틴의 지정학적 관념(신유라시아주의)과 국제환경의 변화와 인식이 상호작용하여 지정학 전략으로 수렴·실행한다고 가정한다. 즉, 신유라시아주의의 오류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다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유라시아주의 이론에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이론의 확장 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로 권세은은 러시아 신유라시아 지정학의 특성에 대해 팽창주의와 고립주의 성격 중 외부와의 갈등보다 내적 발전을 추구하는 고립주의적 성격이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²⁷ 다만 해당 연구도 국제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러시아 지정학 전략을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신유라시아주의의 관점과 러시아의 국제사회 인식과 대외정책의

26 Santiago Zabala and Claudio Gallo, 2022, "Putin's philosophers: Who inspired him to invade Ukraine?,"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2/3/30/putins-philosophers>(검색일: 2025.01.19).

27 권세은, 2024, 앞의 글, 95쪽.

분석을 추가하여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의 목적과 노선을 살펴볼 것이다.

러시아의 국제사회 인식과 대외정책은 2023년에 발표한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²⁸ 첫째, 서방으로부터의 자국의 생존권 보장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국의 생존권과 발전을 위해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을 적대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방과 평등한 상호 이익이 존중된다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결국 러시아는 자국이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가해자인 서방이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서방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둘째,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확립이다. 러시아는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패권 거부, 국제법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특히 서방이 특정 국가의 발전모델, 가치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극화된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세계·지역적 차원의 안보 보장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 개선의 필요성을 적시하면서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의 역할 회복과 BRICS(브릭스),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 경제연합), CSTO(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 RIC(러시아, 인도, 중국) 등 러시아가 강력하게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결국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메커니즘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의 역할이 강조되는 다자기구가 다극화된 국제사회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 및 지역에서 무력 사용의 조건이다. UN 헌장 51조(자위권)와 러

28 해당 부분은 이주연, 2024, 「러시아 반서방 대외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혜진 편저, 「끝나지 않은 전쟁: 2023 러시아」, 다해, 88~92쪽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 격퇴 및 예방, 평화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군대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치, 경제, 정보 통신 등을 활용한 비우호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진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합법적으로 간주한다. 지역 안보 차원에서 동맹국에 대한 외부 간섭 시도를 억제하고,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러시아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지양하고, 핵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국제 테러 행위로부터 러시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테러 분야의 다자간 협력 강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극단주의 내용에서 네오나치를 포함하여, 극단주의(네오나치 포함) 조직이 국내외 정책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인터넷에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신나치주의 및 급진적 민족주의 포함)의 확산을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으로부터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보호를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고 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네오나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극단주의에 네오나치를 포함한 것은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테러전, 사이버전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다섯째, 국제 및 지역에서 러시아 문화의 확산과 보호이다. 러시아는 비우호국의 루소포비아(Russophobia)와 같은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이미지를 강화하고, 특히 러시아어의 위상을 강화하길 원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공공외교를 발전시키고 러시아와 CIS 역내에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보호·발전시킬 것을 주장한다. 특히 러시아는 역사 왜곡, 루소포비아, 신나치주의 확산, 민족적 배타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 UN 창설에 대한 소련의 기여, 세계 역사에서 러시아 역할,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위한 정확한 정보 확산 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여섯째,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지원이다. 러시아는 러시아 이외에도 해외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

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은 이전의 조지아 전쟁, 크림반도 병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례와 같이 해외 동포 보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해당 항목을 토대로 근외 지역의 해외 동포 보호 명목은 러시아 군사 개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의 지역별 우선순위이다.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는 △근외 지역 △북극 △유라시아 대륙(중국과 인도 포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슬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럽 지역 △미국과 기타 앵글로색슨 지역 △남극 순서로 작성되어 있다. 우선순위에서 보이듯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보다는 근외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즉,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보다 비서구 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별 우선순위로 보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분열, 다극화, 블록화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23년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과 신유라시아주의의 시사점을 비교해 보면, 반서방 인식과 러시아 지정학 공간 보호의 필요성 강조 그리고 림랜드 지역을 우선시하는 것은 유사하다. 즉, 전반적으로 세계질서를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질서에의 대응 필요성 등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지정학 전략에서 주요 협력국에 관한 차이가 있다. 특히 신유라시아주의에서 강조하는 독일과 일본과의 협력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역내 다자기구보다 역외 다자기구인 BRICS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확장된 BRICS 플러스에 이란이 2024년에 가입했고, 튀르키예가 가입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이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튀르키예도 협력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다르다.

신유라시아주의에서 중국과 튀르키예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다르게 러시아 지정학 전략에 중국과 튀르키예가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한 원인은 중국과 튀르키예가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점차 반서방 정체성

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러시아에 부족한 기술력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일본을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지정학 전략 변화 사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2.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의 사례분석

1) 러시아의 대아시아 지정학 전략: 중국과의 연대 강화

일본이 반서방 연대에 참여하고, 에너지 수요국, 기술력 공급국이 될 것이라는 두건의 주장과 다르게 일본과의 협력은 미진하다. 오히려 러시아는 서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했던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우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미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NATO 동진 확대 전략'과 '아태 재균형 전략' 등과 같은 대중국 견제 대외정책을 수립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미국의 대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선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오히려 러시아에 안보 위협을 발생시켰고,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후 미국은 대러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처벌적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은 대러제재를 반대하면서 러시아의 우방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⁹

NATO 요인 이외에도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은 러중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푸틴과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색깔혁명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즉, 양국은 미국이 비폭력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다. 가령 2022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색깔

29 김재관, 2016, 「21세기 중러 관계의 발전 요인에 대한 분석」, 『아세아연구』 59-2, 122~127쪽.

혁명과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양국이 공통으로 색깔혁명을 반대함을 알 수 있다.³⁰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공통으로 NATO의 동진과 색깔혁명의 확장을 비난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국은 공통적으로 NATO의 동진과 색깔혁명이 유라시아 공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 시키려는 미국의 지정학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국의 지정학 전략의 협력 시너지가 높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을 위한 전략인 대유라시아파트너십(GEP: Greater Eurasia Partnership) 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한 유라시아 통합을 넘어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인도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유라시아 통합 전략이다. 해당 통합 전략과 관련하여 푸틴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두 프로젝트가 조화를 이뤄야 GEP의 완성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만약 BRI와 러시아의 물류망이 연계된다면, 러시아는 지정학적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³¹

물론 GEP와 BRI의 연결이 어렵고, 오히려 GEP가 BRI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GEP와 BRI가 연계된다면 에너지 교역, 국제 물류회랑 연결 그리고 극동 개발 등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³² 또한 푸틴이 GEP와 BRI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바 양국의 지정학 전략의 충돌이 가시화하고 있지 않다.

셋째, 경제 안보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가져오는 이득이 상당하다. 중국의 고속 성장으로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이때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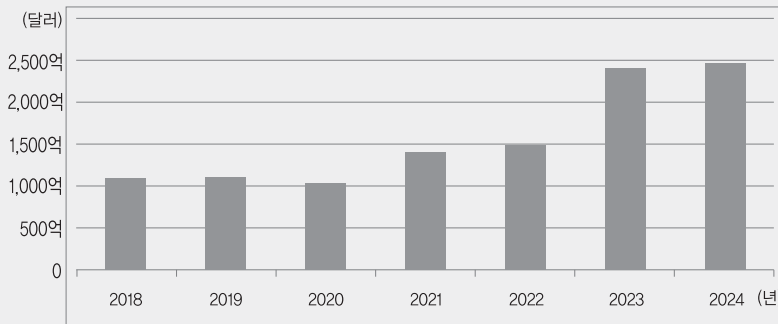
30 "Russia, China oppose color revolutions — joint statement," <https://tass.com/politics/1398153>(검색일: 2025.03.12).

31 김선래, 2022, 「러시아의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 개념과 중러 협력」, 『러시아연구』 32-1, 39~40쪽.

32 Yongquan Li, 2018, "The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an the two be linked?,"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9, Issue 2, p. 98.

대한 에너지 수요가 발생했고, 러시아가 이를 충당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2014년 크림병합 이후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시베리아 힘’ 가스 파이프라인을 개통하여 중국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³³

이와 같은 추세는 <그림 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018년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액은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물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역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에도 다시 한 번 사상 최대 교역액을 달성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양국의 교역액은 대폭 증가하여 2024년 기준 2,448억 달러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³⁴ 결과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에너지를 중국에 판매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중국은 비교적 값싼 가격으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



<그림 1>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액 추이
출처: KITA, 중국 해관총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

33 ‘시베리아 힘’ 가스 파이프라인은 2014년부터 시작한 대러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 다변화 전략을 위해 중국과 합의한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로 2019년 12월 12일 개통되었다. ‘시베리아 힘’을 통한 가스 공급 계약기간은 30년이며, 러시아는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수출로 4,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호·김석환·정민현, 2019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개통의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9-27, 3~5쪽.

34 “CGTN: 중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상외교”, <https://kr.prnasia.com/story/125302435-9.shtml>(검색일: 2025.05.06).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겨난 막대한 경제 부담감을 중국으로부터 해소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국의 기술협력 또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기초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기초과학기술력이 부족하지만, 기술의 상업화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중국은 4차 산업 시대 러시아가 부진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5G, 양자통신, 위성 항법시스템, AI, 반도체, 자원 관련 엔지니어링, 북극 개발,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³⁵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경제 안보 위협이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가치는 점차 높아졌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사하고 있고, 서방을 비롯한 자유주의 연대는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와 에너지 개발 분야가 대체적으로 선진화된 서방의 기술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러제재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구매하고 첨단 분야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든든한 우방국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아닌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의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러시아의 대코카서스 지정학 전략 변화: 아르메니아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로

러시아 대코카서스 지정학 전략을 살펴보려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관계를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35 이상준·조정원, 2024, 「러시아와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배경과 추진체계」, 『중소연구』 48-2, 207~260쪽.

에서 러시아와 튀르키예 사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아르메니아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는 튀르키예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국은 튀르키예가 NATO 회원국이고, 자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아르메니아와 부정적 관계에 있으므로 튀르키예에 대한 견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튀르키예에 대한 러시아 정책의 변화가 처음 감지된 것은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다. 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러시아와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스크 그룹의 평화 중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고, 결국 2020년 9월 27일 2차 전쟁이 발발했다. 2차 전쟁의 경우 2016년 4일 전쟁과 다르게 전투가 국경선에 한정되지 않고, 간자(Ganja), 스테판나케르트(Stepanakert), 마르투니(Martuni) 등 도심 지역에서도 폭격이 발생했다. 전황이 아르메니아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자 아르메니아는 휴전을 요구했고, 러시아의 중재로 2020년 11월 9일 휴전협정을 맺게 되었다. 휴전협정에 따라 러시아가 5년간 약 2천 명의 평화유지군을 제공하여 군사 충돌을 막아주어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평화는 금세 깨지게 되었다. 2023년 9월 19일 반테러작전을 주장하며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공습으로 아르메니아계 자치세력이 투항했고, 9월 18일 아르차흐 공화국 해체를 선언하며 2024년 1월 1일부로 국가기관 해산을 발표했다. 이로써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 중 약 10만 명의 주민이 아르메니아로 피신했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편입으로 길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종식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평화유지군도 철수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지정학적 가치보다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지정학 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³⁶

36 Kirill Krivosheev, 2024, "The Cost of Russia's Friendship with Azerbaijan," *Carnegie Endowment*

2차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1차 전쟁 시기와 다소 다른 점들을 찾아보자면, 첫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주도하는 EAEU와 CSTO 회원국으로 아제르바이잔과 비교하여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더 가까운 국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전쟁에서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2차 전쟁에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휴전을 주도했다. 둘째, 푸틴은 튀르키예가 민스크 그룹의 일원이므로 분쟁 해결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밝히며 튀르키예의 개입을 인정했다. 이것은 기존에 러시아가 3자(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협상을 선호한 것과 다르게 제3의 국가를 인정한 것이다.

러시아의 대코카서스 지정학 전략 변화의 원인은 첫째, 코카서스 지정학 전략의 힘의 투사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한 점이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고,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러시아는 주변 지역에 자국의 국력을 소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러시아가 코카서스 지역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둘째, 아제르바이잔의 지정학 가치의 증가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에프 정부는 친튀르키예, 근서방, 근러시아 대외정책과 같이 균형 외교를 실행하고 있었고,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안보 관계가 러시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가령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존도가 낮지만, 수입의 15%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기준 무기 수입의 8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도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아르메니아 측을 지원하는 것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셋째, 튀르키예에 대한 지정학 인식의 변화이다. 본래 튀르키예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NATO 국가이므로 서방 세력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

for International Peace—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4/05/the-cost-of-russias-friendship-with-azerbaijan?lang=en>.

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점차 권위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서방이 요구하는 자유주의와 다른 정치 발전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NATO 회원국 중 반러시아 경향성이 떨어지고, NATO 관계에서 레버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측면에서 터키스트림이 완전히 가동하게 된다면,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여 유럽에 천연자원을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과의 갈등이라는 국제 수준의 환경변화와 지역 수준에서 새로운 에너지 판매처와 서방의 고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립랜드 형성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므로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가치가 높아져 아르메니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정학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의 시사점을 적용했다. 그러나 신유라시아주의가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바 2023년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러시아 지정학 전략을 재해석했다. 분석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와 같이 강압적 방법으로 영토를 획득하는 확장정책 이외에도 중국과 튀르키예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외교적 협력을 통한 지정학 확장정책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지정학 전략의 수정이 가능한가? 이 연구의 시사점을 토대로 예측해 보자면, 적어도 푸틴 시기까지 지정학적 확장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푸틴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제로섬 관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서방이 국제사회의 소수이고, 세계 다수인 글로벌사우스 국가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외교형 지정학적 확장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러시아의 외교형 지정학 확장정책의 변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우선 푸틴 정부가 붕괴하고 서구주의 엘리트가 집권하는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러시아 내에 푸틴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정치가가 존재하거나,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 경향을 대체할 지정학 노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 푸틴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가가 없고, 신유라시아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론적 사상도 부재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과 튀르키예가 친서방 노선으로 변화하여 러시아 고립 전략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해당 시나리오 중 중국의 친서방 연대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G2를 지향하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튀르키예의 경우 에르도안 정부가 교체될 경우 다소 친러시아 노선에서 친서방 노선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튀르키예는 세속적이지만 이슬람 정체성이 있어서 서구주의 정체성과 다소 거리감이 있으므로 완전히 친서방 노선으로 대외정책이 변화하기 어렵다.

한편, 러시아의 외교형 지정학 확장정책의 사례를 중국과 튀르키예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외에도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등 양자차원의 협력 사례와 BRICS를 통한 글로벌사우스 지정학 전략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아 이 연구가 주장하는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일, 2019,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5-2.
- 권세은, 2009, 「지역연구 단위로서의 유라시아에 대한 일고」, 『중소연구』 32-4.
- _____, 2024, 「현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이해」, 『아태연구』 31-4.
- 김성진,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 37-2.
-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지음, 김연지·모준영·오세정 옮김, 2008, 『평화의 지정학』, 섬앤섬.
- 박혜경, 2014, 「신유라시아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노어노문학』 26-4.
- 알렉산드르 두긴 지음, 이원복 편저, 2000, 『지정학의 기초: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이상준·조정원, 2024, 「러시아와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배경과 추진체계」, 『중소연구』 48-2.
- 이정하, 2024, 「연구방법으로서의 비판지정학과 지정학적 상상력」, 『서양사연구』 71.
- 이주연, 2024, 「러시아 반서방 대외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혜진 편저, 『끝나지 않은 전쟁: 2023 러시아』, 다해.
- 이진현, 2024, 「다극 세계질서의 주체로서의 문명국가와 지정학의 문제: 러시아의 이론과 현실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4-2.
- 클라우스 도즈 지음, 최파일 옮김, 2023, 『지정학』, 교유서가.
- 해퍼드 존 매킨더 지음, 임정관·최용환 옮김, 2022, 『심장지대: 매킨더의 지정학과 지리의 결정력』, 글항아리.
- Kalinin, Kirill, 2019, "Neo- Eurasianism and the Russian elite: the irrelevance of Aleksandr Dugin's geopolitics," *Post-Soviet Affairs*, Vol. 35, Issue 5-6.
- Rezvani, Babak, 2020, "Russian foreign policy and geopolitics in the Post-Soviet space and the Middle East: Tajikistan, Georgia, Ukraine and Syria," *Middle Eastern Studies*, Vol. 56, Issue 6.
- Riegl, Martin and Bohumil Doboš, 2018, "Geopolitics of Secession: Post-

- Soviet De Facto States and Russian Geopolitical Strategy,” *Central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Vol. 12, Issue 1.
- Shlapentokh, Dmitry, 2007, “Dugin Eurasianism: a window on the minds of the Russian elite or and intellectual ploy?,” *Stud East Eur Thought*, Vol. 59.
- G. John Ikenberry,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04-17/illusion-geopolitics> (검색일: 2024.12.22).
- Kirill Krivosheev, 2024, “The Cost of Russia’s Friendship with Azerbaija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4/05/the-cost-of-russias-friendship-with-azerbaijan?lang=en>.
- Santiago Zabala and Claudio Gallo, 2022, “Putin’s philosophers: Who inspired him to invade Ukraine?,”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2/3/30/putins-philosophers> (검색일: 2025.01.19).
- Stephen Kotkin, 2016, “Russia’s Perpetual Geopolitic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kraine/2016-04-18/russias-perpetual-geopolitics> (검색일: 2024.12.19).
- Taylor McNeil, 2022, “The Long History of Russia and War,” *Tufts Now*, <https://now.tufts.edu/2022/03/31/long-history-russia-and-war> (검색일: 2025.01.10).
- Walter Russell Mead,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04-17/return-geopolitics?check_logged_in=1 (검색일: 2024.12.22).

국문초록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지역 분쟁이 아니고, '지정학 시대의 귀환'을 알린 사건이다. 두 사건은 공통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불법으로 침탈 및 병합했다는 점에서 고전 지정학의 시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고전 지정학 시각으로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바라보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협력을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 전략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이 단순히 공격적 팽창주의에 머물지 않고, 협력과 외교를 통한 팽창의 성격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알렉산드르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을 설명하지만, 해당 이론이 푸틴 시기 대외정책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2023년에 발표한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중국과 튀르키예 사례를 통해 러시아 지정학 전략이 공격적 팽창주의 이외에도 협력과 외교를 통한 지정학 확장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고, 중국과 튀르키예가 단기적으로 반러시아 연대로 외교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앞으로 러시아의 외교형 지정학 확장정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러시아, 유라시아, 지정학, 두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ABSTRACT

Putin's Eurasian Strategy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Lee, Ju Yeo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2014 annexation of Crimea and the 2022 Russia-Ukraine war signify the resurgence of a geopolitical era, extending beyond mere regional conflicts. Both events can be interpreted through classical geopolitical theory, particularly in terms of illegal territorial annexation and expansionism. However, this traditional lens falls short in explaining Russia's broader influence-building strategy, which includes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This study argues that President Vladimir Putin's Eurasian strategy encompasses not only aggressive expansionism but also geopolitical expansion through diplomacy and cooperation. While Aleksandr Dugin's theory of "Neo-Eurasianism" offers a foundational framework, it is insufficient to fully explain Russia's foreign policy under Putin. Therefore, this research incorporates an analysis of the 2023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ussia's evolving geopolitical strategy.

The case studies of China and Türkiye demonstrate that Russia is actively pursuing geopolitical expansion through diplomatic and cooperative means. Furthermore, given the consolidation of Putin's power after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low probability of a near-term diplomatic shift by China and Türkiye toward an anti-Russian stance, significant changes in Russia's diplomacy-oriented geopolitical strategy are unlikely in the foreseeable future.

Keywords

Russia, Eurasia, Geopolitics, Dugin, Russia-Ukraine War

연구-개념



- **조진욱** | 한국 고대 선박의 구조 변화를 통해 본 '준구조선'의 개념 정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고대 선박의 구조 변화를 통해 본 ‘준구조선’의 개념 정의

조진욱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 I. 서론
- II. 한국 고대 선박 관련 자료 검토
- III. 한국 고대 선박의 구조 변화와 준구조선의
개념 정의
- IV. 결론

1. 서론

그동안 전통 선박 연구는 발굴된 실물 선체 대다수가 속한 고려~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선박사에서 고려시대 이전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준구조선에서 완전한 구조선으로 변화하는 단계로 인식되어 있으나, 자료 부족으로 주형토기에 의존하여 연구¹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영흥도선 등 실물 선체를 포함해서, 부족하나마 한국 고대 선박의 자료가 확보되고 개별 선박에 대한 연구²가 진행되어 기초적인 연구³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국 고대 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위해 구조선과 준구조선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발전단계는 독목주-준구조선-구조선으로 크게 나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독목주와 달리 준구조선과 구조선은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나 분류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료의 부족으로 준구조선의 직접적인 구조가 연구된 적이 거의 없어 준구조선이 실제로 어떤 선박을 지칭하는지, 또는 어떤 선박부터 구조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 논문 투고일: 2025.5.9, 심사 완료일: 2025.5.26, 재심사 완료일: 2025.6.11, 재재심사 완료일: 2025.6.13, 게재 확정일: 2025.6.16.

1 김건수, 2013, 「주형토기로 본 삼국시대 배의 고찰」, 『도서문화』 42, 81~103쪽; 스킴키 코키, 2019, 「한·일출토 주형토기·하니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삼국·고분시대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4, 41~72쪽; 김창석, 2021, 「한국 고대의 輸役과 漕運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53~104쪽; 임동민, 2022,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기술을 통해 바라본 백제 한성기 항해술과 조선술」, 『해양문화재』 16, 337~367쪽.

2 김응호·홍순재·김병근·한규성, 2021, 「수중출수된 고선박의 구조와 목재수종의 변화」, 『해양문화재』 14; 허문영·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 구조 연구」, 『해양문화재』 17, 235~267쪽; 남창섭, 2022, 「인천 영흥도선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1990~2000년대까지 주로 김재근, 이원식을 중심으로 그 당시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배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개별적인 선박과 화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배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인 연구는 홍순재의 박사논문에 추가적인 연구성고를 집대성한 홍순재, 2024, 『한선연구: 고고학적 유산과 기록에 담긴 한국 선박사』, 민속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준구조선은 완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선박, 구조선은 완전한 구조를 갖춘 선박을 지칭한다. 또한 임동민은 준구조선을 독목주에 추가 부재를 설치한 형태, 구조선을 여러 장의 목재를 이어서 만드는 선박으로 언급하였다.⁴ 이런 정의는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인양된 다수의 고선박이 있는 현 상황에 대입하면 지나치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정의한 특징이 실물 자료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단어와 실제 현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하는 자료가 이건의 여지 없이 충분할 정도로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준구조선 단계라고 보이는 선박은 단 세 척만이 발굴되었다. 나머지는 주형토기나 주형 목제품 및 문헌 기록 등 간접적 자료다.

그래서 지금은 간접 자료와 기록 등을 통한 추정에 의존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된 지금 시점에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준구조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연구성과를 적용해서 과거 자료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안압지선이나 주형토기와 같이 과거에 확인된 자료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축적된 고선박에 대한 연구성과가 없을 때 검토되었다. 그 이후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실물 선체가 다수 확보되어 고선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자료에 대해서 이런 연구성과를 적용하여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확보 가능한 고대 선박의 직간접인 자료를 검토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떤 선박이 준구조선인지, 어떻게 변화하여 구조선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하였다.

4 임동민, 2022, 앞의 글, 362쪽.

II. 한국 고대 선박 관련 자료 검토

1. 실물 선체 발굴 현황

현재까지 발굴된 고려시대 이전 고선박은 안압지선,⁵ 김해 봉황동선, 영흥도선 3척이다.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안압지선은 저판과 외판 1단만 확인되었다. 김해 봉황동선은 외판의 상단 부분만 발견되었다. 영흥도선은 저판과 외판 일부만 확인되었다. 안압지선과 영흥도선은 통일신라의 배, 김해 봉황동선은 가야에 해당하는 연대와 영역에서 발견된 일본 배로 추정된다.⁶

<표 1> 고려시대 이전 준구조선 실물 선체 발굴 현황

명칭	위치	확인된 선체	공반 유물	시대
봉황동선	김해시 봉황동	현측판 추정 (길이 3.4m, 폭 0.6m)	노, 뒕, 미상 선체 편	가야(삼국시대 문화층 아래 패각층에서 발견)
안압지선	경주 안압지(현 월지)	3단 저판, 외판 1개 및 결합 부재	미상 목재 부재 등	통일 신라(명문자료를 통해 7~8C 추정)
영흥도선	인천 옹진군 영흥도	2단 저판과 1단 외판 (또는 1단 저판과 2단 외판)	도기병과 철제술(통일 신라)	통일 신라(8C-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1) 봉황동선⁷

가장 이른 시기의 배인 봉황동선은 선수부의 대형 부재(외판재) 1개와 제형(梯形) 부재 1개가 가야의 영역인 김해 봉황동에서 발견되었다.⁸ 방사성탄

5 현재 명칭은 월지이나 기존 명칭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안압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6 선체는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자생하는 녹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선체 편에 사용된 나무 껍기는 일본 고유 수종인 삼나무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일본에서 제작된 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7 재단법인 동양문화연구원, 2014,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연구보고 제16집, 130~143쪽.

8 외판 위에서 발견된 제형 부재는 아직 용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재단법인 동양문화연구원, 2014, 위의 책, 51쪽).



〈그림 1〉 봉황동 배 발굴 현장 노출 모습

출처: 재단법인 동양문화연구원, 2014,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연구보고 제16집, 4쪽.

소연대 측정의 결과 3~4세기대, 가야시대에 해당한다. 길이 3.9m, 폭 32~60cm, 두께 2~3cm로, 앞면에는 일부 문양과 썰기 홈과의 결합을 위한 가공이 되어 있다. 수종 분석 결과 외판재는 중국과 일본에서 주로 자생하는 녹나무로 건조되었다. 외판재에 사용된 나무 썰기와 제형 부재는 일본 고유 수종인 삼나무로 만들어졌다.⁹ 발견된 외판재는 이체구조선(二體構造線)이라 불리는 이중 저판 구조 선박의 선수 외판 최상단 부재로 보인다.

또한 외판재의 크기가 매우 커 선박의 전체 길이가 최소한 10m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판재 전체에 구멍 9개와 상단에 3개의 홈, 선미부에 2개의 홈이 파여 있다. 이것은 가롱과 피삭, 그리고 본체 또는 방형재를 덧붙이기 위한 홈으로 추정된다.

외판재의 모양이나, 편을 통한 추정 구조는 우리나라 주류 선박으로 믿어지는 평저형 선박의 구조와 크게 다르다. 또한 일본과 중국 남부에서 주로 자생하는 녹나무로 만들어져 일본의 배로 볼 여지가 크다.¹⁰ 특히 외판재의

9 이광희·김동윤, 2015, 『김해 봉황동 유적 출토 선박부재의 수종분석 및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 31-4, 341~350쪽.

10 특히 선박을 만들 만한 목재는 일종의 전략자원으로 국가 또는 행정 단위에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썰기와 외판재 위에서 발견된 용도 미상의 제형 부재는 일본 고유 수종인 삼나무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체가 대부분 소나무로, 피삭이나 장삭이 소나무, 굴피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로 제작되는 것과 대조된다. 일본에서 목재를 수입해 가야에서 건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본에서 건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외판재 하나와 용도 불상 부재 편 총 2개의 부재만이 발견되어 단독으로는 어떤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형태적 특이성, 발굴 위치에서 추정되는 의미를 간접 자료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형토기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 주형토기 검토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봉황동 선체 편은 일본 고분과 가야 영역 주형토기의 현층재와 형태가 유사하다.

2) 안압지선

안압지선은 안압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선박이다. 현재 3단의 저판이 복원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안압지선 저판의 형태는 고려시대 선박의 저판과는 상당히 다르다. 외판과 저판이 구분되는 고려시대 선박과 달리 중앙저판 좌우의 저판이 외판의 역할을 겸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저판과 저판을 장식으로 관통시켜 연결하는 고려시대 선박과 달리 저판을 연결하기 위해 저판의 상부를 ‘ㄴ’ 자 형태로 가공해 장식으로 좌우측저판과 연결하였다. 여기에 쇠못을 사용해 고정했다.

또한 3단의 저판 외에도 외판과 목재 편이 더 출토되었다. 그런데 워낙 오래전에 선박 전문가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 복원되어 복원 과정에서 외판이 누락되었다. 외판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다. 저판과 외판의 결합 방식이 많은 정보를 보여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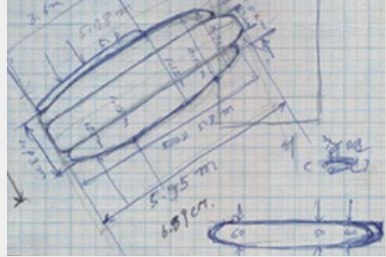
그런데 발굴 현장을 촬영한 다음 사진들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확인된다. 외판이 저판에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 보인다. 사진을 보면 가장 바깥쪽 저판에 외판이 결합되어 선체가 외부로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압지선의 도면을 보면 바깥쪽으로 ‘ㄴ’ 자 모양의 턱이 만들어져 있다. 이 턱에 외판을 대고 쇠못을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고대 선박의 구조 변화를 통해 본 '준구조선'의 개념 정의



〈그림 2〉 안압지선 발골 모습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못 속에서 찾은 신라』, 118쪽.



〈그림 3〉 야장에 기록된 안압지선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못 속에서 찾은 신라』, 128쪽.



〈그림 4〉 발골 당시 선미 쪽 모습

출처: 대한민국문화부문화재관리국, 1993, 『안압지 발굴조사 보고서』 도판편, 사진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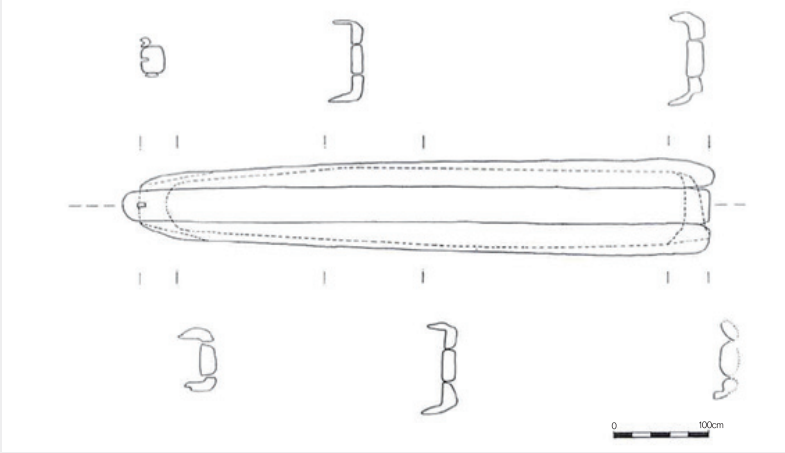
〈그림 5〉 안압지선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도 결합한 상태를 도면화한 자료는 찾지 못해 도면과 사진을 통해 추정하였다. 먼저 잔존 선체의 길이는 대략 6m, 잔존 외판의 길이는 3.6m이다. 선수 쪽으로 비스듬하게 부식이 진행되면서 외판의 일부와 결합부가 훼손되어 현재의 상태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판이 붙은 쪽은 우현임을 알 수 있다.

외판을 제외한 선체의 잔존 형태는 당시 보고서의 세부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도면(〈그림 6〉)을 보면 안압지선의 전체 선체와 각 위치에서 그린 단면이 그려져 있다. 선수 쪽에 사각형 홈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전복된 상태로 발견된 배를 바로 앉힌 후 그린 도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판은 도면에 그려져 있지 않다. 외판이 결합된 쪽의 저판이 도면에 어느 부분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사진에 보이는 안압



〈그림 6〉 안압지선 실측도면

출처: 대한민국문화부문화재관리국, 1993, 『안압지 발굴조사 보고서』 도판편, 도면 139.



〈그림 7〉 안압지선 선미 쪽 모습

지선의 형태와 도면의 형태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야장에 기록된 외판이 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미 쪽에 더 길게 그려져 있다. 또한 발굴 당시 선미 쪽 사진에 ‘ㄴ’ 자 모양으로 찍힌 형태가

확인되는 우현에 외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면상에 선미 쪽으로 더 긴 쪽과 'ㄴ' 자 모양은 각각 다른 저판에 그려져 있다. 다만 확실히 선체를 확인한 후 그렸을 단면도상의 'ㄴ' 자 모양이 있는 쪽인 좌측이 외판이 결합된 저판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면도는 좌우를 반대로 그린 도면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그림 7> 현재 전시된 안압지선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을 보면 우현에 'ㄴ' 자 모양으로 가공된 저판이 더 잘 남아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따라서 위 도면(<그림 6>)은 좌측이 선수, 우측이 선미, 아래쪽이 좌현, 위쪽이 우현이나 단면도는 좌우가 반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상하 및 좌우 반전시킨 안압지선 사진



<그림 9> 안압지선 단면도



<그림 10> 선미 쪽 저판 크기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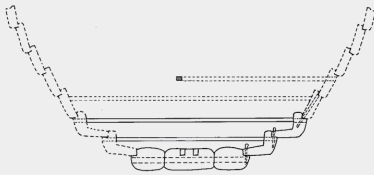
이런 상황을 종합하고 실제 사진을 참고하여 위 도면상 필요한 단면도만 추출해서 좌우 반전시키고 사진을 참고하여 외판이 붙은 모습을 추정해서 추가하면 <그림 9>와 같다. 선수 쪽 외판재는 실제로는 사진에도 확인되지 않지만 'ㄴ' 자형 턱이 명확하게 남아 있고 선미 쪽도 거의 직각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려 넣었다.

그러나 실제 안압지선 복원 사진과는 차이가 있다. 도면상에는 마치 배의 가운데가 볼록한 것처럼 보이나, 사진이나 전체 선박을 그린 도면은 선미가 가장 넓고 선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이것은 축척의 불일치 문제로

보인다. 이것을 사진을 통해 보정하고 가장 선미 쪽을 그린 판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 7>과 맞추면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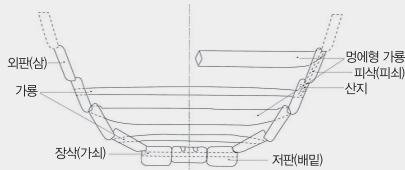
따라서 안압지선의 외판은 가장 넓은 선미에 선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삽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요한 점은 위 사진에서 외판은 선체 중앙에서 저판이 그리는 것과 거의 같은 각도로, 선미 쪽에서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압지선 외판이 삽입된 각도는 아래 고려선의 단면도 중 최상단 또는 상단 외판에서 확인되는 각도에 가깝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고려선은 저판에 가까울수록 외판이 삽입되는 각도가 완만하고, 갑판에 가까워질수록 수직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안압지선은 외판을 1~2단 정도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십이동파도선 복원 단면도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십이동파도 해저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29쪽.



<그림 12> 달리도선 단면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목포시, 1999, 『목포 달리도 배 발굴조사 보고서』, 92쪽.

특히 안압지선 측저판의 형태는 만곡중통재와 비슷하고, 외판이 측저판에 삽입된 각도는 만곡중통재가 있는 초기 고려선의 만곡중통재에 외판이 삽입된 각도와 비슷하다. 초기 이후 만곡중통재가 없는 고려선은 저판을 3열 이상 쓰거나 1~2단 외판의 각도를 완만하게 하여 선체의 폭을 넓혔다. 이것은 각진 부분을 줄일수록 항해 성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안압지선의 구조는 같은 통일신라 배인 영흥도선과 초기 만곡중통재가 있는 고려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판이 만곡중통재를 겸하는 안압지선이 외판을 올린 이유도 선

체의 폭보다는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판에서 외판으로 이어지면서 넓게 확장되는 고려시대 이후 선박과 달리 저판의 폭과 선박 상부의 폭이 크게 다르지 않은, 'U' 자형 단면을 가진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급령총 출토 주형토기 중 한 점과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높잇배였을 안압지 선박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현재 복원된 안압지선은 폭에 비해 높이가 너무 낮다. 아무리 파도가 없는 잔잔한 연못이라 하더라도 노를 조금만 저어도 배는 흔들리며 쉽게 승객들에게 물이 된다. 월지(안압지)에서 뱃놀이를 하던 사람들은 신라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물이 쉽게 튀는 낮은 높이의 선박에서 물놀이를 즐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판을 1~2단 정도 올려서 높이를 확보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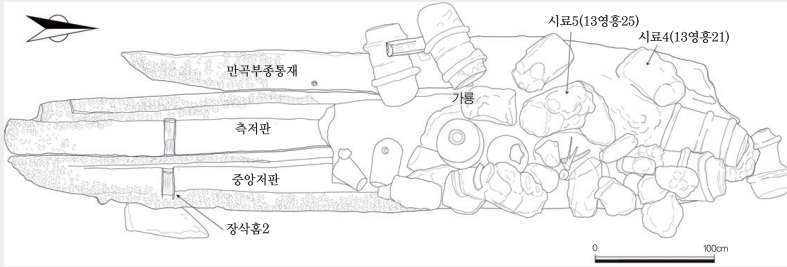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선의 바닥은 물이 고이기 쉽고 습기가 많아 쾌적하지 않다. 그래서 이 경우 바닥에 무언가를 깔았을 것이다. 또는 갑판과 상장까지 갖춘 좀 더 큰 배도 같이 사용했거나 후대의 선박처럼 선수나 선미, 선체 중앙 등 일부에만 갑판을 깔아서 놀이 공간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

또 현대에 복원한 월지에도 녹조 등의 관리를 위해 고무보트를 사용하고 있듯이, 안압지에서는 놀이를 위한 배뿐만이 아니라 조경이나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용 배도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구조의 선박을 모두 만들어 때에 따라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안압지선 외에도 구조 불상의 선체 편들이 발견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3) 영흥도선

영흥도선은 통일신라 선박으로 연못에서 발견된 안압지선과 달리 인천 영흥도에서 발견된 선박으로 근해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이다.¹¹ 저판과 외판으로 보이는 총 세 단의 선체 편이 발굴되었다.

11 영흥도선이 원양 항해도 겸하는 선박이었거나, 별도의 원양 항해를 위한 구조를 가진 선박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현재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림 13〉 영흥도선 발굴도면

출처: 허문녕·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 구조 연구」, 『해양문화재』 17, 243쪽.

영흥도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있다. 특히 선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발굴보고서에는 중앙저판과 외판 1, 2(위 도면상 촉저판과 만곡부종통재)를 인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허문녕, 윤용희는 〈그림 13〉과 같이 중앙저판, 촉저판, 만곡부종통재를 인양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창섭은 영흥도선이 침저형 신라 원양 무역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홍순재는 별도의 중앙저판 좌우로 저판, 그리고 ‘L’ 자 형태의 촉저판이 그 좌우로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결론적으로 〈그림 13〉에서 중앙저판으로 표시된 것을 중앙저판으로 보는 의견과 중앙저판 좌우의 저판재로 보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 〈그림 13〉의 중앙저판을 그대로 중앙저판으로 보면 촉저판은 그대로 촉저판으로, 중앙저판이 아니라면 만곡부종통재 1단이 된다.

위 의견들 모두 부재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린 것으로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가룡의 크기, 좌우관통구멍 위치 등을 볼 때 홍순재의 의견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즉, 위 중앙저판이라 표기된 편은 중앙저판 좌우의 저판이며, 촉저판으로 표기된 것은 만곡부종통재 1단, 만곡부종통재는 만곡부종통재 2단으로 보는 것이다.

위 도면의 만곡부종통재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의 이론(異論)이 없어, 도

12 즉, 발견된 것이 중앙저판이 아닌 저판과 촉저판, 만곡부종통재로 보는 것이다.

면상 '측저판'이 어떠한 부재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측저판을 외판의 일종인 만곡중통재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영흥도선 측저판설을 수용한다면 영흥도선의 단면 형태는 침저선이 되는데, 발견된 위치와 당시 통일신라의 상황상 침저선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적다. 한반도 남쪽 전체를 영역에 두는 통일신라의 실정과 안압지선과 십이동과도선 등 가까운 시대 선박의 형태, 영흥도선이 발견된 서해 쪽 자연환경상 침저선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평저선이 사용되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즉, 선박의 정박이 어렵다. 특히 서해 쪽은 항구로 사용하기 좋은 곳이 적고 수심이 깊은 곳도 간조 시에 물이 빠지면 뺄이 되어 선박의 정박이 더욱 어렵다.

물론 항구 간에 거리가 있더라도 매번 수심이 깊고 정박 시설이 잘 갖추어진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면 침저선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대와는 달리 과거에는 자연에 의지하여 항해를 하였기 때문에, 꼭 항구와 항구까지 운항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바다 한가운데나 수심이 얕은 곳에서 정박해야 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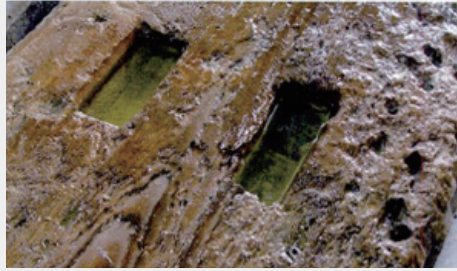
특히 서해는 배를 안정적으로 정박시킬 정도로 수심이 깊은 곳에 배를 정박해 두면, 다시 배까지 이동하는 데 작은 배가 필요하거나, 다시 물이 차거나 빠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또, 지리를 잘 모르면 얼핏 보기에 수심이 깊은 곳에 배를 정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물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 배가 드러난 모래톱 위에서 있게 된다. 이때 침저선은 배가 기울어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평저선은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해 인천 영흥도에서 발견된 영흥도선은 평저선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 안압지선이야말로 저판과 측저판 구조를 가진 선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압지선도 뺄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평저선의 형태이다. 측저판의 두께와 높이가 중앙저판과 같아 육상에 끌어 올려 두더라도 매우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영흥도선 측저판은 너무 얇고, 중앙저판과 높이가 맞지 않아 물이 빠진 뺄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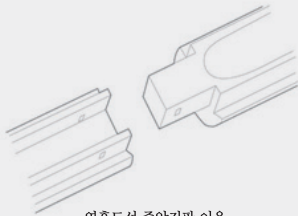
두 번째는 발견된 선체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흥순재가 이미 밝혔듯,¹³ 영흥도선 중앙저판에는 중앙저판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돛대를 세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돛대를 세웠다고 보기에는 판재의 두께가 너무 얇다. 이것은 저판의 결합 방식이 후대의 고려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판으로 쓸 길이와 두께를 모두 갖춘 목재를 찾는 것은 힘들어, 2개의 목재를 이어서 만드는 경우는 흔하다. 영흥도선의 중앙저판도 2개의 목재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결합 방식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고려선에서 흔히 보이는 것과 다르다.



〈그림 14〉 십이동파도선 중앙저판 돛대 받침 홈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십이동파도 해저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2쪽.



영흥도선 중앙저판 이음

〈그림 15〉 영흥도선 저판 이음 모식도

출처: 허문녕·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 구조 연구』, 『해양문화재』 17, 244쪽.



〈그림 16〉 십이동파도선 결합부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십이동파도 해저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2쪽.

영흥도선은 받아 주는 저판의 속과 바깥쪽을 파내어 ‘ㄴ’ 모양의 구조를

13 흥순재, 2024, 앞의 책, 125쪽. “옹골 형식의 중앙저판이라고 하기에는 돛대를 지지하던 흔적도 없어 중앙저판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만들었다. 여기에 결합부를 'ㄱ' 모양으로 가공한 저판재가 결합되어 저판 구조를 이룬다.¹⁴ 반면 십이동파도선은 목재를 다듬었지만 속을 파내지 않고 결합부만 맞물리는 형태로 가공하여 그대로 결합하였다. 외견만 보더라도 십이동파도선의 것이 훨씬 견고하다. 영흥도선의 결합구조가 고려선의 그것보다 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저판의 두께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십이동파도선의 중앙 저판 두께는 33cm이다. 반면 영흥도선의 두께는 두 판재가 결합된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만 28cm이고 다른 부분은 속이 파내어져 있어 훨씬 얇다. 가장 두꺼워야 할 중앙저판재로 보기엔 너무 얇다.



〈그림 17〉 저판 사진

출처: 허문녕·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 구조 연구」, 『해양문화재』 17, 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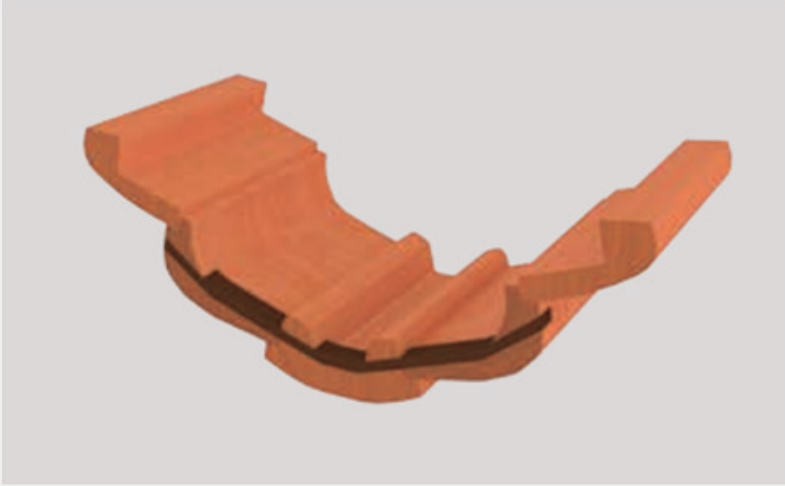
또한 첨저선 설의 근거가 되는 영흥도선 결합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중앙 판재를 측저판으로 보는 경우, 측저판-저판-측저판을 장삭으로 연결하였다고 본다.¹⁵ 그러나 홍순재가 언급했듯이 휘어진 장삭은 박아 넣기 어렵다. 또한 박아 넣었다 하더라도 아래 〈그림 18〉과 같은 구조가 된다.¹⁶

다만 훼손된 것을 실측한 특성상 곧은 장삭이 휘어진 것처럼 표현되었다는 홍순재의 의견과 달리 〈그림 19〉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휘어

14 허문녕·윤용희, 2022, 앞의 글, 2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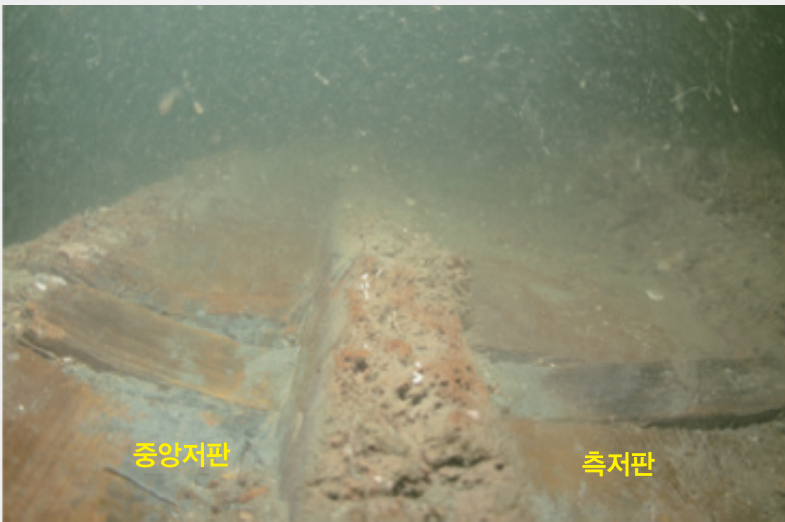
15 허문녕·윤용희, 2022, 위의 글, 246쪽.

16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2014, 「인천 웅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90쪽.



〈그림 18〉 복원 예상 단면도

출처: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2014, 『인천 용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90쪽.



〈그림 19〉 장석 결합 모습

출처: 허문녕·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 구조 연구」, 『해양문화재』 17, 246쪽.

진 장삭을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그의 말처럼 휘어진 장삭을 박아 넣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영흥도선의 장삭은 박아 넣었다기보다는 휘어진 것을 파낸 홈에 끼워 넣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박아 넣은 것에 비하면 결합하는 힘은 더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은 휘어지고 노출된 장삭이 좌우로 연결되어 선박 전체 하부구조의 하중을 지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영흥도선이 위 단면도처럼 중앙저판재와 좌우 저판재 높이가 다르면, 좌우로 벌어지려는 힘을 장삭이 지탱해야 한다.

특히 영흥도선에는 약 6m 길이의 외판 1과 저판 사이에 폭 9cm, 깊이 5cm의 장삭 2개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평저선이라 압력을 저판 세 판이 나눠서 받는 십이동파도선은 장삭의 크기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33cm인 저판 두께의 반에 가까운 크기의 장삭 구멍이 뚫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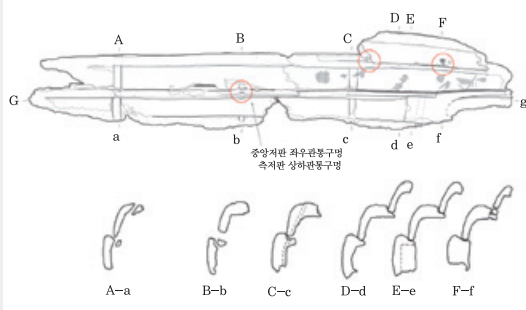


〈그림 20〉 십이동파도선 결합부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십이동파도 해저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2쪽.

따라서 영흥도선은 장삭 이외의 방법으로(또는 장삭에 더해) 저판을 연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저판재에 그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

한국 고대 선박의 구조 변화를 통해 본 '준구조선'의 개념 정의



〈그림 22〉 영흥도선 선체 전체 단면도

출처: 허문녕·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 구조 연구」, 『해양문화재』 17, 254쪽.



〈그림 23〉 영흥도선 좌우관통구멍 부분(b-b) 부분 단면도 확대

〈그림 22〉 도면상 축저판은 축저판이 아닌 만곡종통재 1단이며 자연스럽게 영흥도선은 3열 또는 그 이상의 저판과 2단의 만곡종통재를 쓴 전형적인 평저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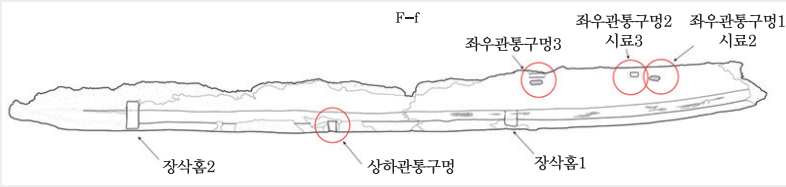
횡강력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만곡종통재 1단에 폭 7cm, 깊이 3cm 좌우관통구멍 3개가 뚫려 있는데, 좌우관통구멍 1과 3은 2단 만곡종통재에 뚫린 상하관통구멍과 결합되는 위치에 있다. 반면 좌우관통구멍 2는 위치도 나머지 구멍과 다르며 2단 만곡종통재가 설치되면 막히는 위치에 뚫려 있다. 이것은 좌우관통구멍 2가 만곡종통재 2단과 상하로 결합하기 위해 낸 구멍이 아닌, 횡강력을 보강하는 가룡¹⁷이 박혀 있던 구멍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흥도선은 횡강력을 보강하기 위해 가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 25〉와 같이 8×7cm인 십이동파도선의 가룡목과 그에 결합되는 만곡종통재 1단-2의 가룡목 결합 구멍에 비해 구멍

17 배의 좌우 삼판에 가로질러 댄 긴 나무. 배의 모양을 갖추는 역할과 명에와 함께 좌우 삼판이 안쪽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버티는 역할을 한다(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2020, 『우리배용어사전』, 18쪽).



마도 1호선 중앙횡단면도



〈그림 24〉 만곡종통재 1단의 관통구멍 도면

출처: 허문녕·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 구조 연구」, 『해양문화재』 17, 249쪽.

의 크기가 너무 작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부가 넓고 편평하여 좌우로 벌어지는 힘이 약한 평저선인 십이동파도선의 가룻목보다 더 얇은 가룻을 사용한 영흥도선의 횡강력 구조로는 침저형의 선체를 지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영흥도선의 선체가 평저형이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반증으로 보인다.



〈그림 25〉 십이동파도선 외판 1단-2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십이동파도 해저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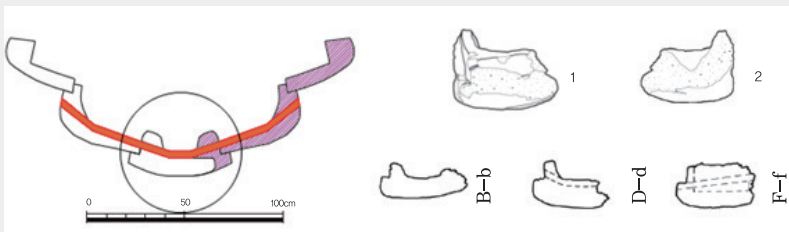
〈그림 26〉 십이동파도선 가룻목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십이동파도 해저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4쪽.

또한 <그림 27>의 영흥도선 복원 모식도의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저판재가 도면에서는 실제보다 더 크고 둥글게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모식도 상 저판재는 일부가 유실되었고, 'ㄴ' 자 형태의 튀어나온 부분도 크게, 그리고 아래쪽을 타원형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복원 모식도가 특정 지점의 단면을 기준으로 그려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7>을 보면 복원 모식도는 D-d¹⁸를 기준으로 저판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점의 단면은 한쪽이 심하게 유실되어 마치 유실된 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둥근 부재처럼 보인다.

그런데 모식도와 D-d 지점의 단면을 비교하면 저판의 두께는 좀 더 두껍고, 'ㄴ' 자 형태의 튀어나온 부분은 더 얇다. 그리고 아래쪽도 복원도만큼 타원형에 가깝지 않다. 그리고 B-b나 3D스캔 도면(<그림 27>의 '1')을 보면 부재가 훼손된 양상에 따라 같은 선체 내에서도 마치 다른 단면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부재가 훼손되어 바닥에 닿는 부분에 따라 부재의 각도가 조금씩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판을 정면이나 후방에서 찍은 상태에서 같은 각도로 도면화한 <그림 27>의 '1'이나 '2'의 도면이 가장 저판을 잘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¹⁹



<그림 27> (좌)영흥도선 복원 모식도, (우)실제 저판 3D스캔 실측도 및 단면도

출처: (좌)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2014, 『인천 용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91쪽. (우)허문녕·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 구조 연구』, 『해양문화재1』 7, 245쪽.

18 B-b, D-d, F-f 등 선체 중 어느 단면을 그렸는지는 <그림 21> 참고.

19 다만 저판재가 결합된 부분과 속을 파낸 부분 등 두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점의 단면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 ‘1’, ‘2’와 좌측 복원도와는 ‘ㄴ’ 자 형태로 튀어나온 부분의 각도나 전체적인 모양이 상당히 다르다. ‘1’이나 ‘2’를 기준으로 보면 위 복원 모식도의 저판 형태와는 달리 문자 그대로 ‘ㄴ’ 자 모양에 가깝다.

따라서 복원 모식도가 실제 저판을 잘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복원 모식도와 달리 좀 더 각지고 직선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마치 저판이 둥근 모양의 용골처럼 표현된 위 복원도와 달리 실제 저판은 평저형 저판체에 가까운 모습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영흥도에서 발견된 선박은 좌우측 저판 중 1단과 만곡중통재 2단으로 보이며, 평저선이다. 당시는 두꺼운 목재를 자유롭게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여 고려선과 달리 받아 주는 저판의 속을 파내어 결합하고, 저판에 별도의 턱을 만들어 장삭을 끼워 넣고, 고려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장삭과 얇은 가룽을 사용하고 초목류도 사용하여 외판을 연결한 선박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저선과 장삭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고려선과 기술적 연계성은 확연히 드러난다.²⁰ 안압지선과는 쇠뿔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영흥도선에서 만곡중통재 2단 외의 외판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십이동파도선과 안압지선의 구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만곡중통재 다음에 외판을 붙였을 것이며, 각도는 가파르게 삽입했을 것이다.

2. 간접 자료 검토

1) 주형토기 출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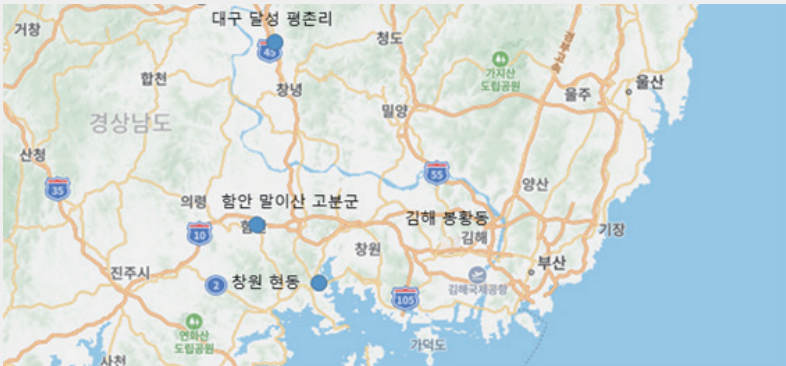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앞에 언급한 것 이상의 실물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배 모양으로 만든 주형토기가 여러 점 발견되어 있다. 대부분은 고려시대

20 허문영, 윤용희는 영흥도선과 십이동파도선을 비교하여 신라의 배는 장삭이 노출되고 초본류를 통해 윗단과 아랫단을 고정하고, 고려는 장삭을 노출하지 않고 나무뿔을 사용하는 변화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허문영·윤용희, 2022, 앞의 글).

이전의 것이다. 다만 주형토기 대부분은 출토지 미상이라 제외하였다. 독목주의 형태에 가까운 것도 제외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크게 가야와 신라에 해당하는 주형토기로 나눌 수 있다.

2) 가야 주형토기

먼저, 가야 주형토기는 이체구조선인 봉황동 배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이체구조선은 일본이 주로 사용한 배로, 일본의 고분에서 이체구조선 모양의 주형토기가 흔하게 발견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대구 달성 평촌리 12호 수혈과 창원 현동 387호분, 함안 말이산 45호분의 주형토기이다. 이들은 대부분 4~5세기 가야 권역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말이산 고분군과 현동은 4~5세기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각각 고분과 무역항이 있던 지역이다. 그 외에도 아쉽게도 출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야의 것으로 보이는 이체구조선 형태의 주형토기가 호암미술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28〉 가야 주형토기 출토 위치(파란색 동그라미)

다음 사진들과 같이 창원과 함안 주형토기는 일본 주형토기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이들 주형토기는 이체구조라 불리는, 마치 보트 위에 배를 올린 듯한 독특한 2단 구조 또는 선수와 선미 쪽 판재가 급격하게 치솟는 구



〈그림 29〉 함안 말미산 45호분

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그림 30〉 창원 현동 387호 출토 주형토기

출처: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그림 31〉 대구 주형토기

출처: 중앙박물관 e뮤지엄.



〈그림 32〉 일본 나가하라타카마와 2호분 출토 주형토기

출처: 이광희·김동윤, 2015, 「김해 봉황동 유적 출토 선박부재의 수종분석 및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 31~4, 349쪽.



〈그림 33〉 일본 사이토바루 169호분 출토 주형토기 및 봉황동 배

출처: 이광희·김동윤, 2015, 「김해 봉황동 유적 출토 선박부재의 수종분석 및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 31~4, 349쪽.

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중으로 저판을 만든 것은 항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이거나 인족의 저판을 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특히 김해 봉황동 선체 편도 이체구조선 특유의 급격하게 치솟는 형태의 우측 선측재로 추정된다. 가야 일대에서 보이는 주형토기와 일본 이체구조선과 형태적 유사성, 실제 일본 녹나무로 만들어진 이체구조선이 가야 권역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가야와 일본은 밀접하게 교류하며 거의 같은 조선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것은 가야가 낙랑과 왜에 철을 활발히 수출했다는 기록과도 궤를 같이한다. 활발하게 무역하는 도중 조선 기술도 같이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3) 신라의 주형토기와 관련 기록

신라의 주형토기는 금령총에서 발견된 두 점이 특히 유명하다. 주목할 점은 금령총에서 발견된 주형토기 두 점과 가야의 권역에서 발견된 주형토기들의 형태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큰 틀에서 고려선과 이어지는 형태의 평저선으로 보이는 신라의 주형토기와 달리 가야의 주형토기는 고려선과는 다르다. 이것은 출토지 미상의 주형토기에서도 확인된다. 이체구조, 'U' 자형 선수-선미구조/단일구조, 완만한 선수-선미구조로, 형태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림 34〉 금령총 출토 주형토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복잡한
외판구조
- 가룡
- 평저형
저판 구조

〈그림 35〉 금령총 주형토기(좌) 구조적 특징



- 가룡
없음
- 단순한
외판구조
- U자형 단면

〈그림 36〉 금령총 주형토기(우) 구조적 특징

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금령총 주형토기 중 좌측의 주형토기는 일견 이체구조선 특유의 높이 치솟는 선수와 선미 구조로 보이나 수직에 가까운 이체구조선 선수·선저 구조의 각도와는 다르다. 또한 가룡으로 보이는 횡강력 구조가 2개, 여러 단으로 나뉜 외판 구조가 묘사되어 있다. 또 단면형이 선미 쪽에서 보면 역삼각형의 침저형으로 보이나 실제 안쪽을 보면 평행하게 저판을 만든 평저선의 저판 구조가 보인다. 또한 용골이 없고 앞쪽이 평저선 특유의 형태와 같이 뭉뚱하게 표현되어 있다.²¹ 외판의 높이나 가룡의 유무, 선수나 선미의 구조 등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대형의 복잡한 구조의 선박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²²

우측의 주형토기는 안압지선과 유사하게 평면형이 'U'형에 선미 쪽에 저판과 외판에 별도의 선미판을 결합한 형태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흡사 용골로 보이는 부분이 앞쪽에 표현되어 있다. 다만 실제 용골과는 달리 선수 부분에만 표현되어 있고 안압지선도 선수에 별도로 선수판을 삽입

21 침저선이라면 파도를 가르기 위해 용골을 설치하고 선수의 폭이 좁은 것이 일반적이다.

22 특히 영흥도선도 가룡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선수 부분에만 마치 용골과 같은 형태의 판재가 삽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판구조가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고, 가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로 보인다. 안압지선과 같은 측저판-저판-측저판 구조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선박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²³

다만 2점의 주형토기 모두 한 명이 선박의 중앙에 앉아 노를 젓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대형 선박을 모방해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²⁴

이렇게 일본의 이체구조선과 형태가 유사한 가야의 것과 달리 신라의 주형토기는 평저 또는 완만한 U 자형 구조로 보인다. 이것은 아래 일본 사료에서 신라의 조선 기술이나 신라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 10권 오진천황(應神天皇) 관련 기록에 “31년 가을 8월 여러 신하들에게 소(詔)를 내려, ‘관선(官船) 가운데 고야(枯野)라고 하는 것은 이두국(伊豆國)에서 바친 배이다. 그런데 이 배는 썩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용(官用)으로 쓰인 공(功)을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여야 그 배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후세에 전해지도록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은 소(詔)를 받고 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 배의 재목(材木)을 뿔감으로 하여 소금을 곱게 하였다. 그래서 500광주리(籠)의 소금을 얻어 여러 나라에 두루 나누어 주고는 배를 만들게 하였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는 한꺼번에 500척의 배를 만들어 바쳤다. 그것을 모두 무고(武庫)의 수문(水門)에 모아 놓았다. 이때 신라(新羅)의 조공 사신이 모두 무고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신라 사신의 숙소에서 갑자기 불이 나 모아 놓은 배에까지 번져 많은 배가 타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인(新羅人)을 책망하였다. 신

23 따라서 좌측을 중형 신라 주형토기, 우측을 소형 신라 주형토기로 부를 수도 있다.

24 김창석은 두 토기를 기본적으로 독목주로 보고 있다(김창석, 2021, 「한국 고대의 輸役과 漕運 -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라왕(新羅王)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여 즉시 뛰어난 장인(匠人)을 바쳤다. 이들이 이나베(猪名部) 등의 시조(始祖)이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 편향적으로 서술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본서기』의 기록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신라가 일본에 조선 기술 전수를 위해 장인을 파견해 주었다는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이나베(猪名部)는 『일본서기』 유라쿠(雄略)천황기에 이나베 마네(猪名部 眞根)의 건축술을 칭찬하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아마토 조정의 신라 건축가들이 세습하던 가문이다. 따라서 건축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후 840년을 다룬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9권 닌묘(仁明)천황기에 “9월 계유(癸酉) 초하루 정해(丁亥) 다사이후(大宰府)에서 ‘대마도의 관리가 말하기를 ‘먼 바다의 일은 바람과 파도가 위험하고 연중 바치는 조물(調物)과 네 번 올리는 공문(公文)은 자주 표류하거나 바다에 빠진다고 합니다. 전해 듣건대 신라 배는 능히 파도를 헤치고 갈 수 있다고 하니, 바라건대 신라 배 6척 중에서 1척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를 허락하였다”와 같이 일본의 배와 신라의 배를 완전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838년부터 자세한 기록을 남긴 엔닌(円仁)의 기록도 동일하게 신라 배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은 일본과 신라는 명백히 다른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 가야와 일본이 유사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독목주 이후 한반도 조선 기술의 흐름은 크게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1. 가야/일본의 이체구조와 ‘U’ 자형 선수-선미 구조의 선박
2.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평저 구조의 선박

다만 신라도 평저선 이외의 다른 형태의 선박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최근에 확인된 월성 해자 출토 주형 목기도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지만 저판의 구조가 이중 저판 특유의 형태로 보인다. 앞뒤로 저판이 길게 돌출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작고 좁게 돌출된 부분은 일견 금령총 주형토기 중 소형 신라 주형토기의 선수 부분과 유사하다. 반면 길고 가늘게 돌출된 부분은 이체구조선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체구조선 특유의 2개의 선체가 분



〈그림 37〉 월성 해저 출토 주형 목기

출처: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리된 듯한 구조나 U 자형으로 치솟은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목기가 실제로 배를 묘사한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는지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 위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420년경 신라의 기술 전파로 유사점이 생겼을 신라와 일본의 선박이 840년경 기록에는 명확히 구분되어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신라와 일본 간의 외교적 상황의 변화 및 신라가 선부를 설치하면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 신라는 처음에는 병부의 대감과 제검이 선박 관련 사무를 관장했고, 이후 583년에 진평왕이 선부서(船府署)를 설치하고 이어 678년에 문무왕이 선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선부를 설치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선박이나 관련 제도가 통일되지 않고 어지러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선부를 설치해 중앙에서 직접 통제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점부터 현재 발굴되는 고려시대 이후 선박과 유사한 형태의 평저선을 주로 건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9세기대 기록에서는 신라와 일본의 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것은 사료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추정에 불과하다.

평저선과는 다른 형태로 보이는 선박이 사용된 흔적은 또 있다. 11세기 경 일본 헤이안(平安)시대 구교(公卿) 후지와라노 사네스케(藤原実資, 957~1046)의 일기인 『소우기(小右記)』의 기록을 보면 도이의 입구(刀伊の入寇) 당시 일본을 습격하여 주민을 납치한 해적이 한반도에서 해적질을 하다 고려수군에게 격퇴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고려수군에 의해 구출된 일본인이 ‘廣大不似■■■■造二重’와 같이 고려의 배를 크고 이중으로 만들어진 선박으로 묘사하였다.²⁵ 이는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이르는 사회적 혼란기에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구조의 선박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신라~통일신라 시대에도 지역에 따라 이중구조의 선박이 여전히 사용되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통일신라 말 사회적 혼란기에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여러 구조의 선박이 동시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우기』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다만 구출해져서 승선한 배 안은 광대하여 예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등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라는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중구조의 선박은 가야와 일본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가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아마 고려 왕조의 설립자인 왕건이 서해를 기반한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새롭게 중국 갑선(甲船)의 조선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런 가정은 13세기 이후 원의 일본 침공 때 고려가 중국 남방의 조선편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의 방식을 사용해 배를 만들었다는 기록과 대치된다. 따라서 중국과 해상 교역 통로인 서해에 기반한 세력인 왕건이 중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받아들여 갑선을 건조하여 사용하다가, 점차 비용과 건조 시일이 적게 소요되는 현재 발굴되는 평저형 고려선을 주로 건조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다만 평저선과 다른 선형을 가진 선박이 사용되었다는 가정은 수중 발굴

25 다만 이 이중구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된 실물 선체에서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평저선 조선 기술 전통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봉래선과 같이 격벽을 사용한 고려선이 보이는 등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선박만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조의 선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 중국과의 무역 거점이었던 예성강 일대의 해상 무역 세력이었던 왕건의 특성상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익숙해진 갑선을 일부 병용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즉, 평저선이라는 주된 조선 기술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잠시간 출현했다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III. 한국 고대 선박의 구조 변화와 준구조선의 개념 정의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선박의 구조 변화를 큰 틀에서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쉬운 것은 가야와 신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선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야 선박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준구조선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가야를 포함하기는 어렵다. 또 백제는 주형토기조차 보고된 바 없어 형태를 알 길이 없다.²⁶ 따라서 아래 내용은 우리나라 전체의 준구조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라에서 고려까지 이어지는 한정된 범위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고대 한국 선박 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26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박순발(박순발, 2016, 「백제의 해상 교통과 기항기-대 중국항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6, 5~25쪽), 주유홍(주유홍, 2008, 「해상교류로 본 중국과 백제의 관계」, 『백제문화』 38, 46~76쪽) 등이 백제의 방선에 대해 언급하였고, 임동민이 앞의 글에서 일본 오사카 시토미야키타 유적에 우물 틀로 재활용된 백제 준구조선 부재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발견된 부재가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게 심하게 훼손된 1개의 편으로 아직까지는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 생각하였으며, 추후 중국과 일본의 자료 조사를 통해 백제와 가야의 배 구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2〉 고려시대까지 선박의 구조 변화

번호	명칭	상세 설명
1	촉저판형 평저선	독목주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저판, 좌우 저판이 외판을 겸하는 일명 '촉저판'을 사용하고 노출된 장삭과 쇠뿔을 사용
2	초기 만곡중통재 평저선	촉저판이 만곡중통재와 중앙저판, 좌우 저판으로 분화하고, 한 부재의 속을 파내 다른 부재와 결합하고 외판을 여러 단 사용하고 일부 부재의 결합에 초분류를 사용
3	후기 만곡중통재 평저선	만곡중통재가 1~2단 사용되고 장삭과 나무 뼈기를 적극적으로 사용
4	고려식 평저선	만곡중통재 사용이 사라진 전형적인 고려식 평저선

신라와 고려의 조선 기술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목재 가공 기술과 도구의 발전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크게 이질적이지 않다. 평저선과 만곡중통재 등 자연스러운 기술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여, 신라와 고려의 선박은 평저선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신라를 기준으로 선박의 변천사를 〈표 3〉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가야와 백제의 배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의 배가 혼용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로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표 3〉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한국 선박의 변천사

번호	시대	세부 내용
1	삼국시대	지역별, 국가별로 여러 가지 구조의 배가 혼용되던 시기
2	신라~통일신라	선부 설치 후 평저선이 주로 사용되던 시기
3	통일신라 말	통일신라 말기에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의 배가 혼용되던 시기
4	고려시대(~13C 초)	고려 무신정권기에 이르기까지 만곡중통재가 설치된 평저선이 사용되는 시기
5	고려시대(13C 초~)	13C 중순 이후 고려시대 만곡중통재가 사라진 평저선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

1번에서 2번으로의 변화는 신라의 내부적 변화일 뿐 신라를 제외하면 여전히 국가별,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선박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번

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금령총 주형토기와 안압지선에서 보이는 구조를 가진 평저형 준구조선과 영흥도선과 같은 구조선이 같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안압지선과 영흥도선은 기술적으로 서로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작은 배가 필요할 때는 안압지선과 같이 단순한 구조의 배를, 큰 배가 필요할 때는 영흥도선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선박을 건조하였을 것이다.

3번은 앞서 언급한 『소우기』의 이중구조의 고려선과 같이 문헌에서만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실물 자료가 부족한 현 단계에서는 생략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4번과 5번은 이미 십여 척이 넘는 고려선의 발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이다. 만곡중통제는 12세기 후반~13세기 초²⁷ 선박인 대부도 2호선까지 보이며, 13세기 초 이전 선박인²⁸ 마도 2호선은 가공을 최소화한 원목 형태의 저판 구조를 채용하였다. 따라서 13세기에 접어들면서 만곡중통제와 구분되는 저판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달리도선과 안좌도선 등 마도 2호선보다 늦은 연대로 추정되는 고려선을 보면 가공을 통해 저판과 연결되는 1단 외판이 완전히 판재의 형태로 변하는 본격적인 고려선의 저판 구조로 변화한다.²⁹

특히 신라와 고려 선박이 만곡중통제라는 공통적인 기술을 사용한 것과 저판의 결합방식이 고려시대로 가면서 더욱 진보되는 점을 통해 구조선과 준구조선을 나누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좌우 저판이 외판의 역할을 겸하는지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안압지선까지를 준구조선으로, 영흥도선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선박은 구조선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만곡중통제의 유무이다. 이 기준을 통해 나눈다면 일부 고려의 선박까지 준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결합 방식의 진보를 통해 나누는

27 청자의 음각연판문, 감씨와 선체의 탄소연대측정 결과(AD 1151~1224)에 의거 추정(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16, 『안산 대부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196~225쪽).

28 출토 유물 중 목간의 문구를 근거로 마도 2호선은 1213년 이전 출항한 것으로 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11, 『태안 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438~447쪽.

29 홍순재, 2024, 앞의 책, 304쪽.

것이다. 쇠못과 강도가 약한 결합방식을 사용한 신라와 달리 고려는 나무 못(피삭과 장삭)과 원목의 두께를 최대한 살리는 결합 방식을 택했다.³⁰

필자는 첫 번째 기준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즉, 측저판을 사용한 선박을 준구조선으로, 이후 만곡중통재를 채용한 선박부터 구조선으로 보는 것이다. 측저판을 채용해 좌우저판이 외판을 겸하는 형태의 선박은 독목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선체를 자유롭게 확장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이후 만곡중통재를 채용한 선박부터는 독목주리는 형태적 한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선박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 만곡중통재 대신 편평한 외판을 채용하여 독목주의 형태에서 완전히 결별하여 전형적인 구조의 고려선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측저판의 채용 여부가 준구조선과 구조선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만곡중통재를 채용한 선박까지 준구조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신라시대 만곡중통재를 채용한 선박과 고려시대 만곡중통재를 채용한 선박 사이의 기술적 격차가 고려시대 만곡중통재를 채용한 선박과 외판을 사용한 선박과의 격차보다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채택한다면 만곡중통재를 제외한 별도의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첫 번째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굴된 선박을 구분한다면 독목주 이후, 안압지선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선박까지를 준구조선으로, 영흥도선부터는 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즉, 측저판을 사용한 선박을 준구조선으로 보고, 저판

30 재료의 특성상 쇠못이 더 우수한 기술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환경과 당시의 제한 기술로는 나무못이 더 유리하였다. 이는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6일의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신이 왜선(倭船)을 관찰하니 판자가 매우 얇고 쇠못을 많이 쓴 데다가 몸체는 좁고 배 속은 깊으며 양끝은 뾰족하므로, 왕래하는 데에는 경쾌(輕快)하고 편(便)하지만, 동요(動搖)하면 못구멍(釘穴)이 차츰차츰 넓어져 물이 새게 되어 쉽게 부패(腐敗)합니다. 우리나라의 병선(兵船)은 몸체가 비록 무겁고 크나 나무못(木釘)은 적으면 더욱 단단하게 되므로, 견고하고 튼튼하여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또 병법(兵法)에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병선은 왜선(倭船)에 비하여 3분의 1이나 높으므로 싸움에 유리합니다. 지난번 신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일본(日本)에 갔을 때 갑자기 적선(賊船)을 만났는데, 즉시 싸움 준비를 하여 쫓아 달고서 간지 불과 수리(數里)도 못되어 적선이 모두 따라 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병선이 빠르게 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 또한 이런 사실은 쇠못을 일부 사용한 신라와 달리 발굴된 고려와 조선의 배가 나무못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되었다.

과 만곡중통재를 사용한 선박부터는 구조선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은 수중 발굴을 통해 주로 선박의 저판과 외판의 일부 등 하부구조만이 발견되기 때문에 상부구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외판과 상장 구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만곡중통재 채용 선박이 보편화된 시점에도 작은 선박을 건조할 때는 여전히 측저판을 채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준구조선의 연구가 초기 단계인 현재 시점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준구조선 단계의 선박에 대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두 가지의 문은 우리나라에도 첨저선이 있었는지와 원양 항해가 가능한 기술적 최저점이 무엇인냐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 백제 또는 장보고 시대에 첨저선과 격벽이 도입되었고, 그것을 원양 항해의 시작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다.³¹ 이런 내용은 주로 일본의 『입당행기(入唐行記)』나 『속일본후기』 등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 또 금령총 주형토기나 영흥도선을 첨저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위 여러 연구는 선구자적 연구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이후 많은 발굴을 통해 확보된 실물 자료나 복원 선박 향해 같은 최근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첨저선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시점에서 고대 한국에 첨저선이 존재했다고 논할 만한 실물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가야나 백제의 배는 명확한 실물 자료가 없고, 일부 주형토기에서 평저선과는 다른 형태가 보여 그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실물 선체가 확인되는 신라와 고려의 실물 자료에서는 첨저선의 존재를 보여 주는 명확한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런 점에서 고려시대 이전 우리나라 준구조선의 주류를 평저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31 최근식, 2002, 「장보고 무역선과 항해기술 연구: 新羅船 運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그 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주도로 이원식, 김용한이 복원한 장보고 선박, 청해진선박연구소 마광남이 복원한 선박이 첨저형인 것 등을 들 수 있다.

『입당행기』나 『속일본후기』 등의 기록에 대해서도, 선박이 파도에 좌우로 흔들린다거나, 뱃에 가라앉는다거나, 파도를 잘 가르다는 언급을 통해 신라선을 침저선으로 추정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평저선도 공유하는 점이다. 실제로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서 복원한 조운선 등 평저선으로 항해할 때도 좌우 횡파에 크게 흔들렸으며, 평저선인 고려선이 중국 평라이(蓬萊)에서 발견되는 등 평저선으로도 원양 항해를 한 실물 증거가 있다.

다만 가야에서 침저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봉황동 배가 일본에서 목재를 수입해 만든 가야의 배이거나 실제 운영한 주체가 가야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 또 가야에서 이체구조선 형태의 주형토기가 확인되기 때문에 봉황동 배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배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봉황동 배는 중국과 일본에서 자생하는 녹나무와 일본 고유 수종인 삼나무로 만들어졌고, 형태가 거의 같은 주형토기가 일본 고분에서 많이 발견되는 등 일본의 배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간접 자료인 주형토기만이 가야에서 침저선을 사용했다고 믿을 만한 유일한 자료인 상황으로, 다른 실물 선체가 더 발견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격벽은 봉래에서 발견된 고려선 중 한 척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시대적 차이가 크다. 일부 주형토기에 격벽으로 볼 수도 있는 구조가 보이나, 백제의 것은 아니다. 다만 가야는 신라/고려와는 이질적인 조선 기술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침저선과 격벽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용골이나 좁은 선수, 침저선을 규정하는 데 꼭 필수적이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보이는 3개 이상의 돛 등 침저선 특유의 구조가 없는데도 단면 형태만 역삼각형에 가까우면 침저선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원양 항해에 필요한 기술적 최저점이 있는지도 어디까지나 현대인의 관점이다. 법률적 제약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항해하는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와 상관없이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쯤은 운에 기대는 심정으로 당대에 가능한 수준의 선박과 항해 기술을 가지고 원양 항해를 시도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의 우주나 심해 탐사와 마찬가지로이다.

특히, 기술적으로 당시에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유럽의 범선을 이용한 무역도 반쯤은 도박에 가까운 행위였으나 투자 자본 대비 100배의 이득이 가능했기에 목숨을 걸고 했다는 기록이나 중국의 서경(徐兢)이 타고 왔던 송나라 배도 항해 도중 돛대가 부러지는 등 언제나, 어떤 기술로도 원양 항해는 위험을 당연히 감수하는 활동이었다. 또는 뗏목이나 배가 난파되어 선체 편에 의지해 대양을 표류해 건넌 기록이나 설화도 세계 민속지적으로 흔하다. 그래서 기술적 수준에 관계없이 목적과 필요에 따라 원양 항해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IV. 결론

현재까지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 한국 고대의 준구조선 특징을 정리하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독목주 이후, 측저판을 사용한 안압지선까지를 준구조선으로, 만곡중통제를 채용한 영흥도선 이후를 구조선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신라와 고려는 평저선이라는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연결되는 기술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반면 가야는 침저선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고려 초까지 신라를 중심으로 한선의 변화과정을 일부 제시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삼국시대에는 지역별, 국가별로 여러 가지 구조의 배를 혼용하였고, 이후 신라가 주도권을 잡은 후 통일신라시대까지는 평저선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말에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일시적으

로 여러 가지 구조의 배가 사용되다 고려에 이르면서 전형적인 평저선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만곡종통재가 점차 사라지고 부재의 연결 방식이 고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2011, 『태안 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2014, 『인천 웅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2016, 『안산 대부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십이동과도 해저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목포시, 1999, 『목포 달리도배 발굴조사 보고서』.
대한민국문화부문화재관리국, 1993, 『안압지 발굴조사 보고서』 도판편.
대한민국문화부문화재관리국, 1993, 『안압지 발굴조사 보고서』 본문편.
재단법인 동양문물연구원, 2014,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연구보고 제16집.

2. 단행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못 속에서 찾은 신라』.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2020, 『우리배용어사전』.

3. 논문

- 김건수, 2013, 「주형토기로 본 삼국시대 배의 고찰」, 『도서문화』 42.
김응호·홍순재·김병근·한규성, 2021, 「수중출수된 고선박의 구조와 목재수종의 변화」, 『해양문화재』 14.
김창석, 2021, 「한국 고대의 輸役과 漕運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남창섭, 2022, 「인천 영흥도선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발, 2016, 「백제의 해상 교통과 기항기-대 중국항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6.
스즈키 코키, 2019, 「한·일출토 주형토기·하니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삼국·고분시대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4.
이광희·김동윤, 2015, 「김해 봉황동 유적 출토 선박부재의 수중분석 및 보존

처리], 『보존과학회지』 31.

임동민, 2022,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기술을 통해 바라본 백제 한성기 항해술과 조선술」, 『해양문화재』 16.

주유홍, 2008, 「해상교류로 본 중국과 백제의 관계」, 『백제문화』 38.

최근식, 2002, 「장보고 무역선과 항해기술 연구: 新羅船 運航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문녕·윤용희, 2022, 「통일신라기 선박구조 이해-월지배와 영흥도선 선체구조 연구」, 『해양문화재』 17.

홍순재, 2024, 『한선연구: 고고학적 유산과 기록에 담긴 한국 선박사』, 민속원.

국문초록

그동안 전통 선박 연구는 대다수의 발굴된 실물 선체가 속한 고려~조선 시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 고대는 일반적으로 준구조선에서 완전한 구조선으로 변화하는 단계로 인식되어 있으나, 자료 부족으로 주로 주형토기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실물 선체 자료가 일부 발견되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런 실물 선체 자료와 주형토기, 사서의 기록을 검토하여 한국 고대의 선박의 특징,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준구조선과 구조선을 구분하는 세 가지 구조를 제시하고, 그중 저판이 외판을 겸하는 측저판 구조를 준구조선의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배의 변천사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각 지역별, 국가별로 여러 가지 구조의 배가 혼용되던 시기, 신라 선부 설치 후 평저형 신라선이 주로 사용되던 시기, 통일신라 말기에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의 배가 혼용되던 시기, 만국중통제가 설치된 평저형 고려선이 사용되는 시기, 만국중통제가 사라진 평저형 고려선이 사용되는 시기이다. 만국중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부터 신라의 조선 기술을 계승한 고려가 완전히 한 단계 발전한 독자적인 조선 기술을 채용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주제어〉

한국 고대 선박, 준구조선, 구조선, 신라, 통일신라

ABSTRACT

Defining 'Quasi-Structural Ship' Through Structural Change of Ancient Korean Vessels

Jo, Jin Wook

(Researcher,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Until now, traditional ship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 Goryeo-Joseon period, where most of the excavated real hulls belong. Ancient Korea, it is generally recognized as a stage of transformation from a quasi-structural ship to a complete structural ship, but due to lack of data, research was mainly conducted based on mold earthenware, but some real hull data have recently been discovered and actively studied.

By reviewing these physical hull data, ship-shaped earthenware, and records of historical books,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 process of ships in ancient Korea. Through this, three structures were proposed to distinguish between quasi-structured and completely structured ships, and among them, the side bottom plate structure, which also serves as an outer plate, was expressed as the standard for quasi-structured ships.

In addition, the history of ship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Goryeo Dynasty was presented in five stages. The first is when ships of various structures were used by region and country. The second was the period when flat-bottom Silla ships were mainly used after the Seonbu was installed. The third was the period when various structures of ships were mixed as control weakened at the end of Unified Silla. The fourth is the period when flat-bottom Goryeo Line with a L-shaped wooden board is used. The last time is when flat-bottom Goryeo ships are used, where the L-shaped wooden disappeared.

Keywords

Ancient Korean Vessels, Quasi-Structural Ship, A Fully structured ship, Silla, Unified Silla.

자료소개



- 정영미 | 시마네현 편입 후의 독도
소속과 경과에 대한 사료 두 편

시마네현 편입 후의 독도 소속과 경과에 대한 사료 두 편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서론
- II. 자료 해설(전체)
- III. 오치군과 「죽도 소속에 관하여」
- IV. 해군용지와 「죽도에 관하여」
- V. 결론

1. 서론

독도¹는 1905년 일본 내각 결의(1.28)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2.22)로 시마네현(島根縣) 소속 오키도사(隱岐島司: 오키도청장)의 소관지가 되었다. 1926년 오키도청(隱岐島廳)이 폐지되고 오키지청(隱岐支廳)이 설립되면서 오키지청장의 소관지로 변경(7.1)되었다가 1939년 시마네현 오치군(隱地郡) 고카촌(五箇村) 촌회(村會) 결의에 따라 고카촌 구역으로 편입(4.24)되었다. 1940년에는 공용지(共用地)에서 마이즈루 진수부(舞鶴鎮守府)의 해군용지로 변경(8.17)되었다. 현재 독도에는 ‘시마네현 오치군 오키노시마정 죽도 관유 무번지(島根縣 隱岐郡 隱岐の島町 竹島官有無番地)’라는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우편번호 ‘685-0000’)².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것은 1926년 오키지청 설립 및 1945년 해군용지 해제 시의 독도 소속과 관련된 자료 두 편 「죽도 소속에 관하여(竹島所屬について)」와 「죽도에 관하여(竹島について)」다. 전자에는 1953년 시점에서 시마네현이 파악한 오키지청으로의 독도 소속 이관 과정상의 문제점 및 처리 방향이 기술되어 있다. 후자에도 역시 1953년 시점에서 시마네현이 파악한 독도의 고카촌 편입 절차상의 문제점 및 처리 방향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동 자료를 통해 해군용지 해제 후 시마네현으로 이관된 해군 자료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촌 독도”라는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이면(裏面)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이 글에서 일본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독도를 모두 ‘죽도’로 표기했다.

2 일본 시마네현, 「Web 竹島問題研究所」,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gakusyu2.html>.

II. 자료 해설(전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1.9.8)³로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확인되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죽도(竹島)라는 섬이 이전에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섬이었다, 죽도는 한국영토다’라는 말이 돌았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죽도 소속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죽도의 역사적 경과와 어업관계 실적을 자세히 조사·보고하도록 시마네현에 지시했다. 이때 시마네현청의 총무부 홍보(広報)문서과 직원(주사) 다무라 세자부로(田村清三郎)가 중심이 되어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홍보 문서과는 나중에 시마네현 현사(縣史) 편찬실로 개편되었다.⁴

한편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죽도 영유권을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1952.4.28) 직전 공포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대한민국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1952.1.18)을 계기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양국은 왕복 각서⁵를 통해 독도/죽도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 그 안에는 근거 자료와 논리로써 자국의 주장을 체계화시킨 「정부 견해」⁶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응한 일본 측 기관 및 주 담당자가 외무성 조약국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이며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영토 조항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4 일본 내각관방, 2017, 「平成29年度 内閣官房委託調査 竹島に関する資料調査報告書」, <https://www.cas.go.jp/jp/ryodo/img/data/archives-takeshima04.pdf>.

5 이때 오고 간 문서들은 다음의 외교통상부 문서집에 수록되어 있다. 『독도문제 1952-53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5』; 『독도문제 1954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6』; 『독도문제 1955-59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7』; 『독도문제 1960-64,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8』; 『독도문제 1965-71, 분류번호 743.11JA』. 또한 다음 문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무부 정무국 편, 1955, 『독도문제개론』, 외무부(외무부/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편), 2012, 『독도 문제 개론』, 외교통상부, 전면 개정판); 신용하, 2000, 『독도연구총서 7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2001, 『독도연구총서 8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4권』, 독도연구보전협회.

6 일본 정부 견해 ①차 1953.7.13; ②차 1954.2.10; ③차 1956.9.20; ④차 1962.7.13/한국 정부 견해 1953.9.9; ②차 1954.9.25; ③차 1959.1.7.

시마네현에서는 다무라 세자부로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독도 영유권 논쟁이 일단락된 후 이들은 자신들이 조사·수집한 자료들을 정리·연구하여 가와카미는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⁷ 다무라는 『시마네현 죽도 연구』⁸를 발간했다.

소개하는 자료들은 다무라가 조사·수집한 공문서, 역사 자료 등을 일정한 표제하에 정리하여 편찬한 문서철⁹ 중 「1953 섭외관계철(죽도 관계철)」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동 문서철에는 1906년 이후의 죽도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 다수와 1953년 이후 외무성 요청에 따라 현내 각 지역 소장 자료 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한 기록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소개하는 자료들은 9월경 조사된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1926년 오키도청 폐지 후 오키지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조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하 각각의 자료의 배경, 내용을 소개하고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I. 오치군과 「죽도 소속에 관하여」

오키도는 4개의 유인도와 18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제도(諸島)다. 일본 열도 중서부에 위치한 시마네 반도(시마네현 소재)에서 40~80km 떨어진 바다(동해)에 있다. 지부리도(知夫里島)·나카도(中ノ島)·니시도(西ノ島)·오키도(隱岐ノ島)가 유인도이며 전자의 세 섬을 도젠(島前), 후자의 한 섬을 도고(島後)로 통칭하고 있다. 행정상으로는 시마네현 오키군(隱岐郡)에 해당하며 3정(町) 1촌(村)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오키도의 오키도정(隱岐島町), 나카도의 아

7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8 田村清三郎, 1954, 『島根県竹島の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復刻補訂版, 2010).

9 「M38~41 秘竹島」; 「M9 地籍」; 「M39 竹島一件」; 「M38~41 竹島貸下·海鹽漁業書類」; 「S26 涉外關係綴」; 「S28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이 있다. 전자 2건에 수록된 문서는 공간되어 있으나(島根縣總務部總務課, 2011, 『竹島關係資料集 第二集 島根縣所藏行政文書 一』) 그 외는 비공개 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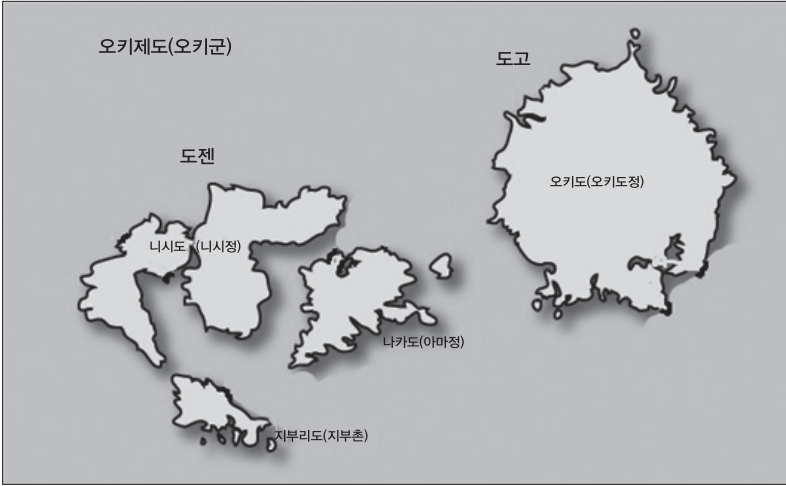
마정(海士町), 니시도의 니시정(西島町), 지부리도의 지부촌(知夫村)이다. 오키 지청은 오키노시마정에 소재하며 각 구역에 오키지청 지소(支所)가 있다. 울릉도(72km)의 약 5배 크기(345km)며 현재 약 1만 9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¹⁰(〈그림 1〉,〈그림 2〉 참조)

근대 이전에는 오키국(隱岐ノ國)이라고 불렸던 곳으로서 메이지 시대에 들어 주변 지역과의 통·폐합 및 소속 이동을 거쳐 1876년 아마군(海士郡), 지부군(知夫郡), 시키군(周吉郡), 오치군의 4군으로서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 1889년 시마네현청은 군(郡)을 폐지하고 오키도청을 설치하여 오키도사가 행정을 담당하게 했다. 1904년에는 정촌제(町村制)가 실시되어 도고에 사이고정(西郷町) 등 1정 7촌, 도젠에 4촌이 설치되었다. 1926년 오키도청이 폐



〈그림 1〉 시마네현과 오키도

10 시마네현청 홈페이지, https://www.pref.shimane.lg.jp/tourism/tourist/kankou/oki_shoukai/syoukai.html



〈그림 2〉 오키제도(오키군)

지되고 시마네현 오키지청이 설치되었다." 1969년 4군이 합병하여 현재의 3정 1촌으로 구성된 오키군이 되었다.

사료 「죽도 소속에 관하여」는 1926년 오키도청 폐지 후의 독도 소속에 대해 1953년 시마네현청이 조사한 자료 중 하나다. 시마네현청 사이토(齋藤) 및 다무라(田村) 주사가 조사·검토한 결과가 개조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S28 섬외관계철(죽도관계철)」 수록 자료(no. 012-00) 자료로서 작성 일자는 없으나 1953년 9월 21일 이후로 추정된다. 9월 15일 시마네현 총무부 홍보문서과장 후루세 가즈(古瀬隼) 명의로 오치군 고카촌장 오쿠가와 요이치(奥川陽一)에게 죽도의 고카촌 구역으로의 편입 시기, 방법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

11 <https://ja.wikipedia.org/wiki/%E9%9A%A0%E5%B2%90%E3%81%AE%E6%AD%B4%E5%8F%B2>, 여기에서 오키도청 폐지 및 오키지청 설치 일시가 1925년으로 되어 있으나 1926년의 오류로 판단된다. 1926년(다이쇼 15)에 부현제(府縣制), 시제(市制), 정촌제(町村制) 등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소개하는 사료 「죽도 편입에 관하여」도 1926년 7월 1일로 기록하고 있어 오키지청 설치년을 1926년으로 기술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bunken/history.html(일본 총무성) 정책(지방행정) 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문 공문서가 발송된다(「広号外」014-01). 9월 21일 고카촌장은 1939년 4월 24일 고카촌회 의결을 거쳐 죽도를 고카촌에 편입했음을 밝히고 당시의 결의문(「議第二号」015-01)을 첨부한 공문서를 후루세에게 송부한다(「発第1226号」015-00). 이후 현청 담당자들이 검토를 진행한 결론이 필사되어 있는 것이 「죽도 소속에 관하여」다. 덧붙여 고카촌은 도고 오키정 북서쪽에 구역에 속하는 곳이다.(〈그림 3〉 참조)

「죽도 소속에 관하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죽도가 논리적으로는 시마네현 지사, 실질적으로는 오키지청에 속해 있으므로 “정치적 고찰에 의해 언제든지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죽도가 논리적으로 시마네현 지사 소속이라는 것은 ① 오키도청 폐지에 따라 그 권한은 모두 지사에게 귀속되었다. ② 오키지청 설치 후 지사가 지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다. 반면 실질적으로 오키지청에 속한다는 것은 ① 1926년 7월 1일 자 각종 행정 명령에 의해 ‘도청’, ‘도사’는 모두 ‘지청’, ‘지청장’으로 바꾸어 읽게끔 되어 죽도도 지청장 소관, 지청 관할지처럼 되어 있다. ② 1925년부터 죽도어렵합자회사가 오키지청에 죽도 토지



〈그림 3〉 고카 구역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동 상황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었다.

IV. 해군용지와 「죽도에 관하여」

「죽도에 관하여」는 1939년 고카촌회 의결을 통한 죽도의 고카촌 편입에 대해 1953년 시마네현청이 조사한 자료 중 하나다. 시마네현청 사이트, 다 무라 주사가 당시 시마네현 소재 마쓰에 상호은행(松江相互銀)¹²에 재직 중이며 1937년 7월부터 1942년 2월까지 시마네현 지방과(地方課)의 주임속(主任屬)으로 근무한 요시노 소(吉野操)¹³를 인터뷰한 내용 및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인터뷰는 1953년 9월 30일 오전 중에 실시되었으며 문서에 ‘극비(極秘)’ 표기가 있다. 「S23 섬외관계철(죽도관계철)」 수록 자료(no.013-00) 자료다.

요시노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요시노가 시마네현 지방과 재직시 고카촌장의 요망에 따라 죽도를 고카촌에 편입시키는 사무를 담당했다. 고카촌장이 죽도가 ‘고카촌 앞바다(地先)’에 있고 고카촌민이 어업권을 가지고 출어를 하고 있는 곳이므로 고카촌 구역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망해 왔다. 요시노는 촌장 요망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니 촌회에서 논의해 보라고 자문해 주었다. 촌장은 촌회를 열어 논의를 한 후 죽도의 고카촌 편입이 의결(議第 제2호, 1939.4.24)되었음을 알리는 회신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요시노는 현 차원에서 ‘모(某) 참사회’에 자문을 구해 보았다. 이 자문을 통해 죽도의 고카촌 편입은 일단 통과되었으나 추가로 내무대신에게 편입을 신청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그러나 이 편입 신청은 유아무야하게 끝났다. 그 이유는 ① 1939년은 만주사변(1931)의 격화와 한발로 인해 처리해야 할 업

12 현재 시마네 은행(島根銀行), 시마네현(島根縣) 마쓰에시(松江市) 소재.

13 원문대로임, 操(미사오)일 수도 있음.

무가 산더미 같았다. ② 그 와중에 편입 문제는 무인도에 관한 것이라 관심 정도가 미미하여 잊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요시노는 고카촌 의결을 거친 사항을 ‘모 참사회’의 자문을 거쳐 내무대신에게의 신청 절차를 밝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죽도가 ‘1903년’ (원문대로) 내무대신 고시로 일본 영토에 편입되어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고, 관유지이기 때문에 내무성에 먼저 의향을 물어보아야 한다. 내무성이 좋다고 하면 이후 촌의 의결 사항을 상신해야 한다. ② 죽도가 고카촌 앞바다에 있다고 하나 수십 리나 떨어져 있는 섬을 앞바다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내무성에 구두로 의향을 물어본 후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요시노는 고카촌에의 죽도 편입에 대해 “자신은 최근의 신문지상에 고카촌 죽도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언제 편입 수속을 한 것일 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요시노의 발언에 대해 인터뷰 담당자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고카촌에의 죽도 편입 절차가 유아무야된 배경을 추가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죽도 소속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제2, 소견’으로서 덧붙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요시노가 죽도 편입 연도를 1903년(페이지 36)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1905년(페이지 38)으로 정정하고 있다. 또 요시노가 말한 ‘내무대신 고시’에 대해 관련 고시문 또는 내무성 예규집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극력 찾아볼 생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요시노가 ‘모 참사회’에 자문을 구했다고 한 것에 대해 참사회의록 및 참사회 결의록에 의하면 고카촌의 죽도 편입 의결이 진행된 1939년에 정식 의제로서 동 건이 다루어진 형적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는 요시노의 기억 오류라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는 상기한 현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잡담하듯이 또는 구두로써 참사회의 양해를 구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고카촌에의 죽도 편입 절차가 유아무야된 배경을 추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재정리했다. ① 1939년 4월 중의 미키 기조(三樹樹三) 지사 퇴임(4.17) 및 모리베 다카시(三浦隆) 취임(4.22). ② 고카촌장에게 촌회 자문을 거치라고 지시한 것은 전임 지사였고 촌회 의결 후 고카촌이 보내온 회신은 신임 지사 재임 중의 일이었다. ③ 신임 지사 취임 이후 사무 혼잡으로 내무성에 대한 구두 보고는 망각된 것으로 보인다. ④ 전임 지사 사무 인계서에 미완결 사무로서 기술되어 있었을 것이나 해당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배경으로 인터뷰 담당자들은 1939년 죽도의 고카촌 편입에 대해 “결점 있는 행정 행위가 되어 무효는 아니나 보정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① 고카촌회의 편입 의결만으로 정촌제(町村制) 제3조에 의거한 소속 미결정지의 정촌 구역 편입 수속을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죽도를 고카촌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② 죽도가 해군 재산으로서 시마네현에서 마이즈루 진수부로 계승(1940.8.7)되었을 때 ‘오치군 죽도’로서가 아니었다. 마이즈루 진수부 사령장관이 고카촌 아와타 조시로(八幡長四郎)에게 해군용지 사용을 허가한 명령서에도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위치는 시마네현 죽도 소재 해군용지」로 되어 있다. ③ 죽도의 현재의 소속에 대한 유일한 기록으로서 죽도가 해군용지에서 다시 시마네현으로 이관(1945.11.1)된 후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 대장 ‘죽도 방어구 비고란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촌 독도(獨島)’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료는 시마네현이 1953년 시점에서 오치군 의회 의결(議第 2호, 1939.4.24)만으로는 죽도가 오치군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이 사료의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 대장 ‘죽도 방어구 비고란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촌 독도’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독도는 죽도에 대한 필자의 한글 번역이 아니다. 사료상 ‘독도(獨島)’로 표기되어 있다. 이 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는 원사료 필사자인 다무라 세자부로의 필사 오류다. 즉, 어떤 착각

으로 인해 다무라가 ‘竹島’를 ‘獨島’로 잘못 베껴 쓴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문서에 정말로 ‘獨島’로 표기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인터뷰 담당자들의 다음과 같은 기술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인터뷰 담당자들이 ‘죽도 방어구 비고란’의 ‘獨島’ 표기를 의식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비고란의 기입이 20년(1945) 11월 이전의 해군의 기록에 의거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라고 한 것을 통해 인터뷰 담당자들이 기록 작성 주체를 확인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연이 ‘獨島’라는 표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해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을 남겼을 리가 없다. 따라서 그 출처는 기록 이관 기관인 해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에 의한 기록인지 해군에 의한 기록인지 불분명하다는 의미가 이 기술에 내포되어 있다. 즉, 이 기술은 다무라가 죽도를 독도로 잘못 베껴쓴 것이라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정말로 구 일본해군 또는 시마네현이 독도를 ‘獨島’로 표기한 기록을 남겼다면 향후 시급한 원본 조사·확인 및 사실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마쓰에 재무부의 국유지 대장에 20년(1945) 11월 1일 해군으로부터 계승받은 죽도 방어구에 관한 비고란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촌 독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비고란의 기입이 20년(1945) 11월 이전의 해군의 기록에 의거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덧붙여 필자는 이 기록의 ‘獨島’의 출처를 해군 자료로 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해군은 독도에 대한 ‘獨島’ 표기를 알고 있었다. 1904년 울릉도 망대 설치를 파견된 군함 니타카호의 행동일지¹⁴에 “량크도 암 한인은 이것을 獨島라고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근거다. 이외 ‘獨島’ 표기가 사용된 일본 해군 관련 자료는 밝혀진 바 없으나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1904년 이후 해군 내에서 ‘獨島’ 표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

14 「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9.25.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사료는 1905년 이후에도 독도가 죽도(竹島;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獨島)로 표기된 일본 문서가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료로 향후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V. 결론

금번 소개한 사료들은 1953년 일본 외무성 지시에 의해 시마네현이 현 소장 자료를 통해 죽도 소속의 역사적 경과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 것들이다. 「죽도 편입에 관하여」는 1926년 오키도청이 폐지된 후 오키지청으로의 독도 소속 이관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죽도에 관하여」는 1939년 독도의 오치군 편입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 두 이관 상황 모두 행정 적으로 불철저했음이 밝혀졌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25일 자 각서¹⁵에서 “죽도는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촌에 속한다”라고 언명했다. 또 1953년 7월 13일 자 「일본 정부 견해 ①」에서는 독도를 “죽도로 부르고 이후 본 현 소속 오키도사의 관할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¹⁶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어서 1954년의 「일본 정부 견해 ②」(1954.2.10)를 통해 1905년 일본 내각의 죽도 편입 결의문(1905.1.28)을 추가로 제시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즉, 이 조사들은 1950~1960년대에 진행된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기에 일본 정부가 일단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이후 자국 내에서의 독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앞서 보아 온 것과 같이 불철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1905년 내각

15 1952.4.25. 일 측 구술서 「1952.2.12.(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답변」(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52-53,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5).

16 1953.7.13. 일 측 구술서 「죽도에 대한 일본 정부 견해」(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52-53,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5).

결의문 및 시마네현 고시를 주요 근거로 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논쟁기 중은 물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독도 역사와 영유 논리는 1950~1960년대의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기에 완성된 것이다. 선 영유권 주장 후 사실 관계 확인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어서 관련된 많은 사실 관계들이 누락 또는 왜곡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은 본문에서 제시한 사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다음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도는 일본 어업법(법률 제34호, 1901.4.12 공포)에 의거한 어업조합 설치 대상 지역도 아니었다.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등 4명은 회사 설립 후 바로 어업조합 규칙 제7조에 의거해 「죽도 어업조합 설치 인가 신청서」¹⁷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신청서는 각하되었다.¹⁸ 이유는 독도가 “종래 무인도이며, 혹은 어업 계절에 한하여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여 5~6개월 출어하는 곳이면 주소를 지닌 사람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어업법 제18조¹⁹에 따라 어업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라는 것이었다. 동 어업법 18조는 일정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어업자가 소속 관청 허가를 받아 어업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편입 후 이래 오키도사 지도하에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설립한 죽도어렵합자회사와 이에 이은 야와타 조시로의 사적·독점적 어업지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고려되어 있지 않다. 동 주장에는 주장에 유리한 사실만 거론되어 있을 뿐이다. 즉 편입 후 독도가 관유지로서 나카이를 포함한 4인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죽도어렵합자회사에 임대된 것, 1929년 야와타 조시로가 그 어업권을 계승하고 임대료를 납부한 것(1906~1940. 5년마다 갱신), 1940년 독도가 공용지에서 마이즈

17 「竹島貸下」064-01 「竹島漁業組合設置認可申請書」, 1906.6.25.

18 「竹島貸下」064-000 「農第一六四〇號」[竹島漁業組合設置申請ノ件不許可指示通牒], 1906.10.20.

19 일본 국립공문서관, 「公文類聚」第二十五編・明治三十四年・第十七卷・産業・農事・商事・漁業・交通・通信・運輸・船車.

루 진수부의 해군용지로 변경(1940.8.17)된 것, 마이즈루 진수부가 1941년 11월부터 1945년 3월까지 다시 아와타 조시로에게 독도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것²⁰ 등이다.

따라서 향후 1905년 편입 이후의 독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관련 사실의 조사·발굴 위에서 편입 이후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에 의거하여 일본의 주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번 사료 소개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012-00 竹島所属について

- ① 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県告示四〇号によって隠岐島司の所管と定められたが大正十五年七月一日地方制度改革に伴う郡役所島庁の廃止によって竹島は何れの所管するところとなったから問題である。
- ② 島司・島庁の廃止に伴ってその所管はすべて知事に帰属したものであり, 七月一日島根県隠岐支庁が設置されたが, 支庁に直接島司・島庁の根源が移ったと解すべきでなく大正十五年七月一日又はそれ以降において明文を以って知事が支庁長に竹島に関する根源を委任していないかぎり竹島は知事の直轄とな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島司・島庁の廃止に伴ってその所管はすべて知事に帰属したものであるが七月一日付の各種の県令・訓令その他によって島司島庁とあるはすべて支庁長・支庁と読み替えるものとせられたことから明治三十八年告示四〇号の島司は支庁長と読み替えることにより竹島は支庁長の所管とせられ依然として支庁の管轄内である。
- ④ 国税外諸収入徴取元帳によれば大正十四年四月三十日調定の四円七〇銭の竹島使用料を同年五月十四日収納しているのを始めとして昭和二年四月二十六日調定四円七〇銭, 昭和三年四月二十一日以降

20 川上健三, 1966, 앞의 책, 215~227쪽.

昭和九年分まで八幡長四郎同じく昭和十年より十六年までは橋岡忠重が隠岐支庁へ納入していることから②③の何れにせよ竹島の所管は島司時代からそのまま支庁に引継がれている。

- ⑤ 官有物貸下料, 地所使用料の収納事務は支庁が処理したことは単に財政上の事務の委任に基くものであるとすれば竹島の所管は必しも支庁に移ったとはいえない。
- ⑥ 以上が島司廃止後の竹島の所管について斎藤主事と田村主事とが研究した結果であるが要は所属の決定は政治的考察によっていずれとも有権解釈を下すことができよう。

013-00 竹島について

極秘

竹島について

第一, 吉野操氏談話の概要

(現在松江相互銀行勤務, 昭和十二年七月から十七年二月まで島根県地方課に主任属として勤務)

面会日時 二十八年九月三十日午前十時三十分から十一時まで

面会者 上手主事, 田村主事

自分は当時地方課に勤務しており, 竹島の五箇村編入に関する事務にタッチした。

当時の五箇村長から五箇村地先の竹島は五箇村民が漁業権を持ち出漁しているので五箇村の区域に編入したいという強い要望があった。

知事はこのような問題は単に村長一個の要望では処理できないので村会の意見を徴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諮問することにした。

諮問の結果, 村会では編入を議決して答申して来たので県では某参事

회에諮ったところ通過したがこれを内務大臣に申請しよ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ときに日露戦争前多分明治三十六年かに内務大臣の告示(官報になければ当時の内務省例規集にあるだらう)によって日本領土に編入され隠岐島司の所管とせられ,官有地でもあるから,事前に内務省に何も立てずに,地元の請願があったからといって勝手に村会に諮ってこれを編入するというを文書で報告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穩当ではない。

予め文書によらず口頭で内務省に事情や意向を聞いてよいとなれば文書で報告しようという意見で所属未定地の町村区域編入の手續を差シ控えることとなった。

なお地元にあるという理由についても数十裡も離れたものを地先といえるかどうかも疑問であらうという意見も出たが,これも文書で内務省に伺うのもおかしいから,口頭で尋ねてから処置すべきであらうということに決った。

知事は口頭で内務省の意見を聞いてから改めて処置するということに決めたが,そういうことに決めたまま何の処置も取らずに今日に至った°

自分は最近の新聞紙上で五箇村竹島と書いてあるのを見て何時編入手續をとったものであらうかと疑っていた。

なお昭和十四年は支那事變の激化と干ばつのために来庁は手一ぱいであったため,竹島は無人島ではあるし,余り強い関心を引かず忘れてしまった形であったように思う。

第二,所見

一,五箇村へ諮問したのは三樹知事であったが三樹知事は十四年四月十七日退官となり四月二十三日後任森部陸知事が着任し事務引継ぎを行い五箇村会の答申を受けとったのは森部知事であり事務引継ぎ前後の混乱中であつたと思われる。

なお知事の事務引継書中は,未完決事務として本件について記載のあるものと思われるが,三樹知事と森部知事との間の事務引継書は書庫

に欠となっている。

二, 参事会に諮ったと吉野氏は語るが参事会議録並びに参事会決議録によれば昭和十四年度においては正式議題として竹島について取り上げられた形跡はない。

従って吉野氏の語るように議案として提出されこれが通過したというのは記憶の誤りであって実際は上記の県の見解というものを雑談的乃至は口頭で述べて参事会の諒解を求めた程度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三, 森部知事は十四年四月二十二日着任, 十五年四月退官しているため且つ上記の県の事務状況にあったため, 口頭による内務省との連絡は忘却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

四, 以上により五箇村会の編入議決のみをもってしては町村制第三条に基く所属未定地の町村区域編入の手続きがとられたものとはならず従って竹島を五箇村の所属とする根拠はないものと認めざるを得ない。

五, なお昭和十五年八月十七日, 公用を廃止して県から舞鶴鎮守府へ海軍財産として引継いだ際には五箇村竹島としてではなかったものの如くであり十六年十一月二十八日の舞鶴鎮守府司令長官が五箇村八幡長四郎に海軍用地の使用を許可した命令書においても「土地使用を許可スル位置ハ島根県竹島所在海軍用地」となっている。

管見の限りに於て松江財務部の国有地台帳に二十年十一月一日海軍より引継ぎを受けた竹島防御区について備考欄に島根県隠地郡五箇村独島とあるを唯一の公文書とするか備考欄の記入が二十年十一月以前の海軍の記録に基づくものか否か不明である。

六, 二十八年六月十九日の県告示三五二号共同漁業権の免許並びに同日広告のアシカ漁業権の許可は共に五箇村竹島としているが上述の経緯からすれば瑕疵ある行政行為となり無効ではないが補正の要があることとなる。

七, 竹島は大正十五年隠岐島司の廃止により島根県知事の直接所管するところとなり別に隠岐支庁長に委任した様子もないので現在も知事の直轄地と考えねばならない。

八, いずれにしても至急措置を研究する必要がある。

九, なお吉野氏の明治三十六年というのは明かに三十八年の誤りであるが内務省告知その他は未だ発見していないので極力探して見るつもりである。

012-00 죽도 소속에 관하여

- ① 메이지(明治) 38년(1905) 2월 22일 현 고시 40호에 의해 오키도사 소관으로 정해졌으나 다이쇼(大正) 15년(1926) 7월 1일의 지방제도 개혁에 따른 군역소(郡役所) 도청(道廳) 폐지에 의해 죽도가 어느 곳인가가 소관하는 곳이 된 것이 문제이다.
- ② 도사(島司), 도청 폐지에 따라 그 소관은 모두 지사(知事)에게 귀속된 것이며, 7월 1일 시마네현 오키지청이 설치되었는데, 지청에 직접 도사, 도청의 권한이 이양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다이쇼 15년(1926)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명문(明文)으로써 지사가 지청장에게 죽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죽도는 지사의 직할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도사, 도청 폐지에 따라 그 소관은 모두 지사에게 귀속된 것이나 7월 1일자 각종 현령(縣令), 훈령(訓令), 그 외에 의해 도사, 도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지청장(支廳長), 지청(支廳)으로 바꾸어 읽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38년(1905) 고시 40호의 도사는 지청장으로 바꾸어 읽음으로써 죽도는 지청장의 소관인 것처럼 되어 여전히 지청 관할 내에 있다. 국세 외 제 수입 징수 원장에 의하면 다이쇼 14년(1925) 4월 30일 과세(調定)된 4엔 70전의 죽도사용료를 같은 해 5월 14일 수납한 것을 시작으로 쇼와(昭和) 2년(1927) 4월 26일 과세된 4엔 70전, 쇼와 3년(1928) 4월 21일 이후 쇼와 9년(1934)분까지 아와타 조시로가, 역시 쇼와 10년(1935)부터

16년(1941)까지는 하시오카 주조(橋岡忠重)가 오키지청에 납부했기 때문에 ②와 ③ 어느쪽이든지 죽도의 소관은 도사 시대부터 그대로 지청에 인계되어 있다.

- ④ 관유물 임대료, 지소(地所)사용료의 수납 사무를 지청이 수행(處理)한 것이 단순히 재정상의 사무 위임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면 죽도의 소관이 반드시 지청에 이관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⑤ 이상이 도사 폐지 후의 죽도 소관에 관해 사이토 주사와 다무라 주사가 연구한 결과인데, 요약하자면 소속 결정은 정치적 고찰에 의해 언제든지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013-00 죽도에 관하여

[극비]

죽도에 관하여

제1, 요시노 소(吉野嶽)의 담화 개요

[현재 마쓰에 상호은행(松江相互銀) 근무, 쇼와 12년(1937) 7월부터 17년(1942) 2월까지 시마네현 지방과(地方課)의 주임속(主任屬)으로 근무]
면회 일시 쇼와 28년(1953)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면회자 우와테(上手) 주사, 다무라 주사

나는 당시 지방과에 근무하면서 죽도의 고카촌(五箇村) 편입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당시의 고카촌장으로부터 고카촌 앞바다(地先) 죽도는 고카촌민이 어업권을 가지고 출어하고 있으므로 고카촌 구역에 편입하고 싶다는 강한 요망이 있었다.

지사는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일개 촌장이 요망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없는 일이니 촌회(村會)의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문을 거치기로 했다.

자문 결과 촌회에서 편입을 의결한 후 답신해 왔으므로 현에서는 모(某) 참사회회에 자문을 거쳐 통과되었으나 이 건을 내무대신에게 신청하기로 한 것은

- ① 일러전쟁 전 아마 메이지 36년(1903)에 내무대신의 고시(관보에 없으면 당시의 내무성 예규집(例規集)에 있을 것이)에 의해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고 오키도사 소관이 되었고, 관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무성 품의도 하지 않고, 그 지역(地元)으로부터의 청원이 있었다고 해서 멋대로 촌회에 물어 이것을 편입한다는 문서를 보고하는 것과 같은 일은 온당하지 않다. 사전에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내무성에 사정이나 의향을 묻고 좋다고 하면 문서로 보고하자는 의견으로서 소속이 정해지지 않은 곳의 정촌(町村) 구역 편입의 수속을 보류하기로 했다.
- ② 또 그 지역에 있다라는 이유에 관해서도 수십 리나 떨어져 있는 것을 앞바다(地先)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것도 문서로 내무성에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니 구두로 물어본 후 조치해야 한다고 정해졌다.

지시는 구두로 내무성의 의견을 물은 후 다시 조치한다고 정했으나 그와 같이 정한 채 어떤 다른 조치도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자신은 최근의 신문지상에서 고카촌 죽도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언제 편입 수속을 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쇼와 14년(1939)은 중일전쟁(支那事變)의 격화와 한발 때문에 현청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죽도는 무인도이기도 해서 그다지 강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잊히고 말았던 것 같다.

제2, 소견

- ① 고카촌에 자문한 것은 미키 지사였는데 미키 지사는 쇼와 14년(1939) 4월 17일 퇴임하게 되었고 4월 23일 후임 모리베 다카시 지사가 부임하여 사무 인계를 하여 고카촌회의 답신을 접수한 것은 모리베 지사인데 사무 인계 직후의 혼잡한 가운데서였다고 생각한다.
또, 지사 사무 인계서 중에는 미완결 사무로서 본 건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미키 지사와 모리베 지사 간의 사무 인계서는 서고에 없다.
- ② 참사회에 자문을 요청했다고 요시노(吉野) 씨는 말하나, 참사회의록 및 참사회 결의록에 의하면 쇼와 14년(1939)도에 정식 의제로서 죽도 건이 다루어진 형적은 없다. 따라서 요시노 씨가 말하듯 의안으로서 제출되어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의 오류로서 실제로는 상기한 현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잡담하듯이 또는 구두로써 참사회의 양해를 구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 ③ 모리베 지사는 쇼와 14년(1939) 4월 22일 부임하여, 쇼와 15년(1940) 4월 퇴직했기 때문에, 또 현의 사무 상황이 상기와 같았기 때문에, 구두에 의한 내무성과의 연락은 망각되었다고 생각된다.
- ④ 이상과 같이 고카촌회의 편입의결만 가지고는 정촌제(町村制) 제3조에 의거한 소속 미결정지의 정촌구역 편입 수속을 밟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죽도를 고카촌 소속으로 하는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⑤ 또 쇼와 15년(1940) 8월 17일, 공용(共用)을 폐지하고 현으로부터 마이즈루 진수부가 해군 재산으로서 계승했을 때는 고카촌의 죽도로서가 아니었던 것 같으며, 쇼와 16년(1941) 11월 28일의 마이즈루 진수부 사령장관이 고카촌 아와타 조시로에게 해군용지 사용을 허가한 명령서에서도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위치는 시마네현 죽도 소재 해군용지」로 되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마쓰에 재무부의 국유지 대장에 쇼와 20년(1945) 11월

1일 해군으로부터 계승받은 죽도 방어구에 관한 비고란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촌 독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비고란의 기입이 쇼와 20년(1945) 11월 이전의 해군의 기록에 의거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 ⑥ 쇼와 28년(1953) 6월 19일의 현 고시 352호 공동 어업권의 면허 및 동일자로 공고한 강치어업권의 허가는 모두 고카촌 죽도라고 되어 있으나 상기한 경위를 통해 보면 결점 있는 행정 행위가 되어 무효는 아니나 보정 필요성이 있는 것이 된다.
- ⑦ 죽도는 다이쇼 15년(1926) 오키도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마네현 지사가 직접 소관하게 되었고 별도로 오키지청장에게 위임한 흔적이 없으므로 현재도 지사의 직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⑧ 어느 쪽이라 해도 빨리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⑨ 또 요시노 씨가 메이지 36년(1903)이라고 한 것은 메이지 38년(1905)의 오류인데 내무성 고시 그 외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극력 찾아볼 생각이다.

서평



- **이석용** |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도시환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 **박선주** | 『독도의 보물, 아름다운 꽃과 자연생태,』 (송휘영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도시환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이석용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 I. 독도 영유권 관련 연구결과를 총정리한 영문저서
- II. 일본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한
일본국제법학회
- III.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권원 왜곡
- IV.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V. 국제법 범리로서 폭력과 탐욕의 일제식민주의 배척

1. 독도 영유권 관련 연구결과를 총정리한 영문저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오랫동안 독도연구에 매진해 오면서 현재는 독도실장과 독도체험관장을 함께 맡고 있는 도시환 박사가 2024년 말 『Korea's Sovereignty over Dokto』, 즉 『한국의 독도주권』이란 영문판 저서를 출간하였다. 도시환 박사는 개인적으로 독도 영유권 연구에 천착해 오면서 다른 독도 연구자들과 다년간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그 연구결과를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2018),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2018),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I·II·III』(2019~202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2022),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2023) 등의 저서를 통해 발표해 왔다. 이 책은 저자의 그간의 독도 영유권 관련 연구결과를 총정리하는 영문판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독도가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침략에서 첫 번째 희생양이었으며 1945년 광복과 함께 이루어진 완전한 영토주권 회복의 상징이지만, 일본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평화선 선언 이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부당한 주장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무주지 선점을 하였다며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지 정확히 100년 뒤인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이래,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외교청서, 국방백서 등을 통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주장을 이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쟁계를 거치면서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였고, 태정관지령(1877)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며, 시마네현 고시(1905)를 통해 독도를 선점하여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던 시도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결정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연구에는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학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국제법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도시환 박사의 한국의 독도주권에 관한 영문저서의 출간

은 독도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법적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저자는 한일 양국 간 독도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곡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도발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일본의 국제법학자들은 일본 정부의 행위와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독도문제 관련 변곡점에 있었던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권원 연구 결과를 추적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주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는데, 특히 고유영토론, 태정관지령, 시마네현 고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영토조항을 분석하고 일본 학자들의 관련 주장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입장도 검토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학문적 수월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이 책을 보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금도 잔존하는 팽창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주도해 온 일본 국제법학자들이 정부 입장을 무비판으로 따르고 있는 사실을 규명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일본 국제법학자들 가운데 비주류로 극소수에 불과하나 사안에 따라서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그러한 의견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면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은 7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장별로 서평을 하는데, 일부 장은 짧고 내용도 비교적 간단해서 간략히 서평을 하였다.

II. 일본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한 일본국제법학회

제1장은 「Introduction(서론)」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일본 국제법학계가 제공하는 국제법 원칙과 이론에 기초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독도편입 120주년인 2025년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일본국제법학회 등을 통해서 관련 국제법 원칙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한 일본국제법학회와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권원 연구를 추적하여 그러한 연구에 기초한 국제법적 왜곡을 밝혀내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때 1897년 설립된 일본국제법학회가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보았다. 1902년 2월 발간된 국제법 학술지인 『국제법잡지』에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에 관한 글들이 수록되었다. 저자는 일본 외무성의 임시취조(조사)위원회의 일본 제국주의에 기초한 국제법의 왜곡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1904년 3월부터 1906년 2월까지 활동한 이 조직의 존재를 비밀로 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요 회원은 외무성의 정무국장으로 독도를 시작으로 대륙침략의 계획을 입안하고 국제법을 활용해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였던 아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를 비롯하여 전원 국제법학자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원 주장에 관한 학설들을 검토하였다. 즉,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실효적 권원론’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히로세 요시오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독도침략을 합법화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확고히 지지한 이후 일본의 주류학자로 등장한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와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를 포함한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결론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호도하고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었다. 저자는 일본이 갑자기 고유영토론을 들고 나온 것도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선포하면서 일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본다.

제2장은 「Absence of Japan's Claim to Dokdo by the Territori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toward Japan(연합국의 대일 영토정책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부재)」이다. 이 장에서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이르는 과정과 독도 영유권 관련 규정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이 조약 제2조가 독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데 따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해온 바, 일본의 침략전쟁 기간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한동안은 1905년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을 강조하였고, 1962년 이후에는 독도가 17세기부터 자국의 영토였었다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영토 규정과 러스크 서한을 들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영토 관련 규정이 당초 상정한 일본에 대한 징벌적이고 엄격한 규정에서 협조적이고 완화된 규정으로 바뀌게 된 사정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2항의 독도 영유권 관련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제3장에도 서술되어 있으나, 편의상 여기에서 서평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주요 연합국이 채택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및 종전 후인 1946년에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인 SCAPIN 677 호는 독도와 쿠릴열도, 센카쿠 등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등 강화조약의 당연한 속성인 패전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조약 초안들도 처음에는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을 한국령으로 하기로 하였었다. 그렇지만 동구권의 공산화에 이어 중국공산당이 본토를 완전히 장악한 1949년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바뀌어 일본을 공산세력에 대한 방과제로 삼

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정치고문 윌리엄 J. 시볼드(William J. Sebald)는 이전의 초안은 일본인과 외부세계에 일본의 주권을 계속 제한하고 국제공동체에 일본이 신속히 질서 있게 재진입하는 데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징벌적·무배상의 관대한 강화조약을 옹호했으며, 독도는 일본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대일강화조약 담당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강화조약 체결 시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패전국 독일에 부과된 엄청난 전쟁배상금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였던바 비징벌적 강화조약을 주장하였고, 특히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영토·전쟁책임·배상 등에서 징벌적 내용을 완화하도록 주장하였다. 결국 대일강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에서 냉전체제의 등장,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배경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무지로 강화조약 체결을 앞두고 연합국, 특히 미국의 대일정책 목표는 징벌적 조약에서 오히려 우호적 강화조약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양유찬 주미대사를 통해 독도와 파랑도를 한국령에 포함해 주도록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데이비드 딘 러스크(David Dean Rusk) 차관보는 소위 ‘러스크 서한’을 통해서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서한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암석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 관할하에 있었고,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 서한은 독도 관련 갈등의 고조로 공개 압박을 받았으나,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는 독도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며,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결국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 및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독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저지는 일본은 이 조항과 관

련하여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된 것이라고 하고, 러스크 서한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자료이므로 역시 자국의 영유권이 유지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은 서두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우리들(미국)의 정보에 의하면”이라는 전제하에 독도가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 관할하에 있었다고 하고 한국이 이전에 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므로, 이것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본 측의 이러한 입장과 해석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강화조약이 모든 섬의 귀속을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 모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해 온 역사와 카이로·포츠담 선언과 SCAPIN 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전후 영토처리 방향을 감안할 때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고 본다.

한편, 한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51년 6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준비를 위한 미국-영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1조에서 “중국은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0조 및 제14조(a)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한국과 중국 등 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Ⅲ.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권원 왜곡

제3장은 「Denial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by the Japanese Government(일본의 독도침탈 부정과 일본의 식민지 책임)」이다.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다툼은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포 이후 본격화되었다. 저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중요

한 근거는 17세기 이후 고유영토에 관한 주장,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무주지 선점 주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하였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은, 17세기 초 일본인들은 항해시 독도를 정박지로 사용하였고 도쿠가와 막부의 승인을 받아 강치와 전복의 채취를 위한 어장으로 이용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독도를 발견하고 인식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종의 시원적 권원을 획득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제법상 발견이나 인식에 의한 권원과 시원적 권원에 의한 영토적 권리는 국제법의 시조인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와 프란시스코 수아레스(Francisco Suarez) 등에 의해서 인정되었으나,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등의 반대에 부딪혀 학설상 다소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발견만으로도 영토취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학설적으로나 국가실행에 비추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발견이 최소한 미성숙의 권원(inchoate title)을 만들어 낸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론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1454년 편찬된 관찬자료인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한 사실은 발견에 의하든 아니면 시원적 권원에 의하든 울릉도와 별도로 존재하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원은 일본의 주장보다 2세기는 앞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해 온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선점과 함께 고유영토론을 내세우면 그 주장이 상충될 수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에 대해 다이주도 가나에 등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이를 수용하지만,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유명한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이 편입하기 전 한국과 중국의 소유로 그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고유영토라는 개념을 이들 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국제사회학자인 나카 노리오(名嘉憲夫)는 고유영토란 위험한 정치적 용어라고 하였으며, 국제정치학자인 도요시타 나라히코(豊下橋彦)는 고유영토란 일본 정부와 외무성이 만들

어 낸 정치적 개념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역사학자인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역시 2012년 나고야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된 저서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안용복 사건이 발생한 때는 일본이 1618년 일본 어민들에게 울릉도 도해 면허를 부여하여 울릉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이 전복, 강치 등 해산물을 채취하고 목재를 벌채해 가져가는 등 울릉도 근처에서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시원적 권원이 중단될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였다. 이러한 와중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간에 울릉도를 둘러싼 ‘울릉도쟁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일본 측이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정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지위인 로주(老中) 아베 분고노가미(阿部豊後守)는 막부가 도해를 허용한 것은 조선의 섬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것이다.

도해금지령 이후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기에도 일본의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은 이 두 섬은 조선령이라는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을 위해 지지(地志)와 지적(地籍) 편찬사업을 시작하였고 조선 등 외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시마네현은 1876년 10월 내무성으로부터 다케시마에 대해 문의를 받았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다케시마 어업을 조사하고, 울릉도쟁계(1693~1699) 당시의 문서들을 검토한 후, 다케시마 개략과 도면을 첨부하여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그 기록과 문서들은 결국 도쿠가와 막부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내무성은 이 조사를 통해 다케시마(울릉도)가 1699년(숙종 25) 조선령으로 매듭지어졌으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영토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에서 조사한 4개 사항을 부속문서로 정리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서」를 태정관에 제출하여 판단을 의뢰하였다. 태정관 조사국에서는 질의서를 검토하였으며, 2개의 섬이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질의한 다케시마

의 1도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지(周知)할 것”이란 태정관지령안(指令案)을 작성하였다. 지령안은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승인을 받아 1877년 3월 29일 자 내무성으로 내려갔고, 4월 9일 시마네현에도 전달되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과는 관계가 없음을 결정하여 선언한 것으로, 자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공식인 결정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로, 태정관지령은 일본 학자인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가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알려졌으며, 시마네대학의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교수와 나고야대학의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는 호리 가즈오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다쿠쇼쿠대학의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는 태정관지령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의 한 섬’이 마쓰시마, 즉 독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무주지 선점에 의한 독도편입 주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인들이 목재 벌채를 위하여 울릉도에 잠입하기 시작하면서 섬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본래 오키도 등지에서 전복 채취를 하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1903년과 1904년 강치 포획을 위해 마쓰시마(독도)에 왔고 많은 사람이 와서 강치를 마구 잡아서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에 나카이 요자부로는 ‘량고도(독도) 영토편입과 대하원’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것이 일본 각의에 의해 받아들여져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편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저자는 일본의 독도편입과 관련하여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러일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이었다고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 하루 전 일본군은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였고, 그 이후에는 일련의 조약을 통해 그 자주권을 잠식해 갔다. 일본군은 1904년 8월 중국 뤄순(旅順)항을 기습공격하여 이듬해 1월 이를 점령하였다. 그 후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정치·군사·외교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였고,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울릉도의 전략기지화를 추진하였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 발틱함대를 동해에서 격퇴

하기 위해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였고, 독도에도 망루를 설치하고자 후보지로 지정하여 그 일대를 조사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나카이 요자부르가 ‘량고도(독도) 영토편입과 대하원’을 제출하기 5일 전이었다고 한다. 이는 나카이의 독도편입과 대하원 제출이 러일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이었던 아마자 엔지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섬을 편입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곳에 관측소를 건설하고 무선 및 해저케이블을 부설하여 적의 군함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편입은 강치어업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한반도를 점령하면 얻게 될 이점과 무력을 동원하여 러시아 해군과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1905년 일본 각의는 “메이지 36년(1903) 이래 나카이 요자부르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해 온 것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본방 소속으로 하여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의한 대로 결정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이 이제까지 무주지였던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한다는 결정이다. 이어서 시마네현은 고시 제40호에서 “오키섬에서 북서쪽으로 85km 떨어진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0분 지역의 도서 지역을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이 현(시마네현)에 소속된 오키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선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였다. 첫째, 일본의 조치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선점이 이루어졌다.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이고, 특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 일본 역시 도해금지령과 1877년 태정관지령에 의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선언하였다. 둘째,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국내에서조차 제대로 고시되지 않았고 주변 국가에도 통지되지 않았다. 영토편입에 관한 고시는 당연히 관보에 게재되어야 하지만, 시마네현 고시는 현청 앞에 게시하거나 일부 지방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

가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 시 통고 의무를 규정한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다른 섬들을 선점으로 취득할 때 대부분 이를 주변 국가에게 통고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선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 보다도 무주지가 아닌 독도를 선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의 등장 배경과 해석도 한일 양국 간 독도문제에서 중요한 주제이나, 이에 관한 서평은 제2장의 관련 부분에 대한 서평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4장은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egal Titles on Dokdo by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일본국제법학회에 의한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권원 왜곡)」이다. 저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국제법학회와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독도에 관한 권원 연구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즉, 미나가와 다케시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의 ‘공유적 권원론’,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을 검토하였다. 히로세 요시오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독도침략을 합법화하는 일본 정부의 핵심정책을 확고히 한 이래 쓰카모토 다카시와 나카노 데쓰야가 주류 연구자로 부상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본원적 권원론’에 속한다. 저자는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이러한 권원 연구가 내용에 있어서나 이론적으로는 상이하지만,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고 독도의 일본 귀속을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왜곡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은 17세기 역사적 권원을 가진 영토에 대해 선점 등 실효적 점유에 기초한 영역취득 절차를 거쳐 불확실한 원초적 권원을 근대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나카노 데쓰야는 1905년 독도편입은 당시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행위였다고 하면서, 당시 국제법상 주변 국가에의 통고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는 법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이 앞서 언급한 다이

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을 답습한 것으로 분석한다. 다이주도 가나에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는 다수의 도서를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은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1905년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군사상 필요에서 영토 편입한 것으로 기술한 나카이 요자부로의 문서는 부정하면서도,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능의 행사로 추인하여 선점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1877년 태정관지령,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5년 독도편입과 관련한 그의 역사의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독도 명칭 관련 문제를 독도 무주지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를 ‘죽도’로 호칭하고 있는 혼선을 개방에 따른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으로 희석화하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저자는 나카노 데쓰야의 주장과 관련하여, 쓰카모토 다카시와는 달리 역사적 권원과는 일정 부분 절연을 전제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의 국제법 관계를 전제로 한 무주지 선점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1904년 한일 의정서 이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갖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한 그의 주장은 선점요건으로서의 통고 문제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어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의 정서, 1888년 만국국제법학회의 통고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영역 권원 취득의 절대적 요건으로 한다는 국제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시마네현의 고시로 선점의 완료를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지자체의 고시가 국제법과 동일하다는 범규범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에 내재된 법리적 문제점을 답습하고 일본의 독도 명칭 혼선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나카노 데쓰야는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의 법리로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체제를 주장하면서도 독도주권 침탈을 비롯한 통고 문제 등에서 일제식민주의를 합법화하는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비판받고 있다.

오늘날 국가 간 도서영유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이다. 그런데 요즘 작은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판단 시 당해 국가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주권적 행위를 해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독도에 관한 수많은 법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등대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를 배치한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국제법의 또 다른 왜곡이 될 것이다.

IV.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5장은 「Revisiting International Legal Titles on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perial Ordinance No. 41(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20주년 에 국제법 권원 재고)」이다. 이 글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선포 120주년인 2020년에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독도 영유권 관련 일본 학자들의 학설 가운데 국제법 권원 연구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에 대해 검토한다. 히로세 요시오는 메이지 시기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 관련 외교 조치의 평가와 관련한 국제법적 역사인식인 국제법사관의 주창자로서,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일제 식민지배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합법화를 시도한다. 히로세 요시오가 제기하는 비식민지화(Non-colonization)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 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히로세 요시오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 권원 법리와 관련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보다 먼저 1900년에 칙령을 선포해서 자국 영토로 편입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일본 정부는 1905년에 비로소 독도에 대한 일본령 편입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히로세 요시오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국제법을 앞세운 법리적 왜곡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독도주권 침탈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저자는 히로세 요시오의 주장에 대해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강제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판한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1905년 당시의 국제법도 일본의 침략적인 국가실행과 유착된 극단적인 국가주의로서의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퇴조하고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던 지점이자, 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1935년 하버드 법대 초안'의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의한 무효조약의 대표사례로 제시된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을 규명한다.

저자는 히로세 요시오가 주장하는 '독도영유론'의 토대인 선점 법리의 핵심요소로서 실효적 점유의 요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첫째,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관계의 승인, 둘째, 국력을 배경으로 한 최종적인 법적 효과의 귀속, 셋째, 일본의 영역편입조치에 대한 조선의 묵인 등을 통해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 취득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은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전형일 뿐만 아니라, 1910년 한일병합을 건인한 불법적인 팽창주의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으로 국제법상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식민지점령의 방식으로 형성된 선점과 관련하여, 실효적 점유라는 이름으로 상대적 우위성의 힘을 행사함으로써 약소국의 확립된 권원을 배척

하고 강자의 권력 확립을 정당화하여 영토권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제국의 묵인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종래 제국주의국가들이 후진국의 영토를 취득할 때 법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동원하던 자발적 동의라는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동의의 의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로부터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하였다.

제6장은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on the 70 Years of History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 역사에 대한 국제법적 과제)」이다. 저자는 전후 연합국은 일본의 전쟁책임과 영토문제를 징벌적으로 다룰 계획이었으나, 냉전의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관대한(generous) 강화조약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장에서도 언급하였으나 다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주요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를 제한하기로 하였고, 1946년 SCAPIN 677호는 독도와 쿠릴열도, 센카쿠 등을 일본의 통치권과 행정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패전국 일본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담고 있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주도한 미국이 작성한 초안들도 처음에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구권과 중국 본토의 공산화를 보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크게 변경되었고 일본은 공산세력을 막아 줄 방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정치교문 시볼드는 비징벌적·무배상의 관대한 강화조약을 옹호했으며, 독도는 일본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일강화조약 담당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딜레스도 비징벌적 강화조약을 주장하였다. 그 여파로 미국이 작성한 조약 초안 가운데 일부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남겨 둔다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딘 러스크 차관보는 소위 '러스크 서한'을 통해서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서한은 독도가 한국의 일부이던 적이 없고,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현 관할하에 있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서한은 일본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독도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 및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 남겨졌다고 주장하지만, 러스크 서한은 사실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바,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보다는 카이로 선언 이래 연합국들이 취해 온 입장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 국제법학계에서는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일본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 독도에 대한 침략이 정당화된다고 보지만,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일본에서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주장을 무력화하고자 하지만, 전권위임장의 제시나 국가대표의 비준의 배제 역시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도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또한 저자는 일본은 1910년 강제병합 이전에 이미 독도는 선점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한국 침략은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이 전시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2월 6일 진해만과 마산포를 불법 점령함으로써 이미 독도 침탈 전에 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제7장은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제식민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이다. 저자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법 관련 학회와 법학자들이 일본의 침략주의와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본은 1905년 선점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때 1897년에 조직된 일본국제법학회로 하여금 일본의 침략적 외교정책을 지원하는 국제법적인 기초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한다. 일본국제법학회

는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정당화·합법화하는 동시에 침략정책과 논리를 전개해 갔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외무성의 정책국장 야마자 엔지호가 주도하여 조직한 외무성의 임시취조위원회는 1904년 국제법학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2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일본의 식민주의에 기반하여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수립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임시취조위원회의 설립 목적 가운데 다른 하나는 국제법을 동원하여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었다. 저자는 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 한일병합에 이르는 과정과 그 후에 있었던 일본 학자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한국이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통해서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 일본은 4차에 걸쳐 구상서(note verbale)를 제시하였다. 이때 일본은 3차까지 무주지 선점에 의한 독도 취득을 다시 주장하였으며, 4차 구상서에서 고유영토론도 제시하였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 국제법 학자들이 주장한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인 미나가와 다케시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의 ‘공유적 권원론’,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그 후 일본의 주류학자라 할 수 있는 쓰카모토 다카시와 나카노 데쓰야 등에 의한 일본의 권원 연구는 대부분 일본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고 독도 침략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일본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자 갑자기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평화선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고안해 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도 관련 역사적 증거들과 일본의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같은 조치들을 고려할 때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V. 국제법 법리로서 폭력과 탐욕의 일제식민주의 배척

「Epilogue(에필로그)」에서 저자는 1943년 사망할 때까지 일본국제법학회 대표위원과 국제법 학자들로 구성된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서 외무성 고문을 지낸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가 제시한 무주지선점론이 1905년 독도 침략의 시발점인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실효적 식민지 지배론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저자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천명한 ‘카이로 선언’상의 일제의 ‘폭력과 탐욕’이 본질적 실체로서 일치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저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의 초석으로서 한국의 독도주권과 관련하여, 에도 막부의 도해금지령과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 등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스스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1905년 이래 다치 사쿠타로를 비롯한 일본국제법학회가 국제법 법리를 왜곡해 온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 국제적 책임의 수행을 촉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의 보물, 아름다운 꽃과 자연생태』

(송취영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박선주 영남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며
- II. 주요 내용: 식물
- III. 주요 내용: 해양생물
- IV. 나가며: 생물주권의 시선으로 독도를 보다

I.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동쪽 끝, 푸른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는 화산섬, 독도.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이 작은 섬은 약 460만 년 전 격렬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해양성 암석섬이다. 비록 면적은 작지만,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의 경이로움이 숨 쉬고 있다. 연중 강한 해풍과 짙은 안개, 거센 조류와 높은 파도 속에서도, 이 섬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의 터로서 독특하고 소중한 생태적 가치를 품고 있다.

송휘영 박사의 신간 『독도의 보물, 아름다운 꽃과 자연생태』(이하 『독도의 보물』)는 이러한 독도를 단순한 영토의 상징이 아닌, 생명과 자연의 터전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자연생태 에세이다. 이 책은 독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꽃꽂이 피어나는 야생 식물들의 생명력과 독특한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독자에게 진한 감동과 깊은 사색을 선사한다.

해국, 섬초롱꽃, 섬기린초, 가는갯느쟁이 등 총 39종의 자생 식물들이 소개되고, 각각의 식물들은 고해상도 사진과 섬세한 해설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난다. 저자는 마치 독도의 산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하나 꽃을 가리키는 듯한 따뜻한 시선으로, 독자에게 생명의 존귀함을 전한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독도라는 섬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체험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책은 독도의 해양 생물인 강치, 팽이갈매기, 바다제비 등 10종에 대한 생태 정보도 함께 담고 있어, 독도를 단지 외딴 바위섬이 아닌 하나의 ‘작은 생태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간의 영향에 대한 통찰은, 오늘날 환경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독도의 보물』은 단순한 식물도감이나 생태보고서가 아니다. 아름다운 문장과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이 책은, 과학과 문학이 만나는 보기 드문 자연사 기록이다. 교사, 학생, 환경 연구자뿐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감동적인 책이다.

오늘날 독도에 대한 논의는 흔히 안보나 역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책은 그 시선을 생명과 생태로 돌려놓는다. 우리가 독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묻는 이 책은 생물다양성과 생물주권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독도의 보물』은 독도를 다시 보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은 독도를 둘러싼 바람과 파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의 섬’으로서의 독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독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읽히기를 바란다.

II. 주요 내용: 식물

1. 해국에 깃든 생명의 철학과 생물주권의 상징성

『독도의 보물』은 “독도의 보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생태적으로 독특한 화산섬, 독도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물주권의 의미를 함께 전하는 이 책은, 단순한 식물도감이나 자연 에세이를 넘어선다.

책의 첫 장을 장식하는 식물은 독도를 대표하는 야생화, 해국(*Aster spathulifolius* Maxim)이다. 저자는 해국이 주로 강원도, 울릉도, 그리고 독도의 해안 절벽과 바위틈에 자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해국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태적 적응력을 지녔음을 암시하며, 그 자체로 독도의 척박하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상징한다.

1) 해국의 자생지와 생태적 적응력

해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동해의 강한 해풍과 파도를 이겨 내며 매년 가을 보랏빛 꽃을 피운다. 이 책에서는 해국이 어떻게 그 혹독

한 해양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꽃을 피우는지를 생태학적 시각으로 상세히 서술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치는 야생화 한 송이조차 얼마나 강인하고 값진 생명체인지를 되새기게 만든다.

2) 해국의 꽃말: '기다림'에 담긴 철학

저자는 해국의 꽃말 '기다림'을 독도의 존재 의미와 겹쳐서 소개한다. 해국은 가을 늦게까지 꽃을 피우며, 바람과 염분을 견디는 인내의 시간을 살아간다. 이 고요하고 끈질긴 생명의 태도는 독도가 우리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과 닮아 있다. 해국의 '기다림'은 단순한 감성적 표현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과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낸다.

3) 해국의 식물학적 특성과 약리 효능

『독도의 보물』은 해국을 단지 아름다운 꽃으로만 소개하지 않는다. 학명 '*Aster spathulifolius Maxim*'의 라틴어 어원과 식물분류학적 구조를 설명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한다. 또한 해국의 생리활성 성분과 함께 전통적으로 알려진 약효-비만증, 만성간염, 해수, 방광염 등에 대한 효능과 현대적 항산화 효과-를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식물이 지닌 생태적·약리학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전달한다.

4) 해국과 생물주권: 독도의 상징 식물

이 책의 핵심적 메시지 중 하나는 '독도 생물주권'에 관한 담론이다. 해국은 일본과 한국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생물로, 국가 간 유전자원 확보와 생물자원 주권의 상징적인 식물이다. 저자는 영남대학교 박선주 교수의 해국 DNA 분석 연구를 인용하여, 해국의 기원이 대한민국을 강조한다. 특히 독도 집단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특수성을 지녀 독자적인 유전형질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독도의 해국이 단순한 자생식물이 아닌 대한민국 고유의 생물자원으로서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킨다.

이처럼 『독도의 보물』은 단순한 식물 소개를 넘어, 해국이라는 식물을 통해 독도의 생태, 철학, 문화, 과학, 그리고 국가적 권리에 이르는 다층적 의미를 풀어낸다. 총 57종의 자생식물 중 본문에서는 39종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서평에서는 그중에서도 해국을 중심으로 독도의 생명과 주권을 상징하는 의미를 집중 조명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섬초롱꽃(*Campanula takesimana*)과 초중용(*Orobanche coerulescens*)이라는 독도 자생 야생화를 통해, 『독도의 보물』이 펼쳐내는 또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가치를 계속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2. 섬초롱꽃에 깃든 고유식물의 위엄과 생물주권의 역사

『독도의 보물』은 독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소개하는 동시에, 한반도 고유 식물에 대한 생물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저작이다. 그중에서도 섬초롱꽃(*Campanula takesimana* Nakai)은 울릉도와 독도에만 자생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고유식물로, 책에서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식물 중 하나로 다뤄진다.

1) 독도 서도에서 만나는 고유의 꽃

섬초롱꽃은 독도 서도의 물골계단을 오르다 보면 좌측 바위틈에서 소수의 개체만이 발견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존재이다. 그 아름다움은 희귀성과 결합되어 더욱 각별하며,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이 식물은 지리적 고립성과 생물학적 독창성을 모두 갖춘 상징적 식물이다.

2) 섬초롱꽃과 생물주권의 상징성

섬초롱꽃은 극한의 해양성 기후, 염분, 토양 부족 등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존한다. 내염성과 내한성을 갖춘 이 식물은, 독도라는 공간의 생태적 조건을 이겨 낸 진화의 산물이자, 바로 그 독립성과 자생성 덕분에 독도의 생물주권을 상징하는 식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자는 섬초롱꽃을 단지 자연의 일부로 설명하지 않는다. 울릉도와 독도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고유 식물로서, 자생지 보전과 유전자원의 보호가 곧 국가의 생물주권 확립과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3. 구상나무와 초종용에 담긴 식물주권의 기억과 미래

『독도의 보물』은 단순한 식물 생태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해국과 섬초롱꽃에 이어, 한반도의 상징적 고유식물인 구상나무와 초종용을 통해 생물주권의 현실과 과제를 더욱 심화된 시선으로 조명한다. 이 두 식물은 생태학적 가치뿐 아니라, 학명 명명의 역사와 국제적 생명자원 경쟁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1) 구상나무: 가장 한국적인 전나무, 가장 세계적인 희귀종

구상나무(*Abies koreana* Wilson)는 한국의 고산지대, 특히 한라산 정상에서 자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침엽수다. 아름다운 보랏빛 구과와 짙은 녹색의 침엽은 그 생태적 아름다움을 넘어, 고산 생태계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식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채종, 외래종 침입 등으로 인해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EN: Endangered)으로 지정하였다.

저자는 구상나무의 사례를 통해 식물주권의 개념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1900년대 초, 영국 큐가든(Kew Gardens) 소속 식물채집가인 E. H. 윌슨(E. H. Wilson)에 의해 한국 지리산 일대에서 채집된 구상나무는 1920년 학계에 *Abies koreana* Wilson이라는 학명으로 발표되었다. 종소명 'koreana'는 이 식물이 '한국 고유종'임을 명시하지만, 정작 명명자는 외국인 학자라는 점에서 우리 고유 식물이 학명 주권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2) 식물학적 명명의 역사, 그리고 잃어버린 이름의 권리

한반도는 지리적·기후적 특수성 덕분에 다양한 고유 식물종이 분포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외국 학자들에 의해 명명되고 특허화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우리 식물의 학명과 유전자 정보, 산업적 활용 권리까지 해외에 선점 당하는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구상나무는 물론, 섬초롱꽃, 해국, 개별꽃 등도 일본 혹은 서구 학자들에 의해 먼저 기록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학술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주권의 문제로 확장된다.

3) 초종용: 독도에서 피어난 생명의 전략

『독도의 보물』에서 저자는 독도의 자생식물 중 유일한 기생식물인 초종용(*Orobanche coerulescens*)에 주목한다. 초종용은 광합성을 하지 않고 다른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매우 특이한 식물로,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지정된 보전 우선 식물이다.

초종용은 생물학적으로도 흥미롭다. 엽록소가 없고, 전적으로 숙주의 자원을 흡수하여 살아가는 생존 전략은 독도처럼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화적 적응의 극치로 해석된다. 특히 독도의 고립된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기생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생태계 상호작용과 건강성의 지표로도 기능한다.

그러나 이 작은 식물 역시, 명명과 연구의 주도권이 외국으로 넘어갈 위험에 놓여 있다. 과거 독도의 식물 다수가 일본 학자들에 의해 먼저 채집·기록되었듯, 초종용 또한 국내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학명과 활용 권리마저 외국에 선점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저자는 분명히 한다.

4) 보이지 않는 존재의 가치와 생물주권의 감수성

초종용은 화려하지 않고 작으며,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지탱하는 생명망의 중심”이라 말한다. 크고 아름다운 식물만이 아닌, 작고 조용한 존재에도 생태계는 의존하고 있다. 이

러한 인식은 우리가 생물주권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

저자는 초종용이야말로 독도의 식물 생태계에서 생물주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사와 같은 존재라며, 우리가 이처럼 작은 생명에게도 관심과 책임을 가질 때,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원주권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독도의 보물』은 독도의 식물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해국, 섬초롱꽃, 구상나무, 초종용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자연, 과학, 역사, 주권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한국 식물의 정체성과 가치를 풀어낸다. 특히 식물의 학명 명명이라는 식물분류학의 기본 개념조차도, 생물주권이라는 현실 정치의 문제와 결합될 수 있음을 이 책은 웅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도의 보물』은 한반도 식물학의 문화적 자존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생명자원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철학을 제시하는 생물주권 인문생태서라 할 수 있다.

III. 주요 내용: 해양생물

1. 강치와 감태, 바다에 깃든 생태의 기억과 미래의 권리

『독도의 보물』은 독도를 단지 분쟁의 섬이 아닌, 생태적 보고이자 생물주권의 최전선으로 조명하는 귀중한 저작이다. 식물 편에서 해국, 섬초롱꽃, 초종용을 중심으로 독도의 식생과 고유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 주었다면, 해양생물 편에서는 독도 해역의 생물다양성과 그 보전 가치를 부각시킨다.

이 책에서는 강치, 팽이갈매기, 습새, 바다제비, 독도새우, 전복, 감태, 대황, 미역, 우뚝가사리 등 10여 종의 해양 생물을 소개하는데, 이 생물들을 해조류, 어류, 무척추동물, 해양포유류로 분류하여 독도 생태계의 층위를 상세히 보여 준다. 이 중에서도 저자는 강치와 감태를 중심으로 생물주권, 생태보전, 생태관광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2. 강치: 사라진 생명, 되살아야 할 기억

강치(*Zalophus japonicus*)는 과거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서 번성했던 바다사자와 해양포유류로, 독도의 상징적인 생물 중 하나다. 강치는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독도 암초와 동굴을 번식지로 이용하며 살아갔으며, 육상에서는 느리지만 바다에서는 유연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일본의 대규모 남획으로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현재는 독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공식적인 마지막 관찰 기록은 1951년으로 남아 있으며, 가축, 기름, 수염 등을 목격한 무분별한 포획이 멸종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저자는 강치를 단순한 생물종이 아닌, 역사적·정치적 생물의 상징으로 다룬다. 강치는 조선시대 문헌과 울릉도 주민의 민간 전승에도 등장하며, 한국인의 삶과 어업 활동,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강치의 존재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생태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로 해석되기도 한다.

오늘날 강치 복원은 생물학적 어려움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복원 논의 자체가 민족의 기억을 지키는 생태적 보존 활동으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독도 강치 멸종사』(주강현 저, 2016, 서해문집) 등 강치 관련 기록은 이러한 보존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한다.

3. 감태: 바닷속 숲의 생명력과 산업적 가치

감태(*Ecklonia cava*)는 동해의 청정 해역에서 자라는 갈조류로, 독도 생태계에서 기초생산자이자 서식지 형성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는 감태를 “단맛의 이끼”라고 표현하며, 그 생태적 위치뿐 아니라 약용·식용·산업적 가치까지 다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감태는 해조류 숲(해중림)을 형성해 다양한 어류, 무척추동물, 연체동물의 산란장과 은신처로 기능한다. 이러한 해조 숲은 독도 해역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과 순환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생태 인프라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

난화로 인해 감태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어 모니터링과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감태에 대한 유전체 분석과 생리활성 물질 탐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태는 기능성 식품, 의약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독도의 감태는 단순한 해조류가 아닌, 생태·경제·학문적으로 모두 보호 가치가 높은 자원임을 이 책은 강조한다.

IV. 나가며: 생물주권의 시선으로 독도를 보다

『독도의 보물』의 진정한 강점은 해양생물과 식물들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갖는 생태적 기능, 문화적 의미, 국가적 주권과 연결되는 가치를 통합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이다. 강치의 멸종은 역사 속 생물주권의 상실을 반영하며, 감태의 해양 숲은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기반임을 일깨운다.

이 책은 독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를 넘어, 그 땅과 바다에서 살아온 생명들의 가치와 목소리를 기록한다. 강치의 침묵, 감태의 숲, 해국의 기다림, 섬초롱꽃의 종소리, 초종용의 조용한 기생...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의 서사이자, 대한민국 생물주권의 실천 과제로 읽힌다.

『독도의 보물』은 독도의 생물들을 통해 우리가 간과해 온 ‘작은 자연’의 위대함을 일깨운다. 이 책은 단순한 자연관찰을 넘어서, 생태적 감수성과 생물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도 지닌다. 이 책을 통해 독도의 식물과 해양생물은 단지 자연물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자원의 뿌리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영토·해양일지



영토 · 해양 일지

염태일 한림성심대학교

2024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 국가보훈부가 현충관에서 '제 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 시행 • 29일: 한국군은 중러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 공군 전투기 투입 등 전술 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일: 중러 군용기 11대가 KADIZ에 진입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달의 고지도'로 독도·울릉도가 표기된 1750년 프랑스 제작 <관동·요동 및 조선지도> 이탈리아어판 선정 • 16일: 국군은 독도 근해에서 '동해 영토 수호훈련' 실시 • 17일: 외교부는 국군의 '동해 영토 수호훈련' 실시에 대해 일본 측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항의하자 부당한 주장이라며 일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일본 어선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 진입 • 5일: 중국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인근에 진입한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하고 모든 불법 활동 중단 촉구 • 6일: 미·일·필리핀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합동 훈련 실시 • 6일: 76mm포를 탑재한 중국 해경 1303 함정 편대 4척이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접속수역 항해 • 17일: 일본은 '동해 영토 수호훈련' 실시에 대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항의 • 22일: 중국 해군·해경국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해협 등에서 대만을 둘러싼 해상 봉쇄와 유사한 항해 실시 • 30일: 북한이 동해 남포조선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신형 군함 건조 모습 공개

영토·해양 일지

2025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함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 1,1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 14일: 함참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 포착 후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 24일: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철회를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조치 25일: 함참은 북한의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사전 인지하고 대비 및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신형 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 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 14일: 북한이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 발사 20일: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이 독도와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영토 보존을 위해 대내외 입장표명 강화 필요' 망언 24일: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 25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발사 진행 31일: 미일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센카쿠열도 내 안보조약 적용 등 동맹 강화 논의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일: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디지털 독도체험관'을 개관하고 디지털 기반 독도 교육을 지원 22일: 정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및 부당한 일본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일: 일본 공영방송 NHK의 국제방송에서 중국어 자막에 일본 영토 센카쿠열도가 중국 명칭 '다오위 다오(釣魚島)'로 표기되어 논란 17일: 러시아 해군 함정 1척이 한반도 동해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 실시 18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 파견 표명 19일: 북한이 청진조선소에서 신형 군함 건조 22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20주년 행사 개최

2025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합참은 한미연합연습인 '자유 의 방패(FS: Freedom Shield)'가 시작한 당일 북한의 근거리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 15일: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에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 • 20일: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이후 닷새 만에 KADIZ에 재진입해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하여 항의 • 24일: 국내 언론은 중국이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발판 삼아 내해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지적 • 25일: 외교부가 한국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에 깊은 유감 표명 및 시정 촉구 •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이 55 영웅의 유가족 및 참전 장병, 정부인사, 군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시행 • 31일: 대한민국의재향군인회가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서해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집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2025년 4월 패널 중심에서 체험형 전시시설로 리뉴얼 개관 발표 • 10일: 북한이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 • 10일: 북한이 시작되는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 의 방패'에 반발해 핵위협 발언 • 15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 • 20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 • 21일: 중국은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4척을 영해를 침범하여 추방했다고 주장 • 21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산청 산불 관측 사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논란 • 24일: 중국이 서해에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 25일: 일본은 중국 해경선박 4척이 21~24일 사이 센카쿠열도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 • 25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 포함 • 25일: 중일 외무장관급 회담 개최로 양국 관계 개선 중 센카쿠열도 내 중일 간 해상 대치로 해양 영토분쟁으로 격화 • 31일: 중국 어선이 불법 성어가 되자 불법조업 성행

영토·해양 일지

2025년	국내	국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 해경과 해군은 특별단속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합동 작전으로 나포 • 8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025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 • 16일: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대상 ‘울릉도·독도 국토문화탐방’ 연수 실시 • 20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 재개관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 • 22일: 정부가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진입한 북한 주민 송환을 추진 • 24일: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공식 요구 • 28일: 경북도교육청이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안보 현장 탐방 실시 • 28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외교부는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 등 ‘비례적 조치’ 방안 검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 실시 • 8일: 일본 외무성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 기재 • 17일: 러시아는 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사격훈련 계획(17~22일)을 일본에 통보 • 18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영토·주권전시관 재개관 • 19일: 일본은 쿠릴열도 해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훈련 시행 내용을 통보받고 항의 • 22일: 남한이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진입한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추진 중이나 북한은 이에 무반응 • 23일: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은 ‘필요하면 한국 관계자들의 서해 시설물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라는 입장 표명

2025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독도 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독도체험관 전시해설 프로그램' 신설 운영 • 5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1892년 하기오라 쿠니조가 제작한 지도집 『분방상밀대일본지도』 중 〈대일본전국〉 지도 전시 • 8일: 합참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분석 중이라고 발표 • 8일: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약속 • 9일: 국방부는 북한이 8일 발사한 미사일은 다양한 종류로 이스칸데르형, 초대형방사포 등이라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중일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상공에서 일본인이 소형 비행기를 조종 • 3일: 중국 해경국 헬리콥터가 센카쿠열도 인근 일본에 일시 진입, 중국 해경국은 일본 민간 항공기가 침범해 헬리콥터를 띄워 경고했다고 주장 • 3일: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경국 헬리콥터가 센카쿠열도 인근 일본 영공을 일시 침범하여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 • 4일: 중일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주변을 놓고 서로 상대가 영토를 침범했다며 항의 • 7일: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운송 목적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지선(支線) 철로가 건설 중인 정황 파악 • 8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KN-23과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 9일: 일본이 독도 등의 영유권 홍보를 위한 영토·주권전시관 시설 확충계획 발표 • 14일: 중국이 동중국해 경계 미확정 수역에 미상의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 • 14일: 일본은 중국의 철제 구조물 설치에 대해 주일중국대사관에 즉각 중단 요구 • 14일: 러시아가 쿠릴열도 인근 미사일 사격훈련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 14일: 일본은 쿠릴열도 주변에서 예정된 러시아의 미사일 사격훈련에 대해 항의

영토·해양 일지

2025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일: 합참은 북한이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하고 분석 중이라고 발표 • 22일: 독도사랑운동본부는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 33인과 함께 울릉도·독도 방문 • 24일: 중국 해랑학교 국제부 학생 및 교사가 역사배움여행으로 울릉도와 독도 방문 • 24일: 외교부는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우려 전달 • 27일: 경북교육청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교육공무직원 현장체험 연수 실시 • 27일: 외교부 관계부처 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 논의 • 28일: 울산시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울산교육감 등 교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울릉도·독도 탐방’ 행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북한 청진항에서 건조한 두 번째 최현급 구축함의 진수 임박 관측 • 21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한 항행금지구역 설정 • 2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 • 25일: 중국 해군 항공모함이 일본의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전투기 전개 • 25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 전투기 전개에 대응해 전투기 긴급 출격 • 29일: 중국 정부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설치한 마지막 부표 철거 • 30일: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훈련 시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다자연합훈련에서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방침 결정 • 30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인근 등 동경 124도까지 대형 부표 3기를 증설해 13기의 부표 배치

규정 및 규칙

나

- 편집위원회 규칙
- 발행 및 심사규정
- 투고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편집위원회 규칙]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개정 2018. 04. 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발행 및 심사규정)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10. 25.
개정 2020. 07. 22.

제1장 발행규정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2장 심사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가능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제의 및 게재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차기 호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재 불가'로 처리한다.(2020.07.22. 개정)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투고 요령)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제1조(투고 규정 일반)

-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제2조(원고 작성요령)

-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7.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권),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11.11. 규칙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과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 4. 본조사 실시 여부
-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

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인)

편집위원장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 실장

편집위원

강병근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영 _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제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서진웅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송규진 _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장성일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편집간사

신승혜 _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영토해양연구 Vol. 29

초판 1쇄 인쇄 2025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5년 6월 30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